

2019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1주년 기념
장애인 교육권 차별,
현황 및 대응방안 토론회

일 시 : 2019. 4. 25.(목) 14:00~16:30

장 소 : 강원인권교육센터

주 최 :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장 송호섭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셔서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내 주신 정상환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오늘 발제를 맡아 주신 김기룡 교수님, 토론을 해 주실 김범표 장학관님, 박정숙 대표님, 최보영 회장님, 박은경 위원장님 그리고 김용섭 대표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유엔의 「인권, 새로운 약속」에는 ‘인권에 대해 배우는 그 자체가 권리이다. 인권에 대해 무지를 강요하는 것이나 내버려두는 그 자체가 인권침해이다. 교육은 인권과 자유의 머릿돌이다’라는 말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원인권사무소는 작년 장애인 이동권 관련 토론회에 이어 금년에는 강원지역 장애인 교육권 차별과 현황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강원인권사무소는 오늘 토론회를 통해 강원지역 장애인 교육권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강원지역 장애인 교육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소중한 시간을 내 주셔서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4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장 **송호섭**

축사

Congratulatory address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정상환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1주년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과 발제와 토론을 위해 참석해주신 각계 전문가와 대표 여러분들께도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차별금지법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8년 시행된 이래로 우리 위원회는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서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매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기념 토론회를 개최하여 법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장애인 차별 해소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아왔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주제인 장애인 교육권 역시 오랫동안 개선이 시급한 분야로 인식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방식의 차별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특히 강원지역에서는 장애학생 학교폭력 은폐사건, 원주시와 동해시 특수학교 설립 반대 사건, 태백미래학교 사건 등 최근 심각한 장애인 교육권 침해와 차별 사건들이 다수 발생하여 많은 분들이 마음고생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해시 특수학교 설립 반대 사건의 경우에는 최근 다시 문제가 불거져 강원인권사무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러한 사건들이 개별 사건으로만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다 구조적인 차원에서 장애인 교육권과 관련된 제도 및 정책을 폭넓게 짚어보고 현실적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통해 장애인 교육권 확보와 차별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토론회가 모두에게 의미있고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4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정상환**

**토론회
일정 및 순서**

- 일 시 : 2018. 4. 25.(목), 14:00~16:30
- 장 소 : 강원인권사무소 강원인권교육센터(강원도 원주시 소재)

시 간	세 부 내 용
14:00~14:05	❖ 개회선언
14:05~14:10	❖ 인사말씀 - 송호섭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장
14:10~14:15	❖ 축 사 - 정상환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장애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좌 장 : 송호섭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장
14:15~14:30 (15분)	[발제 1]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인권침해·차별 진정사건 분석 이보람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 조사팀장
14:30~14:50 (20분)	[발제 2] 교육 현장에서의 장애학생 인권 침해 실태 및 인권 증진 방안 김기룡 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14:50~15:00 (10분)	휴 식
15:00~15:10 (10분)	[토론 1] 장애인 부모가 꿈꾸는 차별 없는 특수교육 현장 박정숙 강원도장애인부모연대 대표
15:10~15:20 (10분)	[토론 2] 동해시 특수학교 설립 반대 사례 최보영 동해시장애인학부모회 회장
15:20~15:35 (15분)	[토론 3] 강원지역 장애인 교육권 정책 방향 김범표 강원도교육청 미래교육과 장학관
15:35~15:50 (15분)	[토론 4] 특수교사가 바라본 장애인 교육권 문제와 대책 박은경 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 위원장
15:50~16:00 (10분)	[토론 5] 장애성인의 교육현실과 개선방안 김용섭 반딧불장애인학교 대표
16:00~16:30 (30분)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폐 회

- [발제 1]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인권침해·차별 진정사건 분석 1
 이보람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 조사팀장)
- [발제 2] 교육 현장에서의 장애학생 인권 침해 실태 및 인권 증진 방안 31
 김기룡 (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 [토론 1] 장애인 부모가 꿈꾸는 차별 없는 특수교육 현장 63
 박정숙 (강원도장애인부모연대 대표)
- [토론 2] 동해시 특수학교 설립 반대 사례 71
 최보영 (동해시장애인학부모회 회장)
- [토론 3] 강원지역 장애인 교육권 정책 방향 75
 김범표 (강원도교육청 미래교육과 장학관)
- [토론 4] 특수교사가 바라본 장애인 교육권 문제와 대책 89
 박은경 (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 위원장)
- [토론 5] 장애성인의 교육현실과 개선방안 93
 김용섭 (반딧불장애인학교 대표)
- [부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10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1주년 기념
장애인 교육권 차별, 현황 및 대응방안 토론회

발제 1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인권침해·차별 진정사건 분석

이보람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 조사팀장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인권침해·차별 진정사건 분석

이보람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 조사팀장)

I.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진정사건 통계

1.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가. 차별사건 대비 장애차별사건 접수 현황(2001. 11.~2018.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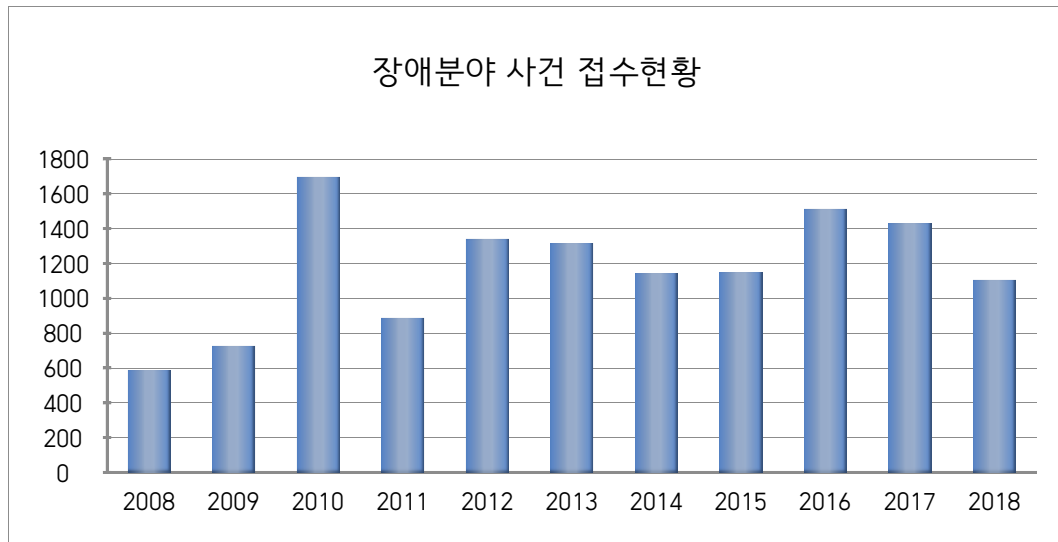
(단위: 건, %)

구 분			차 별 사 유		
			계	성희롱, 나이, 신분 등	장애
총계	2001. 11.~ 2018. 12.	진정건수	28,750	15,227	13,523
		비율(%)	100.0	53.0	47.0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전	2001. 11. 25.~ 2008. 4. 10.	진정건수	4,269	3,616	653
		비율(%)	100.0	84.7	15.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2008. 4. 11.~ 2018. 12.	진정건수	24,481	11,611	12,870
		비율(%)	100.0	47.4	52.6

나. 국가인권위원회 장애분야 사건 접수 현황(2008. 4. 11.~2018. 12. 31.)

(단위: 건)

연도 (년) 구분	총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전 (2001. 11.~2008. 4. 10.)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2008. 4. 11.~2018. 12. 31.)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장애 진 정 판 단	13,523	653	13	20	18	54	121	116	256	55	12,870	585	725	1,695	886	1,340	1,312	1,139	1,147	1,511	1,428	1,102	
월 평 균 접 수	65.6	8.4	6.5	1.7	1.5	4.5	10.1	9.7	21.3	16.5	99.8	67.2	60.4	141.3	73.8	111.7	109.3	94.9	95.6	125.9	119	91.8	



[그림 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장애분야 사건 접수 현황

국가인권위원회 설립(2001. 11. 25.) 이후 2018. 12. 31.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차별 사건 총 28,750건 중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 사건은 13,523건으로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 시행일인 2008. 4. 11. 이후에 접수된 사건이 12,870건(약 95.17%)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전에는 8.4건이었으나, 시행 이후에는 99.8건으로 약 12배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장애유형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 4. 11.~2018. 12. 31.)

(단위: 건, %)

년도	유형	계	지체	시각	뇌병변	청각	발달	언어	정신장애	기타
전체	사건수	12,870	4,125	3,277	931	1,314	1,521	98	498	1,106
	비율	100.00	32.05	25.46	7.23	10.21	11.82	0.76	3.87	8.60
2008	사건수	585	72	85	35	45	29	1	15	303
	비율	100.00	12.31	14.53	5.98	7.69	4.96	0.17	2.56	51.79
2018	사건수	1,102	304	403	93	79	126	13	22	62
	비율	100.00	27.59	36.57	8.44	7.17	11.43	1.18	2.00	5.63
등록 장애인 구성비 ¹⁾	인원 (천명)	2,546	1,254	253	253	302	226	20	102	136
	비율	100.0	49.3	9.9	9.9	11.9	8.9	0.8	4.0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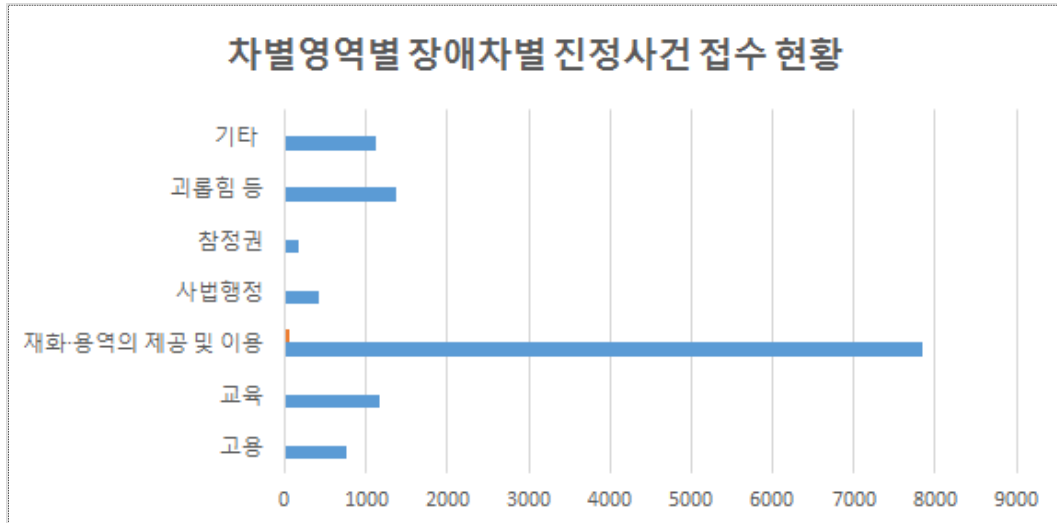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2018. 12. 31.까지 접수된 장애차별 진정사건을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접수된 총 12,870건 중 지체장애가 4,125건(32.0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시각장애 3,277건(25.46%), 발달장애 1,521건(11.82%), 청각장애 1,314건(10.2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1) 등록 장애인 구성비: 2017. 12. 기준(보건복지부)

라. 차별영역별 장애자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단위: 건, %)

접수 년도	합계	고용	교육	재화·용역								사법 행정	참정권	괴롭힘 등	기타
				소계	재화 · 용역	보험 · 금융	시설물 접근	이동 교통 수단	정보 접근 · 의사 소통	문화 · 예술 · 체육	기타				
전체	12,870	769	1,173	7,832	2,098	754	1,548	987	1,934	342	169	427	178	1,372	1,119
	100.0	5.98	9.11	60.8	16.3	5.86	12.0	7.67	15.0	2.66	1.31	3.32	1.38	10.6	8.70
2008	585	41	61	347	26	49	78	128	35	20	11	44	11	42	39
	100.0	7.01	10.4	59.3	4.44	8.38	13.3	21.8	5.98	3.42	1.88	7.52	1.88	7.18	6.67
2009	725	69	49	412	150	91	93	49	13	13	3	39	3	105	48
	100.0	9.52	6.76	56.8	20.6	12.5	12.8	6.76	1.79	1.79	0.41	5.38	0.41	14.4	6.62
2010	1,695	82	55	1,26	286	65	263	103	506	36	10	26	13	176	74
	100.0	4.84	3.24	74.8	16.8	3.83	15.5	6.08	29.8	2.12	0.59	1.53	0.77	10.4	4.37
2011	886	64	62	487	164	70	67	67	45	59	15	77	3	105	88
	100.0	7.22	7.00	54.9	18.5	7.90	7.56	7.56	5.08	6.66	1.69	8.69	0.34	11.8	9.93
2012	1,340	82	96	808	175	153	252	40	42	133	13	36	57	111	150
	100.0	6.12	7.16	60.3	13.0	11.4	18.8	2.99	3.13	9.93	0.97	2.69	4.25	8.28	11.19
2013	1,312	75	45	706	132	55	128	49	307	13	22	30	41	303	112
	100.0	5.72	3.43	53.8	10.1	4.19	9.76	3.73	23.4	0.99	1.68	2.29	3.13	23.1	8.54
2014	1,139	94	66	677	172	62	142	108	166	19	8	42	19	123	118
	100.0	8.25	5.79	59.4	15.1	5.44	12.5	9.48	14.5	1.67	0.70	3.69	1.67	10.8	10.36
2015	1,147	69	55	733	120	82	125	99	286	12	9	38	-	121	131
	100.0	6.02	4.80	63.9	10.5	7.15	10.9	8.63	24.9	1.05	0.78	3.31	-	10.5	11.42
2016	1,511	56	536	643	242	48	117	58	161	8	9	46	16	88	126
	100.0	3.71	35.5	42.5	16.0	3.18	7.74	3.84	10.6	0.53	0.60	3.04	1.06	5.82	8.34
2017	1,428	80	90	994	393	46	137	215	168	7	28	27	4	91	142
	100.0	5.60	6.30	69.6	27.5	3.22	9.59	15.0	11.8	0.49	1.96	1.89	0.28	6.37	9.94
2018	1,102	57	58	756	238	33	146	71	205	47	16	22	11	107	91
	100.0	5.17	5.26	68.6	21.6	2.99	13.2	6.44	18.6	4.27	1.45	2.00	1.00	9.71	8.26



[그림 2] 차별영역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 2018.12.3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접수된 사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건은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영역의 사건으로, 전체 사건 중 60.8%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괴롭힘 등이 10.6%로 높게 나타난다. 이처럼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영역의 사건이 압도적인 비율로 나타나는 것은 이 영역 안에 “재화·용역 일반, 보험·금융, 시설물접근, 이동교통수단, 정보접근·의사소통, 문화·예술·체육, 기타”의 영역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다시 각 세부영역별로 나누어보면 재화·용역 일반 16.3%, 정보접근·의사소통 15.0%, 시설물접근 12.0%의 순으로 높게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장애유형별 차별영역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 4. 11. ~2018. 12. 31.)

(단위: 건)

사건유형	총합계	지체	시각	뇌병변	청각	지적 (발달)	언어	정신 장애	기타	
소계	12,870	4,125	3,277	931	1,314	1,521	98	498	1,106	
고용	769	276	76	63	120	64	15	46	109	
교육	1,173	452	89	63	98	373	8	15	75	
재화· 용역	소계	7,832	2,538	2,690	558	764	586	40	145	511
	재화·용역	2,098	583	695	210	151	254	17	64	124
	보험·금융	754	164	157	74	137	107	9	59	47
	시설물접근	1,548	1,070	212	131	16	16	2	5	96
	이동교통수단	987	536	188	86	27	44	5	2	99
	정보접근·의사소통	1,934	44	1,369	17	361	27	6	2	108
	문화·예술·체육	342	75	29	20	65	122	-	9	22
	기타	169	66	40	20	7	16	1	4	15
사법행정	427	82	91	23	51	78	5	50	47	
참정권	178	60	35	8	8	8	-	3	56	
괴롭힘 등	1,372	345	82	130	220	308	17	158	112	
기타	1,119	372	214	86	53	104	13	81	194	

장애유형별 차별영역 진정사건 접수 현황은 장애의 특성에 따라 접수비율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체장애인의 경우 '시설물접근' 영역이 전체의 약 2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각, 청각장애인의 경우 '정보접근·의사소통' 영역이 가장 높은 비율로 접수되고 있다. 지적(발달)장애인의 경우 전체 장애차별 진정접수사건 중에서 세 번째로 많은 사건 접수건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교육영역에서의 차별이 가장 높은 비율로 접수되고 있고, 비슷한 수준으로 괴롭힘 등도 많이 접수되고 있다. 정신장애인의 경우도 괴롭힘 등의 영역에서의 차별 사건이 가장 많이 접수되고 있으며, 뇌병변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경우 특정 시설의 이용 등을 거부당하는 등 재화·용역 일반 영역에서의 차별 사건이 가장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 차별영역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세부 유형

가. 고용 영역

(단위: 건, %)

접수 년도	공사 구분	고용								
		합계	모집· 채용	임금· 복리후생	배치	승진	직무 관련	퇴직· 해고	교육	기타
합계		769	287	103	79	18	34	166	8	74
		100.00	37.3	13.3	10.2	2.3	4.4	21.5	1.0	9.6
2008	합계	41	19	5	6	1	-	8	1	1
		100.0	46.3	12.2	14.6	2.4	-	19.5	2.4	2.4
	공공	18	11	1	2	1	-	1	1	1
	사적	23	8	4	4	-	-	7	-	-
2009	합계	69	30	12	6	2	1	16	1	1
		100.0	43.4	17.3	8.7	2.9	1.4	23.1	1.4	1.4
	공공	20	11	-	5	1	-	2	-	1
	사적	49	19	12	1	1	1	14	1	-
2017	합계	80	17	13	13	1	4	18	4	10
		100.0	21.2	16.2	16.2	1.2	5.0	22.5	5.0	12.5
	공공	28	11	3	5	1	2	2	2	2
	사적	52	6	10	8	-	2	16	2	8
2018	합계	57	25	7	7	2	4	7	1	4
		100.0	43.8	12.2	12.2	3.5	7.0	12.2	1.7	7.0
	공공	21	12	-	4	2	2	-	-	1
	사적	36	13	7	3	-	2	7	1	3

고용 영역에서는 모집·채용과 퇴직·해고가 각 37.3%, 21.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초반과 시행 후 약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같은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2017년에 단 한 번 근소한 차이로 두 유형의 순위가 바뀌었을 뿐이다). 한편 고용영역에서의 차별 사건 접수 건수는 지난 10년간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공공 영역에 비해 사적 영역에서의 고용차별 접수 건수가 항상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나. 교육 영역

(단위: 건, %)

접수 년도	공사 구분	교육							
		합계	전·입학 거부	시설물 접근·이용	수업·시험 편의제공	수업 등 교내활동배제	특수학급 설치	괴롭힘	기타
합계		1,173	98	65	220	140	93	50	507
		100.0	8.35	5.54	18.76	11.94	7.93	4.26	43.1
2008	합계	61	9	14	14	7	6	3	8
		100.0	14.75	22.95	22.95	11.48	9.84	4.92	13.11
	공공	34	6	7	5	5	5	1	5
	사적	27	3	7	9	2	1	2	3
2009	합계	49	16	2	8	13	1	3	6
		100.0	32.65	4.08	16.33	26.53	2.04	6.12	12.24
	공공	28	7	2	4	8	1	2	4
	사적	21	9	-	4	5	-	1	2
2017	합계	90	19	3	32	7	2	6	21
		100.0	21.11	3.33	35.56	7.78	2.22	6.67	23.3
	공공	77	18	2	30	6	2	5	14
	사적	13	1	1	2	1	-	1	7
2018	합계	58	7	4	15	6	5	8	13
		100.0	12.07	6.90	25.86	10.34	8.62	13.79	22.3
	공공	45	6	2	11	4	5	7	10
	사적	13	1	2	4	2	-	1	3

교육 영역에서는 수업·시험 편의제공, 수업 등 교내활동배제 유형이 각 18.76%, 11.94%로 높게 접수된 것으로 확인된다. 연도별 접수 비율은 매해 약간의 차이를 보이거나 대체적으로 수업·시험 편의제공 유형은 매년 높은 비율로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재화·용역

(단위: 건, %)

접수 년도	공사 구분	재화·용역							
		합계	재화· 용역	보험· 금융	시설물 접근	이동교통 수단	정보접근· 의사소통	문화·예술· 체육	기타
합계		7,832	2,098	754	1,548	987	1,934	342	169
		100.00	26.79	9.63	19.77	12.60	24.69	4.37	2.10
2008	합계	347	26	49	78	128	35	20	11
		100.00	7.49	14.12	22.48	36.89	10.09	5.76	3.17
	공공	140	3	5	26	83	9	8	6
	사적	207	23	44	52	45	26	12	5
2009	합계	412	150	91	93	49	13	13	3
		100.00	36.41	22.09	22.57	11.89	3.16	3.16	0.73
	공공	154	64	7	33	36	4	8	2
	사적	258	86	84	60	13	9	5	1
2017	합계	994	393	46	137	215	168	7	28
		100.00	39.54	4.63	13.78	21.63	16.90	0.70	2.80
	공공	575	277	4	44	186	50	3	11
	사적	419	116	42	93	29	118	4	17
2018	합계	756	238	33	146	71	205	22	41
		100.00	31.48	4.37	19.31	9.39	27.12	2.91	5.40
	공공	323	91	5	82	41	67	13	24
	사적	433	147	28	64	30	138	9	17

재화·용역은 차별 영역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재화·용역 일반, 정보접근·의사소통, 시설물접근 유형이 각 26.79%, 24.69%, 19.77%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라. 괴롭힘 등 영역

(단위: 건, %)

접수 년도	공사 구분	괴롭힘 등							
		합계	따돌림	유기·방치	성폭행	폭행·학대	금전착취	모욕·비하	기타
합계	합계	1,372	28	32	29	225	146	798	114
		100.00	2.04	2.33	2.11	16.40	10.64	58.16	8.20
	공공	230	7	3	4	38	5	149	24
	사적	1,142	21	29	25	187	141	649	90
2008	합계	42	-	-	3	5	7	26	1
		100.00	-	-	7.14	11.90	16.67	61.90	2.38
	공공	2	-	-	-	-	1	-	1
	사적	40	-	-	3	5	6	26	-
2009	합계	105	1	4	6	19	16	53	6
		100.00	0.95	3.81	5.71	18.10	15.24	50.48	5.71
	공공	18	1	-	-	4	-	12	1
	사적	87	-	4	6	15	16	41	5
2017	합계	91	4	2	1	17	12	50	5
		100.00	4.40	2.20	1.10	18.68	13.19	54.95	5.50
	공공	19	1	1	-	6	-	10	1
	사적	72	3	1	1	11	12	40	4
2018	합계	107	2	-	1	16	2	70	16
		100.00	1.87	-	0.93	14.95	1.87	65.42	14.90
	공공	48	-	-	-	3	-	41	4
	사적	59	2	-	1	13	2	29	12

괴롭힘 등 영역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후 접수된 전체 장애차별 진정사건 12,870건 중 재화·용역 영역(7,832건) 다음으로 높은 비중(1,372건)을 차지하는 영역이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345건), 지적(발달)장애인(308건)의 접수건수가 많은데, 장애유형별 인구수를 고려할 때 특히 지적(발달)장애인이 주로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괴롭힘 등 영역에는 따돌림, 유기·방치, 성폭행, 폭행·학대, 금전착취, 모욕·비

하, 기타 등이 포함되고, 그 중에서도 특히 모욕·비하(58.16%), 폭행·학대(16.40%) 유형이 높게 접수되고 있다. 또한 피해가 발생하는 영역이 공공 영역에 비해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피해자의 친구나 가족, 지인 등 주변 인들에 의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

가. 연도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2001. 11. 25.~2018. 12. 31.)

(단위: 건)

합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3,063	22	18	39	116	90	255	455	721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101	952	1,508	1,563	1,096	1,085	1,640	1,086	1,316

위원회 설립 이후 2018. 12. 31.까지 접수된 장애차별 사건은 총 13,523건이며, 이 중 처리된 사건은 총 13,063건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후에는 접수된 사건 총 12,870건 중 12,481건이 처리되어, 약 97%가 처리되었다.

나. 진정사건 처리 유형별 현황

처리된 장애차별 진정사건 중 권고, 합의, 고발, 징계권고 등으로 인용된 사건은 870건이고,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해결되어 취하하는 등 각하, 기각 등으로 처리된 사건은 11,605건이며, 각하 또는 기각된 사건의 세부 현황은 아래와 같다.

(단위 : 건)

종료 년도	합계	인용								미인용				
		소계	수사 의뢰	조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긴급 구제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합계	12,481	870	4	5	456	11	8	1	385	11,605	6,815	49	4,729	18

- * 조정: 장애차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성립이 되어 종결된 것임.
- ** 합의종결: 진정사건 조사 중에 당사자가 상호 합의를 작성하여 사건이 종결된 것임.
- *** 조사중 해결: 진정사건 조사 중에 권리구제가 완료되어 더 이상의 조치가 필요 없어 기각 처리한 경우임.
- **** 각하: 진정 내용이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진정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등 임.

다. 각하2) 사유별 현황

(단위 : 건)

총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법원확정 판결	조사중 각하
6,815	1,095	32	133	83	150	10	70	5,128	96	6	12

-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① 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却下)한다.
1.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4.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다만,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진정이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7.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9. 위원회가 기각한 진정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
 10. 진정의 취지가 그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 ③ 위원회가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그 진정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라. 기각3) 사유별 현황

(단위 : 건)

소계	제1호-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제2호-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제3호-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음
4,729	679	1,243	2,807

II.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교육권 관련 권고 사례

강원지역에서는 2017. 3. 초등학교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한 사건이 발생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관련 교사들을 징계할 것을 권고한 사례가 있고, 2018. 7.에는 특수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학생 성폭행, 회계부정 등의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로 인해 수사 등이 진행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이후 해당 특수학교를 공립으로 전환하였고, ‘2019 장애 학생 인권 보호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실행하기로 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장애 학생 인권침해 감지, 행동과 인권, 치유 지원, 환경 개선, 자기 보호 역량 강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인권침해 사건의 은폐·축소를 방지하고 피해 학생을 신속히 돕기 위해 ‘온라인 인권 보호 지원센터’를 홈페이지에 설치, 특수학교 내 행동지원팀 구성 및 도교육청에서 행동 지원 전문가단을 구성·운영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의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개선이 요구되어 왔으나 여전히 당사자와 가족, 교육현장의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도 꾸준히 관련 사건이 접수되고 있는바, 그동안 교육권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결정한 개별 진정 사건과 정책권고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 3) 제39조(진정의 기각)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
1.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조사 결과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진정사건 및 권고 결정례

가. 장애학생에 대한 수업배제 등 차별(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2012. 1. 10. 10-진정-0710700 결정)

1) 진정요지

피해자는 A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청각장애 학생으로,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두 차례 폭행을 당하였으나, 담임교사인 피진정인은 가해 학생의 말만 듣고 피해자에게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한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하며 집에서 쉬라고 하였다. 이후 진정인이 자녀인 피해자를 등교시키기 위해 연락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전화상으로 피해자의 등교를 사실상 거부한바, 이는 수업 참여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피해자를 차별한 것이다.

2) 판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은 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의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특수교육법이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 제2항은 각급 학교의 장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수업참여 배제 및 교내외 활동 참여 배제 등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등에 따라 담임교사인 피진정인은 학교폭력사건에 대해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교장은 자치위원회에서 이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자체 조사 과정에서 사건 관련 상대 학생과 목격자인 학급 동료들, 교사들로부터는 서면진술서를 받은 반면, 피해자로부터는 어떠한 진술서도 받지 않아 제대로 된 진술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폭력사건의 가해자로 잠정결론지어 수업참여를 제한하였다.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피해자를 수업참여에서 배제한 행위한다고 판단된다.

3) 권고내용

학교장에게,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교직원 대상 장애인차별 예방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할 것, 교육감에게 향후 관내 학교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대상 장애인 차별예방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나. 장애학생에 대한 불리한 진술 강요(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2014. 11. 17. 14-진정-0309200 결정)

1) 진정요지

피해자는 중학교 3학년 남학생(중복장애 1급)으로 학교 정문 밖 언덕길에서 같은 학교 1학년 여학생(지적장애 2급)을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학교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의 신뢰관계자를 동석시키지 않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였다.

2) 판단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제10호에서, ‘아동은 증언 또는 유죄의 자백이나 인정을 강요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강요’는 신체적 폭력이나 여타의 명백한 인권침해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아동의 연령과 발달, 심문기간, 아동의 이해부족, 불확실한 결과 또는 암시된 수감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은 그로 하여금 사실이 아닌 것을 자백하도록 만들 수도 있으므로, 심문을 받는 아동은 법적 또는 여타의 적절한 대리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심문 중에 부모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법원 또는 여타의 사법기관은 아동에 의한 인정 또는 자백의 자발성과 신빙성을 판단할 때 아동의 연령, 구금과 심문기간, 그리고 법적 또는 여타의 조연자, 부모, 아동의 독립적 대리인 등의 동석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아동권리협약 제12조 제1항,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2조 제3항에 따라,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하

여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자신의 견해(이 견해에 대하여는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된다)를 자유로이 표현할 권리를 갖고, 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장애 및 연령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별도의 명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학교의 장은 장애아동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와 신뢰관계인의 동석이 차별 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은 사안조사 이전에 보호자에게 통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2014년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 모니터링단 운영 매뉴얼은 신고접수 단계에서 피해·가해학생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애학생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일 경우 처리 절차상 유의사항으로 장애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있는 특수교사나 장애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여 의사표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진술권을 보장토록 하여 장애인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 하면 안 된다”. “밖에 나가면 감옥에 간다”는 등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불확실한 결과 또는 암시된 수감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주어 자백을 강요하는 질문 형식을 취하였으며, 특수교사를 조사장소에서 나가도록 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특수교사는 피해자의 진술조력인이 아닌 교사인 피진정인의 조력인의 역할에 그쳤으며, 해당 학교장과 교감은 조사과정에 피해자의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는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장애아동인 피해자의 진술방어권과 신뢰관계자 및 진술조력인에게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3) 권고내용

학교장에게 교사인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주의 등의 조치를 하고,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장애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 교육부장관 및 해당 시 교육감에게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 과정에서 장애아동의 진술 방어권과 신뢰자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다. 장애특례전형 실기시험 시 장애인차별(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2014. 12. 16. 13-진정-0787500 결정)

1) 진정요지

피해자는 2014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으로 A예술고등학교 첼로 전공에 지원하였는데, 학교장인 피진정인은 일반전형과 달리 해당 악기의 전공자를 포함하지 않고 학내 교사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로 피해자의 실기평가를 진행하였다.

2) 판단

피진정인은 일반전형 실기평가의 경우 외부심사위원을 초빙하여 학내 교사와 함께 심사위원을 구성한 반면,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의 경우에는 학내에 해당 악기 전공자가 없음에도 외부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학내 음악교사들로만 심사위원을 구성하였다. 일반전형이나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모두 실기평가가 당락을 좌우하는 평가절차이고, 최종 학교배정은 교육감이 하지만 특수목적고의 경우 학교장의 의견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수교육대상자의 실기평가는 실질적으로 장애학생의 입학여부를 가르는 평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실기평가를 해당 악기 전공자가 포함되지 않은 심사위원들로 구성한 것은 피해자의 예술적 능력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학내 교사들로만 구성된 심사절차는 학생의 학교적응능력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는바, 이는 「국가인권위원회」 제2조 제3호의 교육시설에서 합리적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구별하여 대우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3) 권고내용

피진정인에게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개선할 것, 도교육감에게 특수목적고 특수교육대상자 실기평가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라. 장애학생에 대한 의료조치 편의 미제공(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2017. 6. 12. 16-진정-0644000)

1) 진정요지

피해자1은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며, 연하근란 장애(삼킴 장애, 가래나 음식물을 삼키지 못하는 장애)가 있어서 가래흡인조치가 필요하다. 2013. 3. 피진정특수학교에 입학하여 학교일과 중 1~2회 정도 담임교사로부터 가래흡인 조치를 지원받아 왔는데, 2014. 11. 경 가래흡인기의 캐놀라가 빠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피진정인은 '교사에게 가래흡인을 하게 한 행위는 불법의료행위를 시키는 것'이라고 하며 어머니인 피해자2를 비난하였고, 이후 피해자2는 하루 2차례 정도 학교를 방문하여 피해자1에 대하여 가래흡인조치를 하고 있다.

2) 판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교육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교육보조인력, 의소소통수단, 시설이나 설비 등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활동에 필요한 편의는 위 법령에서 예시하고 있는 사항 외에도 장애의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다양할 수 있고, 장애학생 중 섭식, 배설, 호흡, 복약 등의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도움은 장애학생의 건강과 생명유지에 관련된 의료조치에 해당할 수 있는 한편, 장애학생의 학습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미국, 일본의 경우 의사 자격을 가지지 않았더라도 훈련을 받은 담임교사 등이 가래 제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부장관과 해당시교육감 역시 의사의 진단서에 의해 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가 학교에서 해당 의료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같은 중도중복장애학생에 대한 가래흡인 조치는 장애인에게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책임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에 해당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책임자는 해당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이 사건의 피진정학교에는 간호사 자격을 가진 보건교사가 상근하고 있고, 가래흡인 조치는 하루 2~3회 정도 시행하면 되는 것으로 이것이 보건교사에게 과도한 업무부담 이 된다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에게 해당 조 치를 지원하는데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권고내용

학교장에게 중도중복장애학생의 가래흡인 의료조치 편의를 지원할 것, 교육부장관에게 학습활동에 필수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한 장애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마. 하절기 장애인 특수학급 에어컨 미가동 등에 의한 차별(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2017. 10. 31. 17-진정-0627100 결정)

1) 진정요지

A초등학교 교장인 피진정인은 하절기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인 피해자들이 수업하는 특수학급의 교실에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아 피해자들이 더위로 인한 고통을 겪었다.

2) 판단

A초등학교는 23개 학급, 554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고, 피해자 6명은 장애를 가진 학생들로 이 학교의 각 저학년, 고학년 특수반 학급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 학교의 에어컨은 피진정인이 전달하는 ‘에어컨 가동 시간표’에 따라 행정실에서 가동을 제어하고 있는데, 2016년 가동 시간표에는 2개의 특수반에 대해 학습시간 외에 특수교사 등이 점심식사를 하는 1시간 동안만 저학년 특수반의 에어컨을 가동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2016년 기상청 관측상 수업기간 중 해당 지역의 가장 더운 날은 32.3도로, 이 날의 에어컨 가동 시간표에 따른 가동시간은 교장실은 09:08~16:00, 그 외 각 학년 교실, 음악실 등 각종 시설에 에어컨을 가동하였으나, 특수반 2개 학급 교실에는 에어컨이 가동 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 중 한 학생은 “왜 6학년 3반은 에어컨 틀어주는데, 여기는 안틀어요?”라고 호소하였고, 다른 학생은 눈이 풀리고 힘들어 하여 특수교사인 진정인

이 얼음팩을 대주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조는 교육책임자가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학습,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의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특수반의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은 피진정인의 행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장애학생 스스로 비장애인과 달리 차별을 받는 존재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였으며,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권고내용

교육감에게 피진정인을 징계할 것,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장애인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바. 교육시설 이용 장애인차별(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2015. 1. 19.자 14-진정-0870400 결정)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청각장애 3급의 장애가 있으며, 직업훈련을 받고자 A직업전문학교에 개설된 교육과정에 수강신청을 하였으나 피진정인이 청각장애를 이유로 수강신청을 거부하였다.

2) 판단

A직업전문학교는 「근로지직업능력 개발법」 및 「직업교육 촉진법」 제2조에 근거한 실업자와 재직자의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직업훈련기관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호의 교육기관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4

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등의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입학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청각장애로 개별지도가 어렵다는 사유로 진정인의 수강신청을 거절한바, 진정인은 개별지도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한 교육과정 이수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진정인에게 필요한 정당한 편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진정인이 청각장애로 수업 진도를 따라가기 어렵다거나 개별지도를 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진정인의 수강신청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3) 권고내용

피진정인에게 교육운영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과 장애인 차별예방교육을 실시할 것,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장애인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교육과 안내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정책권고 결정례

가. 통합교육환경에서의 장애인 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2015. 7. 2. 상임위원회 결정)

1) 배경

2014. 9. 30.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정부에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학생들이 특수학교로 돌아가고 있고, 욕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같은 해 실시한 『장애학생 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에서도 국내의 통합교육이 물리적인 통합에만 그치고, 장애학생의 개별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통합교육 환경에서 장애학생이 인권침해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개개인의 교

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권고를 검토함

2) 학교폭력 등의 인권침해 실태

국가인권위원회가 2014년 실시한 『장애학생 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에서 일반학교에서 일반교사, 특수교사, 학부모, 보조인력이 응답한 장애학생의 학교폭력 경험률은 36.7%, 놀림, 비하, 협박, 욕설 등의 언어폭력은 24.0%, 금품갈취, 과도한 장난, 강제심부름, 따돌림 등의 괴롭힘은 19.2%, 상해, 폭행, 체벌 등의 폭력은 16.0%였다. 또한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사생활 침해 경험률은 16.3%였는데, 그 중에서 사적공간 침해가 12.1%, 소유물 침해 4.4%, 초상권침해 1.9%, 개인정보유출 1.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적공간 침해의 경우 남학생(17.2%)이 여학생(7.0%)보다, 중증 장애학생(20.3%)이 경증 장애학생(12.2%)보다 더 많이 경험하는데, 이는 중증 장애학생의 신변 처리나 착·탈의를 돕는 보조인력의 다수가 여성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3) 교육차별 실태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적 방임을 경험한 비율은 4.7%, 교육기회의 차별이 12.5%, 그 중에서 교내외활동배제가 13.7%로 국립특수교육원이 실시한 『장애학생 인권실태·인식조사』에서도 교내외 활동배제가 15.2%로 나타났다. 교내외 활동배제의 주요한 이유는 교육편의 미제공이 29.9%를 차지하는데, 그 중에서 통학지원 미제공 21.8%, 의사소통 미지원 13.2%, 보조인력 미지원 9.8%, 정보접근 미지원 8.8%, 교수학습자료 미지원 4.4%, 편의시설 미지원 2.0%로, 특수교육 보조인력이나 의사소통기기 등의 교육편의 미지원이 교내외 활동의 배제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 외 교육활동이나 교육행정에 있어서 장애학생의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14.4%였고, 그 중에서 평가과정에서의 비고려가 8.0%, 행정적 조치에서의 비고려가 7.2%, 수험편의 비고려가 5.3%, 교육과정운영 과정에서의 비고려가 4.4% 순으로 나타났다.

4) 권고내용

①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장애인 전문가 참여, 성비균형을 고려한 보조인력 확충 및 보조인력 대상의 인권교육 실시, 교육편의지원에 대한 예

산 확대와 교육·안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 전공 장학사 배치, 일반교사의 통합 학습운영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장애학생의 자기옹호 역량강화 및 전체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예방교육 강화할 것, ② 교육부장관에게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활동 강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장애학생 의사소통지원을 위한 인력 배치 및 지원 체계 구축, 학교폭력대책기구에 장애인 전문가 참여, 평가조정을 포함한 교육편의지원에 대한 연구 추진, 특수교육교원 법정 정원 확보와 특수학교(급) 신·증설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이행, 17개 시·도 교육청 대상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정책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것, ③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특수교육교원 증원과 법정 정원 확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정책의 시행을 권고한다.

나. 장애 영유아 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상임위원회 2017. 3. 23. 결정)

1) 배경

2008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으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과 만 3세 미만의 장애 영아에 대한 무상교육이 제도화되어 장애 영유아의 교육기회가 확대되었다. 위 법 시행 이후 8년이 지나면서 장애 영유아의 교육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년 『장애영유아 교육권 증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2) 유치원의 장애 유아 교육권 증진

가)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 확보

2016. 4. 현재 유치원의 법정 정원 대비 특수교사 확보율은 65.9%에 불과하고, 부족한 정원을 시간제, 기간제 교사로 충원하고 있는데, 이들은 고용과 지위가 불안정하여 장애 유아 교육의 연속성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특수교사 법정 정원 미확보의 문제는 장애인 교육현장의 공통적인 문제인데, 특히 정원 미확보로 인한 유치원의 잦은 인력 교체는 장애 유아에 대해 양질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요인이 된다.

나) 특수학급의 설치 증대 등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학급을 설치한 유치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2015년의 경우 8,921개 유치원 중 5.4%인 482개 유치원에만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초등학교 67.0%, 중학교 55.8%, 고등학교 42.7%보다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한편, 「특수교육법」 제27조 제1항은 유치원 특수학급의 정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에서 특수학급의 학급당 인원수를 준수하지 않거나, 장애 유아를 정원 외로 입학 시키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 경우 유치원에서 실제 교사가 담당하는 장애유아의 수가 증가하여 통합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제한·배제·분리 등의 차별적 처우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

3) 어린이집의 장애 영유아 교육권 증진

「특수교육법」 제19조 제2항은 어린이집에서의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을 인정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비교할 때 시설, 특수교사 및 치료사 등 전문인력 배치, 교사 처우, 장애 유아 1인당 교육비·교재교구비 및 급식비 지원금, 통학 지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유치원 수준에 크게 못미쳐 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제26조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취약보육, 즉 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약보육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교육부의 긴밀한 협의와 연계 하에 어린이집의 교육여건을 유치원 수준으로 상향시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가) 장애 영유아 교육을 위한 최소지원환경기준 설정 및 지원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누리과정의 시행으로 교육과정이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인력, 시설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유치원의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시설 미비 등을 이유로 장애 유아의 입학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나) 유아특수교사 충원 등

2015년 보육통계에 의하면 장애아전문어린이집과 통합어린이집의 특수교사 확보율은 60.3%에 불과하여 유치원보다도 낮다. 특수교사 구인난은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와 관련된 구조적 문제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사의 처우개선을 포함하여 특수교사 충원을 위한 구체적 계획 및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는 어린이집 특수교사를 충원하여야 하나 단시일 내에 달성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장애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정보와 상담 등을 담당하는 보육종합지원센터에 특수교사를 배치해 관할 지역 내 어린이집에 대한 특수교육서비스를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 보조인력 등 정당한 편의 제공

어린이집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린이집 단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원이나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어린이집에서 요구되는 정당한 편의 제공의 유형이 제대로 파악되어 있지 않아, 이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한 장애아통합어린이집 등 보육기관 설치 증대

실태조사 결과 장애 유아의 집 근처에 이용 가능한 무상·의무교육기관이 있다는 답변 비율이 57.8%에 불과하였다. 2015년 기준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설치비율은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각 64.0%, 60.3%로 전국 평균 36.3%를 상회하나 대구광역시 11.8%, 광주광역시는 2.0%로 매우 낮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설치비율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22.0%, 대구광역시가 15.5%로 전국 평균 7.0%보다 높다. 이와 같은 장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분포의 지역별 편차로 인해, 부모들은 장애 영유아의 보육을 위해 적절한 보육시설을 찾아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4) 장애의 조기발견과 조기 지원체계 구축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의 부담으로 6세 미만 영유아 대상의 정기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특수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단·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육아정책연구소의 2015년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 연구’에 의하면 장애 영유아 추정수 54,837명 중 38,768명은 유치원, 어린이집 어느 곳에도 배치되지 않았고, 2012년 ‘장애아 표준보육비 산출 방안, 장애아보육의 질 개선 방안 토론회 자료집’(유영준, 김기룡)에 따르면, 만 3~5세 장애 유아의 26.2%는 교육기관 등을 이용하지 않아, 1/4이상의 장애 유아가 적기의 교육과 치료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징후와 진단 및 검진에 대한 정보, 영유아 시기에 필요한 치료나 교육, 가족지원 등의 지원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연계·조정해주는 기관이 없고, 기관 간 연계와 협력도 부족하다. 보건소나 의료기관의 검사 정보가 특수교육지원센터나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 영유아 중재기관으로 연계되지 않으며, 지역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및 읍면동 주민센터는 각 기관에 한정된 교육이나 재활서비스, 복지시책 등에 대한 상담과 서비스 지원을 할 뿐 장애 영유아의 발달이나 장애 정도에 맞는 전문적인 상담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 지원

장애의 조기발견과 조기지원을 위해 장애 영유아와 가족을 위한 상담과 정보, 치료·교육·복지서비스를 연계·조정할 수 있는 장애조기지원센터의 설치가 필요한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센터의 설치·

운영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현재 3개 지역에만 자치조례에 의하여 지역장애아동지원 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나) 의료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최초로 장애를 진단하게 되는 의료인이나 의료관계자의 역할이 중요한데,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의 출생 보고 및 정보의 기록·관리에 관하여 규정한 「모자보건법」 제8조 제4항 및 제5항, 제9조의2 이외에 장애의 조기발견이나 지원에 대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한편, 「특수교육법」 제14조는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선별검사, 진단검사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의 검사결과가 지원기관이나 증재기관 등에 연계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5) 권고내용

① 교육부장관에게 유치원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통합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유치원 특수학급의 설치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개별 유치원에 대해 특수학급의 정원을 준수하고 장애 유아를 정원 내로 입학 시키도록 하는 지침을 강화할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유아의 의무교육을 위한 최소지원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이러한 기준에 맞추어 장애 영유아 교육기관의 교육환경 수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아특수교사를 충원하고 보육종합지원센터에 특수교사를 배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보조인력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비롯한 장애 영유아 보육기관의 설치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를 지원하고, 의료기관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등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지원체계를 구축할 것 ③ 국무총리에게 장애영유아 교육권 증진, 장애의 조기발견과 조기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위 권고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의 정책 조정 등을 수행할 것을 권고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1주년 기념
장애인 교육권 차별, 현황 및 대응방안 토론회

발제 2

교육 현장에서의 장애학생 인권 침해 실태 및 인권 증진 방안

김기룡

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교육 현장에서의 장애학생 인권 침해 실태 및 인권 증진 방안

김기룡 (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1. 교육 현장에서의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 유형

교육 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는 폭력, 성폭력, 괴롭힘,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등 학교폭력의 형태(이현수, 유숙렬, 2012), 자유권, 평등권 또는 인간존엄권 등 보편적인 권리 침해 형태(주혜영, 박원희, 2006), 장애를 이유로 한 교육 기회 참여 제한, 배제, 분리, 거부의 형태(박옥순, 2002),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차별 또는 간접차별의 형태(김주영, 2009; 권희순, 2013)로 발생되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의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는 장애학생의 학교 참여를 제한하고, 학교생활에 대한 부적응을 초래하며, 학교 졸업 이후 지역사회로의 통합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점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김지원, 박지연, 2014; 이효정, 2013).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학교폭력과 같은 인권 침해 경험이 학생의 학업성적, 학교생활적응, 삶의 질, 자아존중감 등 다양한 심리적 변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도현심, 신정님, 1999; 임신일, 이정미, 2013). 따라서 장애학생이 교육 현장에서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교육 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전체 학령기 장애학생을 다루기보다는 초등(최영하, 박경수, 2000; 오원석, 2011; 최윤정, 강영심, 이정은, 2013), 중등(윤명희, 이승희, 2004; 오원석, 정은영, 2010) 등 학교과정을 구분하여 통합교육 현장에서의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 보장 현황

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를 학교폭력(송영범, 권상순, 이영순, 2013; 김양화, 김남순, 2013), 교육기회 차별(권희순, 2013), 자유, 평등 또는 인간존엄에의 차별(주혜영, 박원희, 2006) 등으로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 유형의 차이는 연구자마다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를 다양한 이론과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이다.

김계옥, 강성중, 김주영, 박종운 등(2012)은 장애학생의 인권침해에 대한 서로 다른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한 8가지 영역의 인권 유형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인권 보장 수준을 알아보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장애학생의 인권 범주를 교육권, 보호권, 생존권 및 건강권, 시설·이동 및 정보접근권, 직업 및 고용에 대한 권리, 문화 및 여가에 대한 권리, 자유 및 의사표현에 대한 권리, 예방과 권리구제 등 8가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범주는 장애학생의 교육 현장에 모두 적용하기 어려운 권리 개념이 포함되어 있고, 그 수준을 알아보는데 필요한 도구를 개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애학생의 교육 현장에서의 인권 보장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적절한 인권 침해 유형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일반학생의 인권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학생인권을 아동의 생명, 신체, 정신적 자유를 의미하는 자유권 또는 기본적 인권, 기본적 건강과 복지,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 조치, 가족환경과 대체적 보호 등에 관한 권리를 의미하는 사회권, 평등권, 복지권 또는 사회적 지위권 등 두 개의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다(이수광, 2000; 최윤진, 1995). 이 중 자유권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에 관한 자유를 의미하고, 이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는 상해, 폭행, 감금, 약취, 유인 등의 신체상의 침해와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따돌림 등 정신상의 침해 등이 있다. 따라서 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학교폭력의 유형과 대부분 일치한다. 이는 학교폭력이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로 굴욕감을 주어 신체상, 정신상의 피해를 입히는 자유권 침해와 관련된 행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폭력은 학생의 일상에서 신체적, 정서적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자유권 침해 행위로 분류되고 있다(전영주, 아영아, 이경희, 정수연, 2013).

사회권에 해당되는 영역의 경우 차별 없이 교육 현장에 참여하고, 학생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한 복지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이수광, 2000). 이를 장애학생에게 적용해 본다면, 장애를 이유로 교육 현장에 참여하는 것을 차별하는 행위, 장애의

특성과 장애학생의 요구를 고려하지 않아 불리한 결과를 얻게 되는 행위 등이 사회권의 영역에 해당되는 인권 침해 유형이라 볼 수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를 각각 직접차별과 간접차별로 구분하고 있고 이를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직접차별은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로 인해 비슷한 처지의 사람에 비해 덜 우호적으로 대우할 때 발생하는 것이고, 간접차별은 중립적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장애인에게 불리함을 가져오는 경우를 의미한다(김진우, 2008). 간접차별의 경우 장애를 고려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공해 주지 않는 행위, 장애를 고려한 조치를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리한 결과를 얻게 되는 행위로 제시할 수 있다(김진우, 2008).

이상과 같은 학생의 인권 유형에 관한 연구에서 교육 현장에서의 장애학생의 인권 침해 유형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이 제한되는 자유권 침해 또는 학교폭력, 장애를 이유로 교육기회를 제한당하는 직접차별, 장애를 고려한 조치를 제공하지 않는 간접차별 등과 같은 장애차별로 각각 구분해 볼 수 있다. 장애학생의 인권 침해 유형을 구체적으로 분류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교육 현장에서의 장애학생 인권 침해 유형

인권 침해 유형			인권 침해 행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학교 폭력	폭력	구타	장애학생을 상대로 신체를 손, 발로 때리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고통을 가하는 행위
		체벌	과잉행동에 대한 대가로서 장애학생에게 체벌을 가하는 행위
	성폭력	성폭행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성추행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성적 모멸감을 주는 신체적 접촉 행위
	언어 폭력	놀림	장애학생의 말이나 행동을 따라하며 악을 올리거나 놀리는 행위
		비하	장애학생의 외모, 성격, 장애, 능력에 대해 비하하거나 경멸하는 행위
		협박	‘가만두지 않겠다.’, ‘없애버리겠다’ 등 장애학생을 처벌하겠다고 위협하는 말로 협박하는 행위
		욕설	장애학생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빈정거리는 행위

인권 침해 유형			인권 침해 행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괴롭힘	금품갈취	장애학생의 돈이나 물건(시계, 운동화, 가방, 옷, 문구류 등)을 갈취하는 행위	
		과도한장난	장애학생에게 발 걸기, 물건 던지기 등 과도한 장난으로 장애학생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	
		강제심부름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강제로 심부름을 시키거나 하기 싫은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따돌림	함께 해야 하거나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에 장애학생을 일부러 끼워주지 않거나 따돌리는 행위	
	사이버 폭력	휴대폰폭력	장애학생의 휴대폰을 통해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장하는 문자, 영상 등이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인터넷폭력	장애학생에게 위협, 조롱, 성적수치심을 주는 글, 그림 또는 동영상 등이 다양한 매체로 유포하는 행위	
	사생활 침해	사적 공간 침해	장애학생의 화장실 이용, 착·탈의 시 성이 다른 사람이 도움을 주는 행위	
		초상권 침해	학교구성원 중 누군가가 장애학생이 사진찍기를 거부했으나 억지로 사진을 찍는 행위	
		소유물 침해	학교구성원 중 누군가가 장애학생의 소지품이나 개인 물건을 함부로 뒤지는 행위	
		개인정보유출	장애학생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학교 홍보물, 표현물 등에 학생의 신체 또는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장애 차별	교육적 방임	장기결석방치	장애학생이 장기간 무단결석이 계속되어도 이를 허용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교육적무관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학생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지원을 거부하는 행위
교육 기회 차별		입학거부	장애를 이유로 학교의 입학 원서 접수를 거부하는 등 장애학생의 입학을 거부하는 행위	
		분리교육강요	통합교육을 받던 장애학생에게 특수교육기관으로의 전학 또는 특수학급에서의 전일제 수업을 강요하는 행위	
		학업시수위반	특별한 이유 없이 장애학생의 학업시수를 제한하거나 수업일수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교내활동배제	장애학생이 정규 교과 수업 또는 실험·실습 등의 활동 중심 수업의 참여를 제한, 거부하는 행위	
		교외활동배제	장애학생이 운동회, 소풍,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교 밖 활동 참여를 제한, 거부하는 행위	
		시험참여배제	장애학생이 국가단위, 교육청단위 및 학교단위의 시험을 제한, 거부하는 행위	

인권 침해 유형			인권 침해 행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편의 제공 미지원	편의시설 설치거부	장애학생의 학교 건물로의 이동 또는 접근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통학지원거부	장애학생의 등하교에 필요한 이동 차량 또는 보조인력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보조인력 제공거부	장애학생의 학습 및 교내외 활동 참여에 필요한 보조인력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교수학습자료 제공거부	장애학생의 수준에 맞는 교수학습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의사소통 제공거부	장애학생의 장애유형을 고려한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정보접근 제공거부	장애학생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학교의 정보를 장애학생에게 적합한 방식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장애 비교려 조치	수험편의비고려	장애학생의 시험 시간, 시험 장소, 시험 응시 방법을 조정해 주지 않는 행위
		평가과정비고려	장애학생에 평가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대안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행위
		교육과정운영비고려	장애학생의 수준을 고려한 적절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는 행위
		행정적조치비고려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별도의 부서를 설치하지 않거나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배치하지 않는 행위

※ 출처: 김삼섭, 김기룡, 박은혜 (2014). 장애학생 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통합교육 현장의 교육권 침해를 중심으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자료 재구성.

2. 교육 현장에서의 장애학생 인권 침해 실태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통합교육 현장(김삼섭 외, 2014), 장애영유아 교육기관(김삼섭, 김기룡, 이명희, 노진아, 2015), 중증중복장애학생이 재학하는 특수학교(김기룡, 이명희, 박경옥, 김지연 등, 2018) 등을 대상으로 인권 상황 실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조사 결과는 위에서 제시한 장애학생 인권 침해 유형을 바탕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이 결과를 중심으로 교육 현장에서의 장애학생 인권 침해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통합교육 현장에서의 장애학생 인권 침해 실태

김삼섭 외(2014)는 통합교육 현장에서 장애학생의 인권 침해 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전국 단위로 표집한 특수교사, 일반교사, 보조인력 및 학부모 1,606명을 대상으로 위에서 제시한 인권침해 유형에 따라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통합교육 현장에서의 장애학생 인권 침해 사건 경험자 수를 대분류 유형, 중분류 유형, 소분류 유형 및 학교구성원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통합교육 현장에서의 장애학생 인권 침해 사건 경험자 수에 대한 학교구성원별 비교
단위: 명(%)

인권 침해 유형			특수교사 (n = 399)	일반교사 (n = 577)	보조인력 (n = 263)	학부모 (n = 367)	전체 (n = 1,606)	χ^2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폭력	상해·폭행	상해·폭행	54 ¹⁾ (13.5)	24(4.2)	29(11)	52(14.2)	159(9.9)	35.095***
		체벌	75(18.8)	25(4.3)	43(16.3)	42(11.4)	185(11.5)	55.995***
계 ²⁾ (폭력 경험자 수)			95(23.8)	41(7.1)	56(21.3)	65(17.7)	257(16)	88.792***
성폭력	성폭행	성폭행	14(3.5)	9(1.6)	4(1.5)	5(1.4)	32(2)	6.296
		성추행	12(3)	13(2.3)	5(1.9)	8(2.2)	38(2.4)	1.044
		계(성폭력 경험자 수)	21(5.3)	16(2.8)	7(2.7)	9(2.5)	53(3.3)	6.856
학교 폭력	언어 폭력	놀림	78(19.5)	72(12.5)	57(21.7)	121(33)	328(20.4)	58.399***
		비하	55(13.8)	51(8.8)	31(11.8)	83(22.6)	220(13.7)	37.027***
		협박	24(6)	18(3.1)	10(3.8)	30(8.2)	82(5.1)	13.434**
		욕설	34(8.5)	40(6.9)	19(7.2)	62(16.9)	155(9.7)	29.329***
		계(언어폭력 경험자 수)	91(22.8)	95(16.5)	63(24)	136(37.1)	385(24)	61.234***
괴롭힘	괴롭힘	금품갈취	20(5)	13(2.3)	10(3.8)	10(2.7)	53(3.3)	6.237
		과도한장난	33(8.3)	25(4.3)	20(7.6)	39(10.6)	117(7.3)	14.127**
		강제심부름	23(5.8)	19(3.3)	10(3.8)	22(6)	74(4.6)	5.478
		따돌림	71(17.8)	56(9.7)	39(14.8)	92(25.1)	258(16.1)	40.551***
		계(괴롭힘 경험자 수)	86(21.6)	68(11.8)	46(17.5)	109(29.7)	309(19.2)	50.408***
사이버 폭력	사이버 폭력	휴대폰폭력	7(1.8)	7(1.2)	5(1.9)	5(1.4)	24(1.5)	.832
		인터넷폭력	3(0.8)	9(1.6)	1(0.4)	1(0.3)	14(0.9)	5.488
		계(사이버폭력 경험자 수)	8(2)	10(1.7)	6(2.3)	6(1.6)	30(1.9)	7.022

인권 침해 유형			특수교사 (n = 399)	일반교사 (n = 577)	보조인력 (n = 263)	학부모 (n = 367)	전체 (n = 1,606)	χ^2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사생활 침해		사적 공간 침해	91(22.8)	15(2.6)	62(23.6)	26(7.1)	194(12.1)	133.399***
		초상권 침해	14(3.5)	8(1.4)	4(1.5)	5(1.4)	31(1.9)	7.011
		소유물 침해	27(6.8)	10(1.7)	12(4.6)	21(5.7)	70(4.4)	16.756**
		개인정보유출	7(1.8)	3(0.5)	1(0.4)	7(1.9)	18(1.1)	6.675
		계(사생활침해 경험자 수)	113(28.3)	26(4.5)	73(27.8)	50(13.6)	262(16.3)	133.588***
		계 ³⁾ (인권 침해 경험 횟수)	219(54.9)	146(25.3)	135(51.3)	180(49)	680(42.3)	113.369***
교육적 방임		장기결석방치	8(2)	9(1.6)	1(0.4)	4(1.1)	22(1.4)	3.465
		교육적무관심	17(4.3)	12(2.1)	9(3.4)	22(6)	60(3.7)	9.984*
		계(교육적방임 경험자 수)	23(5.8)	18(3.1)	10(3.8)	24(6.5)	75(4.7)	8.900
교육 기회 차별		입학거부	3(0.8)	3(0.5)	3(1.1)	13(3.5)	22(1.4)	17.134**
		분리교육강요	17(4.3)	2(0.3)	4(1.5)	14(3.8)	37(2.3)	21.047**
		학업시수위반	11(2.8)	3(0.5)	2(0.8)	5(1.4)	21(1.3)	9.887*
		교내활동배제	51(12.8)	8(1.4)	24(9.1)	33(9)	116(7.2)	50.865***
		교외활동배제	47(11.8)	14(2.4)	18(6.8)	26(7.1)	105(6.5)	34.122***
		시험참여배제	17(4.3)	9(1.6)	18(6.8)	8(2.2)	52(3.2)	18.747***
		계(교육기회차별 경험 횟수)	87(21.8)	22(3.8)	40(15.2)	51(13.9)	200(12.5)	75.629***
장애 차별		편의시설미지원	2(0.5)	13(2.3)	3(1.1)	13(3.7)	31(2)	10.733*
		통학지원미제공	73(18.9)	117(20.9)	44(16.9)	105(29.8)	339(21.8)	19.093***
		보조인력미지원	32(8.3)	70(12.5)	3(1.2)	48(13.6)	153(9.8)	33.161***
		의사소통미지원	44(11.6)	81(14.5)	30(11.5)	49(13.9)	204(13.2)	19.200***
		정보접근미지원	25(6.5)	57(10.2)	18(6.9)	37(10.5)	137(8.8)	2.537
		교수학습자료미지원	8(2.1)	30(5.4)	4(1.5)	26(7.4)	68(4.4)	6.419
		계(편의제공미지원 경험 횟수)	110(28.4)	157(28.1)	67(25.6)	134(37.7)	468(29.9)	17.437**
장애 비교려 조치		수험편의비고려	10(2.6)	34(6.1)	5(1.9)	34(9.7)	83(5.3)	25.777***
		평가과정비고려	28(7.3)	52(9.3)	8(3.1)	37(10.6)	125(8)	13.223**
		교육과정운영비고려	9(2.3)	30(5.4)	7(2.7)	22(6.3)	68(4.4)	10.050*
		행정적조치비고려	30(7.8)	42(7.6)	11(4.2)	29(8.2)	112(7.2)	4.294
		계(장애비고려 경험 횟수)	55(14.2)	84(15)	22(8.4)	64(18.1)	225(14.4)	13.631*
계(장애차별 경험 횟수)			185(46.4)	186(32.2)	99(37.6)	164(44.7)	634(39.5)	25.128***
전체 ⁴⁾ (인권침해 경험 횟수)			277(69.4)	270(46.8)	167(63.5)	237(64.6)	951(59.2)	60.447***

*** $p < .001$, ** $p < .01$, * $p < .05$

- 주1) 이 자료는 인권 침해 유형에 해당되는 각 문항의 응답 결과 중 “가끔 있음”, “자주 있음” 및 “매우 자주 있음”으로 응답한 자료는 “있음”으로, “전혀 없음”으로 응답한 자료는 “없음”으로 코딩한 후, 인권 침해 유형의 각 문항 중 하나의 문항이라도 “있음”으로 응답되었다면 “있음”으로, 모든 문항에서 “없음”으로 응답되었다면 “없음”으로 처리하여 그 빈도수를 계산한 것임.
- 주2) 폭력(중분류 유형)에 해당되는 하위 문항(학교폭력 소분류 유형) 중 어느 하나의 문항에서 “있음”으로 응답한 인원을 모두 합산한 결과임. 성폭력, 언어폭력, 괴롭힘, 사이버폭력, 사생활침해, 교육적 방임, 편의제공 미지원, 장애비고려 조치 등 모든 중분류 유형의 빈도 결과는 모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 것임.
- 주3) 학교폭력 또는 장애차별(대분류 유형)에 해당되는 하위 문항(소분류 유형) 중 어느 하나의 문항에서 “있음”으로 응답한 인원을 모두 합산한 결과임. 장애 차별 사건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 것임
- 주4) 학교폭력 및 장애 차별 사건에 대한 모든 하위 문항(소분류 유형) 중 어느 하나의 문항에서 “있음”으로 응답한 인원을 모두 합산한 결과임

〈표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통합교육 현장에서의 장애학생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경험 정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 조사 대상자의 59.2%가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장애학생 10명 중 6명 정도가 통합교육 현장에서 학교폭력 또는 장애차별 등의 인권 침해를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수치는 교육 영역을 포함한 모든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발생 비율이 60%에 달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최승철 외, 2013), 사회에서의 장애인 차별 정도가 심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66.5%에 이른다는 보고(통계청, 2013), 사회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많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71.0%에 달한다는 보고(보건복지부, 2015)와 일치한다.

인권 침해 대분류 유형 중 학교폭력에 대한 경험 비율은 42.3%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송영범 외(2013)의 통합학급 장애학생의 학교폭력 경험에 관한 연구에서 장애학생의 68.3%가 학교 폭력의 경험이 있다고 보고한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이와 같은 피해 경험은 일반학생의 학교폭력 피해율 1.2%(교육부, 2014) 또는 12.9%(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4)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장애학생이 비장애 학생에 비해 3배에서 4배 정도 학교폭력의 경험 비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Twyman, Saylor, Saia, & Macias et al., 2010). 이효정(2013)은 자폐성장애학생의 학교폭력 출현율에 대한 문헌연구를 실시한 바 있는데, 6개의 해외 문헌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 폭력의 출현율이 15%부터 94%까지 나타났으나, 일반학생의 학교폭력 피해율이 10% 내외로 나타난 점을 비교해 볼 때, 장애학생의 학교폭력이 일반학생에

비해 다소 심각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의 피해율이 높은 이유는 통합교육이 확대되면서 전체 장애학생의 70% 이상이 일반학교에 재학 중임에도 장애학생의 통합을 위한 적절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장애학생이 학교폭력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김지원, 박지연, 2014).

중분류 유형 중 편의제공 미지원이 전체 학교구성원이 가장 많이 경험한 인권 침해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고, 소분류 유형 중 통학지원 미제공, 의사소통 미지원 등 장애차별과 관련된 인권 침해 경험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차별에 노출된 장애학생은 장애를 고려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초래받을 수 있게 된다. 때문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당한 편의 제공 또는 장애를 고려한 조치를 통하여 차별을 예방하고 해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승철 등(2012)은 학교현장에서의 장애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조사한 바 있는데, 다수의 학교에서 이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하고 있으며, 권희순(2013)의 연구에서도 장애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장애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차별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편의제공 또는 장애를 고려한 조치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장애차별 중 교육기회 차별과 같이 장애를 이유로 한 직접차별은 학교폭력에 비해 경험 비율이 낮게 나타났으나, 여전히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인권 침해 유형 중 하나이다. 이 연구에서도 직접차별에 해당되는 소분류 유형 중 교내 활동 배제(7.2%) 또는 교외 활동 배제(6.5%)에 대한 인권 침해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희순(2013)은 학교에서의 교육 기회 차별에 대한 모니터링 연구 결과에서 장애학생 중 21.1%가 교육 참여 기회로부터 제한, 배제, 분리, 거부를 당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그 수치가 다소 낮게 나타났다고 하여 간과해서는 안 될 유형 중 하나이다. 특히 교육기회 차별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 등의 법률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4조, 「아동권리협약」 제23조 등 국제 조약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1건이라도 이와 같은 인권 침해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4조 제2항에서는 초·중등교육에서의 통합교육을 강조하고, 일반교육 체계 내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배제하지 말아야 하고,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장애학생에게 질 높은 무상교육과 합리적 편의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통합교육에 대한 참여 기회를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장애를 이유로 한 교육기회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기 때문에, 통합교육 현장에서 장애학생이 교육받을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직접차별의 경우 장애가 너무 중증이어서 수업이나 교외 활동에 참여시키기 어렵거나,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참여를 배제한다고 보고되고 있다(최승철 등, 2012). 이는 통합교육 현장에서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교육을 받고 활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2)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장애영유아 인권 침해 실태

김삼섭 외(2015)는 장애 영유아 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치원, 특수학교,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및 일반어린이집의 부모, 교사 및 관리자 1,215명을 대상으로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하였다.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장애 영유아에 대한 인권 침해 사건의 대분류 및 중분류 유형별 경험 빈도 및 그 비율을 집단별로 비교한 결과¹⁾는 <표 3>과 같다.

<표 3>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장애 영유아 인권 침해 경험자 수에 대한 집단별 비교

인권 침해 및 장애 차별 유형			부모 (331명 중) n(%)	교사 (606명 중) n(%)	관리자 (278명 중) n(%)	χ^2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인권 침해	폭력	구타	31(9.4)	51(8.4)	9(3.2)	9.686**
		체벌	20(6.0)	41(6.8)	7(2.52)	6.679*
		계(폭력 경험자 수) ¹⁾	38(11.5)	73(12.1)	13(4.7)	16.764**

1)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장애영유아 인권 침해 실태 조사 도구에는 김삼섭 외(2014)의 연구에서 제안한 인권 침해 실태 조사 도구와 대부분 유사하지만 학교폭력을 별도의 유형을 제시하지 않고 학교폭력에 해당되는 내용을 인권침해라는 유형으로 명명하고 있음. 즉, 인권 침해 유형을 학교폭력과 장애차별로 구분하지 않고, 인권침해를 크게 인권침해와 장애차별로 구분하였으며, 인권침해 유형에 교육적 방임을 포함시켰고, 사이버폭력은 인권침해 유형에 포함시키지 않았음. 장애차별 유형에서도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조치를 포함시키지 않았음

인권 침해 및 장애 차별 유형			부모 (331명 중 n(%))	교사 (606명 중 n(%))	관리자 (278명 중 n(%))	χ^2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성폭력		성폭력	3(0.9)	4(0.7)	1(0.4)	1.690
		성추행	3(0.9)	4(0.7)	1(0.4)	.690
		계(성폭력 경험자 수)	3(0.9)	4(0.7)	1(0.4)	1.381
언어폭력		희롱(놀림)	25(7.6)	45(7.4)	5(1.8)	11.915**
		조롱(비하)	20(6.0)	15(2.5)	4(1.4)	12.406**
		계(언어폭력 경험자 수)	31(9.4)	47(7.8)	6(2.2)	20.283***
괴롭힘		과도한장난	18(5.4)	19(3.1)	1(0.4)	12.862**
		따돌림	23(7.0)	31(5.1)	6(2.2)	7.467*
		계(괴롭힘 경험자 수)	32(9.7)	43(7.1)	6(2.2)	20.670***
사생활 침해		초상권 침해	10(3.0)	28(4.6)	13(4.7)	1.567
		개인정보유출	9(2.7)	11(1.8)	4(1.4)	1.439
		계(사생활침해 경험자 수)	12(3.6)	35(5.8)	14(5.0)	6.070
교육적 방임		장기결석방치	5(1.5)	6(1.0)	4(1.4)	.599
		교육적무관심	15(4.5)	8(1.3)	3(1.1)	12.481**
		계(교육적방임 경험자 수)	16(4.8)	10(1.7)	6(2.2)	10.366**
계(인권 침해 경험자 수) ²⁾			68(20.5)	130(21.5)	33(11.9)	12.240**
장애 차별	교육기회 차별	입학거부	19(5.7)	9(1.5)	3(1.1)	18.731***
		전학 또는 분리교육강요	12(3.6)	10(1.7)	1(0.4)	9.060*
		학업시수위반	6(1.8)	5(0.8)	2(0.7)	2.391
		교내활동배제	19(5.7)	8(1.3)	2(0.7)	22.252***
		교외활동배제	19(5.7)	13(2.2)	4(1.4)	12.535*
		계(교육기회차별 경험자 수)	34(10.3)	23(3.8)	7(2.5)	26.301***
장애 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요청 거부	편의시설 설치 요구 거부	9(2.7)	7(1.16)	2(0.7)	5.022
		통학지원 요구 거부	16(4.8)	12(2.0)	9(3.2)	5.949
		보조인력 지원 요구 거부	17(5.1)	25(4.1)	7(2.5)	2.702
		보조기기 지원 요구 거부	7(2.1)	13(2.2)	4(1.4)	.537
		교수학습자료 요구 거부	17(5.1)	8(1.3)	4(1.4)	14.769**
		계(편의제공 요청 거부 경험자 수)	31(9.4)	34(5.6)	12(4.3)	10.410*
계(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경험자 수)			49(14.8)	48(7.9)	17(6.1)	18.042**
전체(인권 침해 또는 장애 차별 경험자 수) ³⁾			90(27.2)	154(25.4)	42(15.1)	14.797**

* $p < .05$, ** $p < .01$, *** $p < .001$

- 1) 폭력(중분류 유형)에 해당되는 하위 문항(인권 침해 소분류 유형) 중 어느 하나의 문항에서 “있음”으로 응답한 인원을 모두 합산한 결과임. 성폭력, 언어폭력, 괴롭힘, 사생활침해, 교육적 방임, 교육기회 차별 등 모든 중분류 유형의 빈도 결과는 모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 것임.
- 2) 인권침해 유형(대분류 유형)에 해당되는 하위 문항(인권 침해 소분류 유형) 중 어느 하나의 문항에서 “있음”으로 응답한 인원을 모두 합산한 결과임. 장애 차별 사건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 것임.
- 3) 인권 침해 및 장애 차별 사건에 대한 모든 하위 문항 중 어느 하나의 문항에서 “있음”으로 응답한 인원을 모두 합산한 결과임.

<표 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장애영유아에 대한 인권 침해 및 장애 차별 사건 경험 실태에 대해 살펴본 결과, 부모(27.2%), 교사(25.4%), 관리자(15.1%)의 순으로 적어도 1가지 이상의 인권 침해 또는 장애 차별 사건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건 경험 비율은 학령기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인권 침해 및 장애 차별 경험 비율 59.2%(김삼섭 외, 2014), 모든 일상 생활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발생 비율 60%(최승철 외, 2013)보다는 다소 낮다. 그러나 장애 영유아의 경우 학령기 장애학생 또는 일반 사회에서의 장애성인에 비해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의 빈도가 적고, 차별 상황의 노출 비율이 낮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장애 영유아에 대한 인권 침해 또는 장애 차별 사건의 경험 비율이 적어도 15% 이상 나타난다는 것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이는 학령기 장애학생 중심의 장애 인권 교육을 유아교육기관으로도 확대하여, 다양한 유아교육기관 구성원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장애 인권 교육을 실시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인권 침해 사건의 소분류 유형별 경험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모, 교사 및 관리자 모두 구타(각각 9.4%, 8.4%, 3.2%)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고, 희롱(놀림)(부모 7.6%, 교사 7.4%) 사건과 초상권 침해 사건(부모 3.0%, 교사 4.6%, 관리자 4.7%)도 많이 경험한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초·중·고등학교 장애학생이 주로 놀림(20.4%), 따돌림(16.1%), 비하(13.7%), 사적 공간 침해(12.1%), 체벌(11.5%), 상해·폭행(9.9%), 욕설(9.7%)의 순으로 인권 침해를 경험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김삼섭 외, 2014)와 유사하다. 유아교육기관에서도 학령기 장애학생과 마찬가지로 장애 영유아를 상대로 구타 또는 희롱(놀림) 사건의 발생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므로, 학령기 장애학생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권 침해 및 장애 차별 예방, 피해자 권리 구제 지원 정책이 유아교육기관으로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 다만 장애 영유아의 발달

특성과 유아교육기관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애 영유아를 위한 인권 침해 및 장애 차별 예방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구타와 같은 인권 침해 사건 이외에도 정당한 편의제공 요청 거부에 의한 장애 차별 사건도 모든 구성원이 공통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는 유형 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부모 9.4%, 교사 5.6%, 관리자 4.3%). 특히 보조인력 지원 요구 거부, 통학지원 요구 거부, 교외 활동 배제, 입학 거부, 교내 활동 배제 등에 대한 경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초중고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 통학지원 미제공(21.8%), 의사소통 미지원(13.2%), 보조인력 미지원(9.8%)와 비교해 볼 때(김삼섭 외, 2014), 발생 빈도는 낮지만 장애차별 사건의 우선 발생 순위는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학령기 장애학생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지원과 같이 유아교육기관에서도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예방을 위한 보조인력 지원, 통학지원 등과 같은 정당한 편의제공 지원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3) 특수학교에서의 중증·중복장애학생 인권 침해 실태

특수학교에서의 중증·중복장애학생²⁾에 대한 학교폭력 또는 장애차별 사건 등 인권 침해 사건 경험 실태를 살펴본 결과³⁾는 <표 4>와 같다.

2) 이 연구에서의 중증·중복장애학생의 범위는 지체장애·뇌병변장애를 주장대로 하고, 다른 장애를 동반한 유·초·중·고(전공과 포함) 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말함. 이때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체장애·뇌병변장애로 등록되어 있고, 1급 또는 2급의 중증장애를 갖고 있거나, 3급이면서 1가지 이상의 동반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의미함
3) 이 연구의 실태조사에서는 학교폭력 중 사이버폭력, 장애차별 중 편의제공 미지원과 장애 비고려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음

〈표 4〉 특수학교에서의 중증·중복장애학생 인권 침해 경험자 수에 대한 집단별 비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교사 (238명 중) n(%)	학교 관리자 (71명 중) n(%)	부모 (306명 중) n(%)	전체 (602명 중) n(%)	χ^2
학교 폭력	폭력	구타	17(7.2)	6 (8.3)	61(20.8)	84(14.0)	22.322***
		체벌	17(7.2)	6 (8.3)	55(19.0)	78(13.0)	17.601***
		계(폭력 경험자 수) ¹⁾	25(10.6)	10(13.9)	79(27.2)	114(19.1)	29.323***
	성폭력	성폭력	5 (2.1)	3 (4.2)	8 (2.7)	16 (2.7)	.915
		성추행	5 (2.1)	2 (2.8)	8 (2.7)	15 (2.5)	.245
		계(성폭력 경험자 수)	7 (3.0)	4 (5.6)	9 (3.1)	20 (3.3)	.157
	언어 폭력	희롱(놀림)	27(11.4)	7 (9.7)	51(17.4)	85(14.1)	5.212
		조롱(비하)	9 (3.8)	4 (5.6)	40(13.7)	53 (8.8)	16.922***
		협박(욕설)	10 (4.2)	3 (4.2)	27 (9.3)	40 (6.7)	6.194*
		계(언어폭력 경험자 수)	31(13.1)	7 (9.7)	66(22.7)	104(17.3)	14.420**
	괴롭힘	과도한 장난	20 (8.4)	8(11.1)	38(13.1)	66 (11.0)	2.895
		따돌림	10 (4.2)	2(2.8)	37(12.6)	49 (8.1)	15.534***
		계(괴롭힘 경험자 수)	24(10.1)	10(13.9)	61(21.0)	95(15.9)	15.617***
	사생활 침해	사적 공간 침해	74(31.2)	28(38.9)	75(25.7)	177(29.5)	5.438
		초상권 침해	20 (8.4)	7 (9.7)	25 (8.7)	52 (8.7)	.115
		소유물 침해	19 (8.0)	6 (8.3)	23 (7.9)	48 (8.0)	.017
		개인정보유출	8 (3.4)	1 (1.4)	15 (5.1)	24 (4.0)	2.506
		계(사생활침해 경험자 수)	84(35.4)	30(41.7)	100(35.0)	214(36.0)	1.162
	계(학교폭력 경험 횟수) ²⁾			95(40.3)	38(52.8)	156(50.9)	289(49.5)
장애 차별	교육적 방임	장기결석 방치	6 (2.5)	2 (2.8)	9 (3.1)	17(2.8)	.145
		교육적 무관심	5 (2.1)	1 (1.4)	50(17.2)	56(9.3)	41.169***
		계(교육적방임 경험자 수)	8 (3.4)	2 (2.8)	52(17.9)	62(10.4)	40.329***
	교육 기회 차별	입학 거부	2 (0.8)	1 (1.4)	43(14.8)	46 (7.7)	40.374***
		학업시수위반	2 (0.8)	1 (1.4)	7 (2.4)	10 (1.7)	1.967
		교내활동 배제	8 (3.4)	1 (1.4)	30(10.4)	39 (6.5)	14.104**
		교외활동 배제	9 (3.8)	3 (4.2)	32(11.0)	44 (7.3)	11.088**
전체(교육기회차별 경험 횟수)			11 (4.6)	3 (4.2)	67(23.4)	81(13.6)	51.117***
계(장애차별 경험 횟수)			15 (6.3)	4 (5.6)	84(29.6)	103(17.4)	65.160***
전체(학교폭력 또는 장애차별 경험 횟수) ³⁾			97(40.8)	40(56.3)	169(55.2)	306(52.9)	27.454***

* p < .05, ** p < .01, *** p < .001

1) 폭력(중분류 유형)에 해당되는 하위 문항(학교폭력 소분류 유형) 중 어느 하나의 문항에서 “있음”으로 응

- 답한 인원을 모두 합산한 결과임. 성폭력, 언어폭력, 괴롭힘, 사생활침해, 교육적 방임, 교육기회 차별 등 모든 중분류 유형의 빈도 결과는 모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 것임
- 2) 학교폭력 유형(대분류 유형)에 해당되는 하위 문항(학교폭력 소분류 유형) 중 어느 하나의 문항에서 “있음”으로 응답한 인원을 모두 합산한 결과임. 장애 차별 사건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 것임
 - 3) 학교폭력 및 장애차별 사건에 대한 모든 하위 문항(소분류 유형) 중 어느 하나의 문항에서 “있음”으로 응답한 인원을 모두 합산한 결과임

〈표 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통합교육 현장에서의 학교폭력 사건 경험 빈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학부모의 50.9%는 지난 1년 동안 폭력, 성폭력, 언어폭력, 괴롭힘 또는 사생활 침해와 같은 학교폭력 사건을 1회 이상 경험한 적이 있거나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중 사적 공간 침해 사건을 가장 많이 경험하였고(25.7%), 다음으로 구타(20.8%), 체벌(19.0%), 희롱(놀림)(17.4%)의 순으로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만으로도 특수학교의 중증·중복장애학생들 중 상당수가 학교폭력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특수교사와 학교관리자 역시 학교폭력 경험 빈도가 각각 40.3%, 52.8%로 각각 나타나 학부모의 경험 빈도가 특수교사와 학교관리자의 경험 빈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학부모의 과잉평정 결과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폭력 중 가장 빈도가 높은 사적 공간 침해 문제는 모든 조사 집단에서 가장 높게 평정된 인권 침해 유형이었다(특수교사 31.2%, 학교관리자 38.9%, 학부모 25.7%).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사적 공간 침해가 성별이 다른 보조인력이 장애학생의 신변처리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김삼섭 외, 2015)와 관련이 있다. 실제로 보조인력의 90% 이상은 여성인데 반해, 중증·중복장애학생의 70% 이상은 남성으로 추정되고 있다. 장애학생의 성을 고려하여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없는 환경이며, 이 과정에서 장애학생의 성을 고려하지 못한 신변처리 지원이 발생하는 것이다. 특수교사 대상 심층면담 결과에서도 고학년 학생과 특수교사간 성별이 달라 인권침해 소지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수교사 역시 전체 특수교사의 70%가 여성이기 때문이다. 사적 공간 침해 이외에도 초상권 침해, 소유물 침해, 개인정보유출 등 사생활 침해와 같은 인권 침해를 경험하는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3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적 공간 침해 이외에도 높은 빈도를 차지한 학교폭력 유형으로는 구타, 체벌, 희롱(놀림)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타 또는 체벌의 경우 폭력에 해당되는 것으로 전체 응답자의 19.1%는 지난 1년간 1회 이상의 폭력 사건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희롱(놀림)에 대한 경험 빈도도 대체로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으며, 조롱(비하), 헐박(욕

설) 등 언어폭력 전반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17.3%가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만을 놓고 볼 때, 특수학교에서 발생되고 있는 대표적 인권 침해 유형으로 사생활침해, 폭력, 언어폭력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통합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유형의 비율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삼섭 외, 2015).

장애 차별 사건에 대한 경험 빈도를 살펴본 결과 학부모가 특수교사 및 학교관리자에 비해 경험 빈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부모 응답 결과를 중심으로 장애 차별 사건 경험 빈도를 살펴본 결과 교육적 무관심에 대한 경험 빈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입학 거부, 교외활동 배제, 교내활동 배제 등의 순으로 높았다. 중증·중복장애학생이 중증·중복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일상적인 교육 활동으로부터 배제되거나 분리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직접 차별 행위에 해당된다. 어떠한 경우라도 중증·중복장애학생이 교육 현장에서 배제되거나 분리되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3. 교육 현장에서의 장애학생 인권 증진 방안

교육 현장에서의 장애학생 인권 증진 방안을 앞서 제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통합교육 현장, 유아교육기관 현장 및 특수학교 현장 등 장소를 중심으로 각각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통합교육 현장에서의 장애학생 인권 증진 방안

앞서 제시한 통합교육 현장에서의 장애학생 인권 실태 결과를 고려해 볼 때, 통합교육 현장은 다양한 측면에서의 장애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점을 고려하여 통합교육 현장에서의 장애학생 인권 증진 방안을 크게 기본권 보호 및 차별받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우선 이행 과제, 장애학생과 함께하는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대상별 이행 과제, 중장기적 접근이 요구되고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기반 구축 과제로 각각 구성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5>와 같다.

〈표 5〉 통합교육 현장에서의 장애학생 인권 증진 방안

유형	하위 유형	인권 증진 방안
우선 이행 과제	사생활침해로부터의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인력과 장애학생의 성비 균형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보조인력 활용 방안 마련 ○ 사생활침해 예방 안내 자료 보급 및 사생활보호 교육 실시
	학교폭력으로부터의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안전 울타리 구축 ○ 또래 도우미 및 시스템 멘토링 등 안전 지킴이 운영 제도 활성화 ○ 학교폭력 유형, 장애유형 및 학교과정을 고려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학교폭력 피해 장애학생을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
	교육기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회 차별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 ○ 교내외 활동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장애를 고려한 교육지원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교사의 장애학생 지원 및 통합교육 운영 역량 제고 ○ 학교 차원의 정당한 편의제공 운영 체계 구축 ○ 장애학생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환경 구축 ○ 수험 편의 제공
대상별 이행 과제	장애학생 자기옹호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인권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제고 및 확대 ○ 인권 실천 활동 기회 확대
	일반학생의 인권감수성 제고 및 통합교육 인식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자기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가정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인권 침해 사건 발생시 비상 대응 매뉴얼 보급 및 대처 기술 교육
	장애학생 부모의 옹호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학부모 행사를 활용한 일반학생 부모 대상 장애 관련 프로그램 운영 ○ 학부모 모임시 장애인권 또는 통합교육 프로그램 운영 권장
	일반교사의 인권 감수성 제고 및 통합교육 운영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교육 관련 연수 미이수 교사를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수립 ○ 통합학급 담당교사를 위한 다양한 직무연수 과정 운영 ○ 통합학급 담당교사를 위한 다양한 통합 프로그램 개발 및 현장 보급 ○ 통합학급 담당교사 통합학급 운영 컨설팅 지원 체계 구축 ○ 일반교사의 양성과정의 특수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 학점 상향 조정
	특수교사의 통합교육 운영 전문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교육 지원 역량 강화 연수 과정 개설 ○ 학교 내에 통합교육 지원 부서 설치·운영 및 특수교사의 권한·역할 강화
	학교관리자의 책무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책무성 이행 ○ 통합학급의 안정적 운영 지원 ○ 학교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연수 프로그램 확대

유형	하위 유형	인권 증진 방안
기본 구축 과제	통합교육 운영을 위한 학교 차원의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 보호 및 통합교육 지원 내용 학교규칙 명시 및 운영계획서 반영 ○ 학교운영위원회 산하 통합교육소위원회 설치·운영 ○ 통합교육 지원 부서 설치·운영
	통합교육 운영 여건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학급 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 ○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에 특수학급 설치 또는 특수교사 배치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통합학급 운영 컨설팅 담당 교사 배치
	학교폭력 피해 장애학생 지원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학생 인권 침해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의사소통 조력 지원 체계 구축 ○ 학교폭력 대응 기구 내 장애학생 관련 인사 배치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개별화교육지원팀 운영의 내실화 및 실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화교육지원팀 운영 지침 마련 ○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원별 교육 및 연수 실시 ○ 개별화교육계획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3단계 지원 체계 구축 ○ 장애학생의 개별화교육지원팀 참여 방안 검토
	인권교육 전문성 제고 및 지원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학생인권교육지원센터 설립
	국가 수준의 지침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지침 마련

〈표 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통합교육현장에서의 장애학생 인권 보호 및 증진 방안은 우선 이행 과제, 일반 이행 과제 및 기반 구축 과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행 과제는 통합교육 현장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 발생 빈도가 높은 인권 침해 유형에 대한 예방 및 해소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장애학생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정책 과제 유형은 사생활침해로부터의 보호, 학교폭력으로부터의 보호, 교육기회 보장 및 장애를 고려한 교육지원 제공으로 구분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생활침해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보조인력과 장애학생의 성비 균형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보조인력 활용 방안 마련 및 사생활침해 예방 안내 자료 보급 및 사생활보호 교육 실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학교폭력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안전 울타리 구축, 또래 도우미 및 시스템 멘토링 등 안전 지킴이 운영 제도 활성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학교폭력 피해 장애학생을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

셋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하여 교육기회 차별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 교내외 활동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일반교사의 장애학생 지원 역량 제고 등이 필요하다.

넷째, 장애를 고려한 교육적 조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교 차원의 정당한 편의제공 운영 체계 구축, 장애학생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환경 구축, 수험 편의 제공 등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대상별 이행 과제는 우선 과제의 이행을 담보하고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학교구성원의 책무를 강화하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제안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제안하는 정책 과제 유형은 장애학생의 자기옹호 역량 강화, 일반학생의 인권감수성 향상 및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증진, 장애학생 부모의 옹호 역량 강화, 일반학생 학부모의 인식 개선, 일반교사의 인권감수성 향상 및 통합교육 운영 역량 강화, 특수교사의 통합교육 전문성 제고, 학교관리자의 책무성 강화 등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학생의 자기옹호 역량 강화를 위하여 장애학생 인권 침해 대응 역량 강화, 자기보호 또는 자기옹호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이 필요하다.

둘째, 일반학생의 인권감수성 제고 및 통합교육 인식 증진을 위하여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권 관련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제고 및 확대, 인권 실천 활동 기회 확대 등이 필요하다.

셋째, 장애학생 부모의 장애학생에 대한 옹호 역량 강화를 위하여 자녀의 자기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가정 연계 프로그램 운영 및 인권 침해 사건 발생시 비상 대응 매뉴얼 보급·대처 기술 교육 등이 필요하다.

넷째, 일반학생 학부모의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하여 일반학생 부모를 위한 인식 개선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일반학생 학부모의 경우 집합식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반학생 학부모가 많이 모이는 시간을 활용하거나 일반학생 학부모 모임을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해 볼 수 있다.

다섯째, 일반교사의 인권감수성 향상 및 통합교육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하여 통합교육

관련 연수 미이수 교사를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수립, 통합학급 담당교사를 위한 다양한 직무연수 과정 운영, 통합학급 담당교사가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통합 프로그램 개발·보급, 통합학급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한 컨설팅 지원 방안 마련, 일반교사의 양성과정에 특수교육 관련 교과목의 학점 상향 조정 등이 필요하다.

여섯째, 특수교사의 통합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한 통합교육 지원 역량 강화 연수 과정 개설, 학교 내 통합교육 지원 부서 설치·운영 및 특수교사의 권한·역할 강화 등이 필요하다.

일곱째, 학교관리자의 책무성 강화를 위하여 학교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책무성 이행, 통합학급의 안정적 운영 지원, 학교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연수 프로그램 확대 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반 구축 과제는 우선 이행 과제 및 대상별 이행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중장기적 접근을 통해 학교 현장의 전반적인 변화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정책 과제 유형은 통합교육 운영을 위한 학교 차원의 기반 구축, 통합교육 운영 여건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학교폭력 피해 장애학생 지원 체계 구축, 개별화교육의 내실화 및 실효성 도모를 위한 지원 체계 구축, 국가 수준의 통합교육 증진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지원 계획 수립 등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교육 운영을 위한 학교 차원의 기반 구축을 위하여 장애학생의 인권 보호 및 통합교육 지원 내용의 학교규칙 명시 및 학교 운영계획서 반영, 학교운영위원회 산하 통합교육소위원회 설치·운영, 통합교육 지원 부서 설치·운영 등이 필요하다.

둘째, 통합교육 운영 여건 제고를 위해하여, 통합학급 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에 특수학급 설치 또는 특수교사 배치,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통합학급 운영 컨설팅 담당 교사 배치 등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폭력 피해 장애학생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하여 장애학생 인권 침해 모니터링 체계 구축, 의사소통 조력 지원 체계 구축, 학교폭력 대응 기구 내 장애학생 관련 인사 배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하다.

넷째, 개별화교육지원팀 운영의 내실화 및 실효성 도모를 위하여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수준의 개별화교육지원팀 운영 지침 마련,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원별 교육 및 연

수 실시, 개별화교육계획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3단계 지원 체계 구축, 장애학생의 개별화교육지원팀 참여 방안 검토 등이 필요하다.

다섯째, 통합교육 현장에서의 장애학생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국가 수준에서 이행하기 위해서는 호주의 교육에서의 장애 기준(Disability Standards for Education), 영국의 실천 지침(Code of Practice), 미국의 부문별 서신(지침)과 같은 국가 수준의 통합교육 지원 지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각급학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이행 과제로 장애학생인권교육지원센터가 설립될 필요가 있다.

2)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장애영유아 인권 증진 방안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장애영유아 인권 보장 실태를 고려해 볼 때, 다양한 측면에서 장애영유아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안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장애영유아 인권 증진 방안

유형	하위 유형	인권 증진 방안
장애영유아 인권 증진	기관에서의 장애영유아 인권 증진	기관 차원의 장애영유아 인권 보호·증진 계획 수립
		기관 차원의 장애영유아 인권 증진 기구 설치·운영
		활동 중심의 인권 교육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
	가정에서의 장애영유아 인권 증진	가정과 연계된 인권 증진 프로그램 운영
		보호자의 장애자녀 옹호 역량 강화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영유아 인권 증진	국가 차원의 장애영유아 인권 증진을 위한 지침 마련
		장애영유아 인권 증진을 위한 장애인권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유아교육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 및 연수 기회 확대
		장애영유아 인권 실태 모니터링 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활동 실시

유형	하위 유형	인권 증진 방안
장애 영유아 교육권 보장	조기발견 체계 구축	통합적 조기발견 및 진단·의뢰 지원 체계 구축
		서비스 조정자 제도 도입
	장애영유아의 교육기회 확대	특수학급 설치 유치원 확충
		의무교육 간주 장애아 어린이집 확충 및 지원 강화
		장애영아 교육지원 기관 확충
	유아특수교사 확충 및 처우 개선	유아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및 유아특수교사 배치 기준 상향 조정
		유아특수교육 관련 인력의 처우 개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 격차 해소	교육 격차 실태조사 실시
		최소 지원 환경 기준 마련
		적정 보육료 산출 기준 마련 및 보육료 지원 현실화
		돌봄지원 체계 구축 장애영유아 교육 및 보육의 통합을 위한 자체 로드맵 개발
	정당한 편의제공 지원 환경 구축	정당한 편의제공 지원 환경 실태 조사 실시
정당한 편의제공 지원 시스템 구축		
개별화교육 운영 내실화	개별화교육지원팀 운영 지침 마련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원별 교육 및 연수 실시	

〈표 6〉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장애영유아 인권 증진 방안은 장애영유아 인권 증진 및 장애영유아 교육권 보장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먼저 장애영유아 인권 증진 방안으로 기관, 가정 및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장애영유아 인권 증진 방안을 제안하였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장애영유아 인권 증진 방안으로 유아교육기관 차원의 장애영유아 인권 보호·증진 계획 수립, 인권 증진 기구 설치·운영, 활동 중심 인권 교육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 등을 제안하였다.

둘째, 가정에서의 장애영유아 인권 증진 방안으로 가정과 연계된 인권 증진 프로그램 운영, 보호자의 장애자녀 보호 역량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셋째,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영유아 인권 증진 방안으로 국가 차원의 장애영유아 인권 증진을 위한 지침 마련, 장애영유아 인권 증진을 위한 장애인권교육지원센터 설치·운

영, 유아교육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 및 연수 기회 확대, 장애영유아 인권 실태 모니터링 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활동 실시 등을 제안하였다.

장애영유아의 인권 보호는 구성원의 인식 변화뿐만 아니라 장애영유아의 교육 여건도 함께 개선되어야 하므로, 조기발견 체계 구축, 장애영유아의 교육기회 확대, 유아특수교사 확충 및 처우 개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 격차 해소, 정당한 편의제공 지원 환경 구축, 개별화교육 운영 내실화 등 장애영유아의 전반적인 교육권 보장 방안을 함께 제안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적 조기발견 및 진단·의뢰 지원 체계 구축, 서비스 조정자 제도 도입 등 조기발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치원 특수학급 확충, 의무교육 간주 장애아어린이집 확충 및 지원 강화, 장애영아 교육기관 확충 등 장애영유아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유아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및 유아특수교사 배치 기준 상향 조정, 유아특수교육 관련 인력의 처우 개선 등 유아특수교사 관련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 격차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최소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등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장애영유아에게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 지원 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여섯째, 개별화교육지원팀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원별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는 등 개별화교육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3) 특수학교에서의 중증·중복장애학생 교육권 증진 방안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해 볼 때 특수학교에서도 중증·중복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과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특수학교 차원의 아동 인권 보장 계획 수립과 같은 대원칙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후속 정책도 함께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중증·중복장애학생의 아동 기본권이 보장되고, 인권 침해 및 장애 차별이 발생되지 않는 인권 친화적 학교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인권 침해와 장애 차별을 예방하고 관련 사건 발생시 즉시 대응하고 그 피해 학생을 보호,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인권 보호 및 대응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구성원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증·중복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상당수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이에 대한 후속 대응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특수학교 내 모든 교사가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 따라 신고의무자로서 신고의무의 역할을 하여야 하나, 실제 학교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건들에 대한 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인권 침해 사건이라 판단되더라도 신고 절차를 밟는 것이 익숙치 않아 신고 또는 진정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인권 침해 사건을 대응할 수 있는 교원의 인권감수성 부족, 전통적인 학교 문화에서 보여주는 경직된 학교 구성원들간의 관계, 교원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부족 등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원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을 확대 운영하여야 하고, 아동기본권 보장과 인권 침해 및 장애 차별 금지 등에 대한 인권 교육 자료(교직원용, 학부모용, 학생용), 홍보 영상 자료를 제작·보급하는 등 일상에서 인권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중증·중복장애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옹호할 수 있는 자기옹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필요하며, 학부모의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둘째, 기존의 인권 침해 모니터링 활동 및 실태조사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미 교육부는 장애학생인권모니터링단 사업을 통해 특수교육기관에 대한 인권 침해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학교폭력 발생시 그 대응을 지원하는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최근 발생되고 있는 특수학교 학교폭력 사건 등에 대해 자체 실태조사를 추진하거나 전수조사를 계획하는 등 인권 침해 전반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니터링 활동과 실태조사 사업을 통해 인권 침해 상황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의 장애학생인권모니터링단의 활동을 평가하고 그 역할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실태조사를 설문조사도구를 활용한 간편 방식보다 심층면담, 심리상담 등 보다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의 심리상담을 전공한 전문가가 조사 과정에 투입되어 실제 학생의 인권 침해 경험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인권 침해 사건 대응 절차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미 학교폭력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인권 침해 사건 발생 즉시 학교 및 교육청 등에 신고하고, 대응하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이와 같은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된 이후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사건이 은폐, 조작, 왜곡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신고의무자인 학교 구성원의 인권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교육도 필요하다. 또한 장애학생의 경우 학교폭력 사건을 경험하게 될 경우, 의사소통 노력, 심리·정서적 지원 등이 함께 제공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부모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기존의 학교폭력 관련 대응 절차만으로는 피해 장애학생을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학부모와 교원 간의 소통 및 파트너십을 강화하여야 한다. 건강관리 지원 관련 7개 영역에 대한 지원 실행자 설문조사에서 교원과 학부모의 응답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동일한 행위에 대한 학교구성원간 인식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교사와 학부모간 중증·중복장애학생에 대한 기대, 교사의 중증·중복장애학생에 대한 교육 실행 수준 등에 대해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교사와 학부모 간의 신뢰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 이와 같은 인식의 차이는 교사와 학부모간의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개별화교육지원팀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교사와 학부모의 아동에 대한 기대치를 맞추고, 부모가 요구하는 실행 수준과 학교가 제공 가능한 실행 수준 간의 차이를 조정하여, 인식의 차이를 좁혀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학부모회와 학교장 간의 정례 협의 실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내실화, 교사와 부모간의 잦은 의사소통 등의 방법을 통해 교사와 부모 간의 인식 차이를 줄이고, 이해와 협력에 기반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중증·중복장애학생 담당 교원 보호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특수교사 심리상담 지원 체계 마련, 학생 지도 과정에서 발생된 신체적, 정신적 질환 등에 대한 배상 및 보상 제도 마련,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 연수 휴직 확대 등 교사 재교육 및 재충전 기회 부여 방안 마련 등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 및 심리·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 이외에도 중증·중복장애학생의 경우 건강관리 지원의 문제, 의사소통 지원의 문제, 보조기기 지원의 문제, 통학 문제, 치료지원 문제 등 다양한 현안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인권 침해 상황에 대처하고, 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증·중복장애학생을 둘러싼 교육 여건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교육권 증진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및 제언

이 글에서는 교육 현장에서의 장애학생 교육권 유형에 따른 통합교육기관, 유아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내에서의 장애학생 교육권 실태를 파악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통합교육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사생활 침해 문제 등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고 정당한 편의제공 등 장애를 고려한 조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후, 인권 증진을 위해 학교구성원별 역할과 지원 방안을 제안하였다. 장애영유아의 경우 유아교육기관 차원, 가정 차원 및 지역사회 차원의 인권 증진 방안과 유아교육기관 확충 등과 같은 장애영유아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각각 제시하였다. 또한 특수학교 내에서의 중증·중복장애학생의 교육권 증진 방안으로 학교구성원의 인권감수성 향상, 인권 침해 모니터링 활동 및 실태조사 강화, 인권 침해 사건 대응 절차 강화, 학부모와 교원간 소통 및 파트너십 강화, 중증·중복장애학생 담당 교사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최근 특수학교 내 학교폭력 사건 등으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의 장애학생 인권 문제가 이슈로 대두되었고, 그 결과로 지난 해 12월 교육부는 장애학생 인권 보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의 인권 보호 방안은 잇따른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제시한 것으로, 그간 관련 계획 속에 언급되어 왔던 장애학생 인권 증진 방안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장애학생의 인권 상황을 감지단계, 대응단계 등과 같이 단계를 구분, 제시하고 그에 따른 학교 차원 및 국가 차원의 지원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책이 실제 장애학생의 인권 침해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이 되길 바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책 이외에도 장애학생의 인권 침해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교육 여건의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앞서 제시한 인권 증진 방안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일부 언급한 바 있지만, 과밀학급 문제, 한 학급 내 다수의 중증·중복장애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인적·물적 지원의 부재 문제, 행동지원·의사소통지원·건강관리 지원·방과후학교 지원 등 특수교육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 문제 등은 장애학생을 인권의 사각지대로 내몰거나 인권 침해 상황을 심화시키는 기제가 될 수 있다. 열악한 교육 여건에 대한 개선 없이 학교구성원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교사의 책무를 강화시키는 것만으로는 인권 침해를 예방하지 못한다. 따라서 교육 당국은 장애학생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여건 개선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확충하는 등을 위해서도 앞장서야 한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14). 2014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결과 발표 보도자료(2014. 11. 28.). <http://www.moe.go.kr> 2015년 4월 25일 검색.
- 권희순 (2013). 장애인차별금지법 특성 및 모니터링 결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김계옥, 강성중, 김주영, 박종운, 은여경, 정귀순 (2012). 장애학생 인권 관련 제도 개선 기초연구. 아산: 국립특수교육원.
- 김기룡, 이명희, 박경옥, 김지연, 임용재, 김신애, 이정옥, 전상인 (2018). 중증·중복장애학생 교육권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김삼섭, 김기룡, 이명희, 노진아 (2015). 장애 영유아 교육권 보장 실태 및 증진 방안.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김삼섭, 김기룡, 박은혜 (2014). 장애학생 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통합교육 현장의 교육권 침해를 중심으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김양화, 김남순 (2013). 특수교육대상자 학교폭력 실태 및 예방 방안에 관한 학부모의 인식 연구. 지적장애연구, 15(3), 173-200.
- 김주영 (2009).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장애인 교육권의 변화와 향후 과제. 장애인 교육권 현황 및 향후 과제. 장애인 교육권 보장방안 토론회 자료집(pp. 7-41).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김지원, 박지연 (2014). 학교폭력에 취약한 장애학생 관련 국내외 연구동향과 학교폭력 피해 변인 고찰. 발달장애연구, 18(4), 125-155.
- 김진우 (2008). 지적장애인 관점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회복지정책, 35, 169-195.
- 도현심, 신정님 (1999). 교사 폭력과 남자중학생의 학교생활의 질 및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교과교육학연구, 3(1), 36-52.
- 박옥순 (2002). 장애인 인권지표 개발 연구: 한국사회의 장애인 차별 실태에 근거하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 보건복지부 (2015). 2014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2015. 4. 20.). 자료 출처: <http://www.mw.go.kr> 2015년 4월 25일 검색.
- 송영범, 권상순, 이영선 (2013). 통합학급 장애학생의 학교폭력 경험에 관한 연구. 통합교육연구, 8(2), 1-21.
- 오원석 (2011). 초등학교 통합학급 장애학생의 대인관계 동료 괴롭힘 특성 분석. 특수

- 교육연구, 18(1), 47-72.
- 오원석, 정은영 (2010). 통합학급 교사의 장애아동에 대한 관계 인식에 따른 장애학생의 사회적 참여 및 동료 괴롭힘에 대한 관계 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1(4), 247-276.
- 윤명희, 이승희 (2004). 통합교육에 대한 일반계 고등학교 교사와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의 태도 비교.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5(3), 377-395.
- 이수광 (2000). 학생인권 신장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 이현수, 유숙렬 (2012). 장애아동 학교폭력의 문제점과 인권교육의 방향. 장애아동인권연구, 3(2), 15-28.
- 이효정 (2013). 자폐성 장애학생과 학교폭력에 대한 국내외 연구 동향 및 문헌분석. 자폐성장애연구, 13(2), 87-109.
- 임신일, 이정미 (2013). 남자 고등학생의 부모 간 폭력 목격 경험, 자존감, 학교폭력 피해, 학교폭력 가해의 관계. 학교사회복지, 26, 27-45.
- 전영주, 아영아, 이경희, 정수연 (2013). 학교폭력 예방 인권교육 교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주혜영, 박원희 (2003). 초등학교 통합교육에서 장애아동의 인권침해에 관한 소고. 특수교육학연구, 38(3), 359-377.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4). 2013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4.5.20.). <http://www.jikim.net> 2015년 4월 25일 검색.
- 최승철, 이해경, 황주희, 전동일, 남세현, 유경민, 이진숙, 김지혜, 김경란, 이선화, 조한진, 홍현근, 김주영, 강동욱, 양숙미, 최홍일 (2012). 201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 모니터링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 보건복지부.
- 최영하, 박경수 (2000). 초등학교 통합교육 실태 및 교사의 의식변화. 초등특수교육연구, 2(1), 71-92.
- 최운정, 강영심, 이정은 (2013). 초등학교 통합학급교사의 장애학생 수행평가 실태.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2(3), 259-275.
- 최운진 (1995). 중·고교생의 표현의 자유와 한계. 법과 사회, 12, 180-202.
- 통계청 (2013). 2013년 사회조사 결과(복지·사회참여·문화와 여가·소득과 소비·노동) 보도자료(2013. 12. 4.). 자료 출처: <http://www.kosis.kr> 2015년 4월 25일 검색.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1주년 기념
장애인 교육권 차별, 현황 및 대응방안 토론회

토론 1

장애인 부모가 꿈꾸는 차별 없는 특수교육 현장

박정숙

강원도장애인부모연대 대표

장애인 부모가 꿈꾸는 차별 없는 특수교육 현장

박정숙 (강원도장애인부모연대 대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 4월 11일 시행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2008년 5월 26일 시행되었다. 우리 부모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특수교육법 제정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인 장애 아동들이 마음 놓고 교육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였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 된지 11년이 지났음에도 현장에서 우리 앞에 나타난 현실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목적으로 제시 되어진 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차별 없이 지역사회에서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우려와 불신을 낳고 있다.

또한 올 해 초 까지만 해도 강원도에서도 특수학교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갈등에 부딪혀 학교설립이 지연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사례는 장애 학생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대로 보여주는 예일 것이다.

특수학교는 분명 혐오시설이 아닌데도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현상은 어떤 이유로도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언론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과 보다 자극적인 내용만을 다루려는 것 같다. 이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비롯해 그에 따른 정책과 제도가 차별을 금지하고 통합교육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얼마 전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행위는 헌법의 평등정신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권위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문제를 두고 “설립을 반대하는 행위는 헌법과 교육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평등정신에 위배 된다”고 밝힌바 있으며, 교육부 장관과 각 시·도 교육감에게 특수학교 신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특수학교 설립 반대 등 장애인을 배제·거부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분리교육이 차별 조장” 특수학교 없애고 통합교육 늘려야

특수학교는 특수교육 대상자(학령기 장애인의 대부분은 특수교육 대상으로 선정됨)들을 따로 모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다. 지금까지는 지역주민들의 넘비현상으로 인한 편견과 차별로 특수학교가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을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장애학생이라고 무조건 특수학교에 가는 건 아니다. 오히려 특수학교에 가는 장애학생이 소수다. 올해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의 70%가량은 특수학교가 아니라 일반학교에 진학한다.

유럽 등 선진국들은 특수학교를 없애고, 오히려 분리교육이 차별을 조장하므로 통합교육을 늘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은 공간에서 교육받는 ‘통합교육’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는 특수교육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다. 이는 장애인들의 사회 진출을 위해서라도,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라도 통합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둔 부모들은 새 학기가 되거나, 상급학교 진학을 앞두고 되면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고민을 하게 된다. 다름 아닌 “아이를 특수학교에 보낼 것인가, 일반학교에 보낼 것인가” 이런 고민과 마주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수교육법 전면 개정 이후 사회적으로도 통합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아이를 선뜻 일반학교에 보내기에 걸리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학업의 부

답이 적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형성되기 전인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만 해도 통합교육이 비교적 잘 이뤄지는 편이지만, 그 이상 학년이 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학교선택의 어려움

강원도의 장애 아이들에겐 특수학교가기란 특목중학교, 특목고등학교에 가기보다도 어렵다. 발달장애 아이들은 일반학생들 보다 더 많은 보살핌을 필요로 함에도 일부 학생들은 집 앞, 또는 살고 있는 지역에 특수학교가 없어 인근 타 지역으로 하루에 4~5시간의 통학을 하여야 하고, 그것도 할 수 없는 학생들은 기숙사 생활을 해야만 한다.

이러한 현실은 교육현장에서 차별사례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엄연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중증 장애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겪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렇듯 특수학교로의 분리교육을 고집한다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집 앞의 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물론 통합교육도 물리적 통합을 넘어서 교육과정에서의 통합, 사회적 통합으로까지 나아가는 진정한 통합교육으로 가기 위한 기틀 마련을 위해서는 정서적 통합까지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물리적 통합은 일반학교에 장애학생을 배치만 해 놓고 마는 것이다.

정서적 통합은 장애학생도 학교의 일원으로서 대접 받고, 존중 받으며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함께 교육받고 생활하고 함께 활동하는 학교이어야 한다.

성장하면서 심해지는 학교에서의 차별해결을 위한지원 절실

초등 고학년이 되면서 부터는 차별, 따돌림 등 2차 피해까지도 발생한다. 인권위에 따르면 수업 중 진도를 잘 따라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체벌을 받거나 동급 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교사로부터 1:1 지도를 받기도 힘들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밟지 못한다.

어느 한 연구에 따르면 통합학급 현장에서 장애학생 10명 중 6명이 인권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는 우리나라의 특수교육환경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책의 방향이 과감하게 충분한 예산과 인력 지원 등으로 뒤따라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 이러한 인권침해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제부터는 자녀를 키우면서, 교육현장에서 경험한 차별 사례들을 모니터링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보다 지역사회에서 차별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들여다보 고자 한다.

□ 강원도 내 조사 대상 차별 사례 유형

- 특수학교의 통학차량을 통한 통학시간이 1시간 이상(편도) 걸리는 경우
- 특수학교의 학급 또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 수가 법정정원 이상인 경우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
- 일반학교에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이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휠체어를 탄 장애학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승강기, 장애인용화장실, 경사로 등의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수학여행, 현장학습, 소풍, 수련회 등 학교밖 행사에 장애학생의 참여를 배제하였거나, 학부모 참여를 강요하는 경우
- 학교에서 수업 참여를 거부했거나 배제당한 경우
- 순회교육을 원하지 않았지만 순회교육을 제공받은 경우
- 중학교 과정 이상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이 직업교육을 제공받지 않은 경우
- 상급학급에 특수학급 설치를 관할 교육청에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한 경우
-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특수교육을 전공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인력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

위의 여러 교육권 침해 사례 유형에서 보듯이 특수교육 현장에서 아직도 장애학생들은 편의제공 등의 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엄연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물론 장애인차별 금지법에서도 차별의 금지 조항이 있는데도 현장에서는 장애인 이라는 이유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 받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해결하기 위해선 특수교사뿐만 아니라 지원 인력도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권리구제 지원 방안

교육권과 벗어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장애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로서, 또는 장애인 당사자로서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며 겪는 차별행위에 대한 대응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진정을 하고 고발을 하려면 법률지원도 받아야 하는데 일반인으로서 장애인으로서 혼자 진행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매우 어렵다. 제가 몸담고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부모연대에서도 함께하고 있는 회원들은 저처럼 평범하게 장애아이를 둔 부모들이다. 전문가 집단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가슴은 멍들고 몽그러져도 참을 때가 많다. 사무실에 상근하고 있는 활동가들도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회복지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 법률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여 장애인단체들과 지역인권변호사협회들과 업무협약 같은 것을 체결하여 차별행위에 대하여 대응하고 구제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광역 시·도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 역시 법률전문가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모단체의 상근자들과 같은 수준의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운영법인을 공모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선정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불과하다. 이러한 옹호기관을 공모하여 운영을 위탁하지 말고 광역 단위의 새로운 법인기관으로 설치하면서 상근 변호사를 고용하고, 지역에서 인권활동을 하는 단체의 활동가들을 모아 함께 대응하도록 운영하면 차별을 받았을 때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제 언

마지막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일반법이 아니라 특별법으로 승격하여 강제규정을 준수 하지 않았을 시 교육기관 책임자가 엄한 처벌을 받도록 한다면 지금보다는 장애인들의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우리 사회가 장애가 있어 다름을 악이나 잘못된 것처럼 생각해선 안 되고 장애인도 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하며 특수교육법은 교육현장에서 법이 아니라 사회에서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상식의 차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장애인들의 교육권이 일상 보장되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사문화 되어 특수교육대상자들이 학교에 다니며 교육받고 생활하는데 필요 없는 법이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특수교육의 방향은 특수교육을 분리교육으로 갈 것이 아니라 통합교육으로 갈 것을 주문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1주년 기념
장애인 교육권 차별, 현황 및 대응방안 토론회

토론 2

동해시 특수학교 설립 반대 사례

최보영

동해시장장애인학부모회 회장

동해시 특수학교 설립 반대 사례

최보영 (동해시장애인학부모회 회장)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1주년 기념
장애인 교육권 차별, 현황 및 대응방안 토론회

토론 3

강원지역 장애인 교육권 정책 방향

김범표

강원도교육청 미래교육과 장학관

강원지역 장애인 교육권 정책 방향

김범표 (강원도교육청 미래교육과 장학관)



강원지역 장애인 교육권 정책 방향

강원도교육청 미래교육과
장학관 김범표

발표순서

- 강원도 특수교육 현황
- 장애인 교육권 정책 방향
- 장애학생 인권 보호 강화와 장애공감문화 확산

강원도 특수교육 현황

모두를 위한 교육

강원도 특수교육 현황

○ 특수학교 현황

설립별	학교 수	학급 수					계
		유	초	중	고	전공	
공립	6	5	49(4)	37(1)	44(3)	22	157(8)
사립	1	1	7	3	4	4	19
계	7	6	56(4)	40(1)	48(3)	26	176(8)

모두를 위한 교육

강원도 특수교육 현황

○ 특수학급 현황

학교 수				
유	초	중	고	계
28/266 (국1/1)	207/374 (국1/1)	74/147	48/94 (국1/1)	357/881 (국3/3)

학급 수				
유	초	중	고	계
28/464 (국1/4)	216/4,236 (국1/19)	80/1,537	56/1,393 (국1/28)	380/7,630 (국3/51)

강원도 특수교육 현황

○ 특수교육 대상 학생수 현황

구분	특수 학교	일반학교		계	비고
		특수학급	전일제 통합학급		
유치원	17	97	36	150	
초등학교	179	866	100	1,145	
중학교	163	305	61	529	
고등학교	261	321	61	643	
전공과	238	0	0	238	
소계	858	1,589	258	2,705	

강원도 특수교육 현황

○ 특수교원 현황

구분	특수학교	특수학급	특수교육 지원센터	계
교장	5	0	0	5
교감	7	0	0	7
교사	245	380	43	668 / 13,248
계	257	380	43	680



모두를
위한 교육

장애인 교육권 정책 방향



모두를
위한 교육

장애인 교육권 정책 방향

-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 특수교육기관 확충 및 설립 다양화
 - 특수학교(급) 신·증설
 -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 특수교사 배치
 - 교과별, 장애 특성별, 인권보호 지도역량 강화 연수
 -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상담 지원 확대
 -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환경 구축
 -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 교육권 정책 방향

-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
 - ‘정다운학교’ 운영 등
 -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강화
 - 2019 통합학급 관리자 워크숍 개최(5월) 등
 -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 확대
 -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 미설치교, 재택순회교육

장애인 교육권 정책 방향

-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 중도·중복장애 학생 지원 확대
 - 보조공학적 지원 확대
 -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등
 - 특수교육보조인력 운영 지원
 - 보조인력 운영 및 역량 강화 지원
 - 사회복지요원 교육 강화 등
 - 개별화교육계획 내실화 지원체제 확대
 - 다양한 지원인력 등을 활용
 - 특수교육대상자의 요구반영

모두를 위한 교육

장애인 교육권 정책 방향

-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 장애학생 안전 강화
 -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운영
 - 체험형 학교 안전 교육 실시
 - 학교별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
 - 노후 및 낙후된 시설 개선
 - 재난위험 시설 해소 지원
 -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 원격수업,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병원학교 운영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정규교사 배치, 거점센터 운영 등

모두를 위한 교육

장애인 교육권 정책 방향

-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 예술동아리, 학교스포츠클럽 확대 등
 - 방과후교육, 돌봄 지원체제 강화
 - 방과후학교 운영
 - 방학중 계절학교 프로그램 운영
 -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 특수교육 전담 전문직 확충 및 역량 강화
 - 특수학급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원 강화

장애인 교육권 정책 방향

○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강화

-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전면 시행 및 내실화
 - 자유학기제와 학년제 확대
 - 전산망 ‘꿈길’ 통한 체험활동 지원 등
-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 지역사회중심의 원스톱 취업지원
 - 사후관리 체계 구축
 - 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착
 - 맞춤형 일자리 및 취업 지원 강화
 - 특수학교 진로 전담교사 배치·지원 확대

장애인 교육권 정책 방향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강화
- 순회교육 지원
- 치료지원
- 감각장애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 교재교구, 보조공학기기, 학습보조기기 등 지원
- 특수교육대상영아(만 3세 미만) 무상교육 지원
- 특수교육대상유아 초등학교 입학적응 지원
- 특수교육 정보화 교육 지원



장애학생 인권 보호 강화와 장애공감문화 확산



장애인 인권 보호와 공감문화 확산

- 장애학생 인권침해 대응체제 강화
 -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 강원도 장애학생 인권침해 종합 대책 운영
 - 유관기관 협력 실태 점검
 - 병무청(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 면담 조사)
 - 장애학생 행동지원 체계 구축
 - 행동지원팀 운영(인권침해 위기상황 신속 대응)
 - 심리안정실 운영 지원
 - 인권침해 위기상황 재발방지 도모

장애인 인권 보호와 공감문화 확산

- 장애학생 인권보호 안전망 구축
 - 인권보호 자원지도 시스템 구축 운영
 - 피해학생 단계별 지원체계 강화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및 역할 강화
 - 강원특수교육지원센터
 - 17개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
-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지원
 - 정기현장지원, 특별지원
- 더봄학생 지원 강화

장애인 인권 보호와 공감문화 확산

- 장애 인권교육 강화 및 장애공감문화 조성
 - 모든 학생 장애이해교육 연2회 이상 의무 실시, 교직원 연1회(장애인복지법)
 - 찾아가는 장애인권교육 교육 실시
 - 장애학생을 위한 성교육
 - 특수교사를 위한 성교육 연수
 - 장애유아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 인형극
 - 교직원 대상 현장체험형 장애이해교육



마치며



마치며

- 특수교육대상자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실현
- 공교육 책무성 강화
-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 지속가능 환경 조성
-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 실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1주년 기념
장애인 교육권 차별, 현황 및 대응방안 토론회

토론 4

특수교사가 바라본 장애인 교육권 문제와 대책

박은경

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 위원장

특수교사가 바라본 장애인 교육권 문제와 대책

박은경 (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 위원장)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1주년 기념
장애인 교육권 차별, 현황 및 대응방안 토론회

토론 5

장애성인의 교육현실과 개선방안

김용섭

반딧불장애인학교 대표

장애성인의 교육현실과 개선방안

김용섭 (반딧불장애인학교 대표)

1. 들어가며

장애인의 56.6%가 중학교 이하 학력이라는 교육현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2014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학력 수준은 국민교육수준에 비해 낮아 학령기에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장애성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당해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의하면 중졸이하 약 56.6%, 무학 11.6%라는 통계가 있다.

전국 장애인 250만여 명 중 140만여 명이 중졸이하의 학력이라는 심각한 학력소외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0년대부터 한국사회에서 방치되었던 장애성인의 교육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 영역에서 장애인야학이 설립되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초기 장애인야학은 장애성인의 초·중·고 학력취득을 위한 검정고시교육지원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다가 장애인당사자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학습에 대한 욕구가 변화하면서 현재는 검정고시교육과정 이외에 문화·예술·체육·사회참여 등 평생교육영역으로 확대 발전하여 다양한 교육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2. 방치되었던 장애성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온 ‘장애인야학’

2004년부터 당시 장애인교육의 종합적인 지원체계 부재를 절감했던 장애인부모, 장애인당사자, 특수교사 등이 모여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를 결성하였다. 이후 연대를 통해 장애인교육법제정운동을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진행하였고 2007년 4월 30일 「특수교육법」이 제정되었다.

「특수교육법」은 생애주기별 교육지원과 통합교육, 개별화교육 등 장애인의 교육지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관련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률 제정 당시 성인장애인교육문제의 해소를 위해 제33조 (장애인평생교육과정) 와 제34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가 만들어졌다.

「특수교육법」 제34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의 경우 초·중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기를 지난 성인장애인을 위하여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한다고 명시되어있으며 이는 그동안 국가가 교육의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지원하지 못한 성인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명시되어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유일한 근거조항이었으며 장애인단체의 끊임없는 요구와 투쟁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특수교육법」이 2008년부터 시행되면서 2009년부터 제도권 밖에 있던 장애인야학이 자격요건을 갖추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하였고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예산지원이 이뤄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시·도가 지원할 것인지 교육청이 지원할 것인지 부처 간의 책임회피와 교육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예산지원기준과 발전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현재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지원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매우 상이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교육부는 장애인평생교육활성화방안을 2009년에 발표하며 정책을 제시하였지만 성인장애인 교육에 대한 예산지원은 모두 지방의 자율에 맡김으로서 「특수교육법」 제정 취지와 달리 장애인평생교육분야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정체현상을 거쳤다고 볼 수 있겠다.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기준은 지자체 및 교육청에서 각자 판단하도록 하여 전국 장애성인 교육지원의 불균형을 초래하였고, 특수교육관련서비스의 경

우 법률 근거 부족으로 지원이 어렵다고 답하며 시행령 개정에도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왔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지원 조항

제12조의3(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설비의 개·보수에 필요한 경비
2.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3. 시설 이용자에 대한 급식·간식비
4. 교재·교구 구입비 등 장애인평생교육에 필요한 경비
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장애인 대상 교육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장애인야학의 운영강화 방안

1) 시도별 장애인평생교육예산 확대를 위한 국비지원

장애인야학의 운영강화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시도별 장애인평생교육 예산 확대 및 국비지원 체계가 먼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장애인평생교육예산은 모두 시·도의 여건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시·도간 지원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시·도 내에서도 지자체와 교육청간의 책임소재 공방이 계속되며 한쪽이라도 지원을 잘 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국가의 예산편성 회피와 지역 내 책임소재 공방으로 결과적으로 장애인평생교육예산은 1인당 연간 1,780원 정도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은 국가와 지자체의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에 머물러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 할 수 있겠다.

2)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및 인건비 기준 마련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을 통해 유·초·중·고·특수학교에 대한 표준교육비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기준은 단 한 번도 제시한 적이 없다.

각 시도별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현황을 알 수 있는데 국가차원의 운영비 및 인건비 기준이 존재하지 않다보니 지역별로 예산지원, 공간지원, 인건비지원 등이 모두 상이하며 이는 성인장애인들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할 때 지역별로 지원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지역 간 장애인의 교육 형평성 문제도 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표준교육비 기준을 마련하여 각 지역에 고시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지역 간 교육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인건비의 경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같이 교육부에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내 학습자에게 양질의 교육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현재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업무, 역할, 예산이 지자체와 교육청간의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겪는 문제를 파악 분석하여 지자체와 교육청간의 업무분장, 예산편성 등을 구분해줘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경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표준교육비가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 3 운영비 지원에 대한 각호 조항을 지자체와 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각호조항을 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전국장애인아학협의회 소속 장애인아학 교사·학생 수 및 프로그램 현황

(단위 : 명, 개)

시·도	기관명	교사수	학생수	프로그램 실시 여부				
				문해 교육	학력보완 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달 장애인 프로그램	기타 프로그램
서울	노들장애인아학	49	99	○	○	○		○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28	25	○	○	○	○	
부산	장애인배움터	31	25	○	○	○		○
대구	질라라비장애인아간학교	17	69	○	○	○	○	○
인천	작은자아학	27	40	○	○	○	○	○
	만들레장애인아학	14	25	○	○	○		○
	바래미아학	18	27	○		○		
광주	디딤돌장애인아학	10	45	○	○	○	○	
	실로암장애인평생교육원	25	40	○	○	○		○
대전	모두사랑장애인아학	48	60	○	○	○		
	대전장애인배움터 한울아학	13	20	○	○	○		
울산	다울성인장애인학교	16	25	○	○	○		○
	동그라미장애인학교	11	25	○	○	○		○
경기	솔모루장애인학교	12	27	○	○	○		○
	에바다장애인평생학습학교	10	22	○	○	○		○
	나무를심는학교	10	43	○	○	○		○
	화성장애인아학	14	27	○	○	○		○
	오산성인장애인씨앗학교	55	10			○		
	두드림장애인학교	16	40	○	○	○		○
	함께배움장애인아학	22	33	○	○	○		○
수원새벽빛장애인아간학교	14	55	○	○	○		○	
강원	반딧불장애인아학	13	35	○	○	○		○
	아우름장애인아학	10	43	○	○	○	○	○
	강릉하슬라장애인아학	12	39	○	○	○		○
충북	다사리장애인아학	29	102	○	○	○	○	○
	평생열린학교	12	22	○	○			
	해뜨는학교	4	15	○	○	○		
전북	사)다운복지센터 부설 다운학교	20	45	○	○	○		○
계	28개소	560	1,083	27	26	27	6	20

자료: 전국장애인아학협의회 내부자료, 2016년 기준

4. 강원지역 장애인 야학의 현황

강원도 야학의 역사는 10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그동안 장애인들은 지역사회에 나오고 싶어도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복지관이나 병원에 삼삼오오 모여서 하루를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고, 어디를 가려고 해도 마땅하게 갈 곳이 없었다. 이러한 시절에 자립생활센터와 야학의 등장은 지역사회의 장애인에게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다.

장애인당사자운동을 중심으로 IL센터와 야학이 생겨나면서 관심을 가지는 장애인들이 한두 명씩 모이게 되었고, 그 당시 전동휠체어의 보급시기가 겹치지면서, 중증장애인들이 자연스럽게 장애인운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연대활동에 참여하면서 타 지역 장애인들과 정보를 나누게 되고 학령기를 놓친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강원지역에 야학이 생겨나게 되었다. 사실 2000년대 중반까지도 강원도의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전무했다는 표현이 맞다고 해야 할 것이다.

강원도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야학이 4개소가 있고 1개의 야학이 준비중에 있다. 장애인 야학의 현실은 아직도 열악하다. 불과 몇 년 전까지 교사도 마땅히 없어서 자원봉사 형식의 교사를 초빙하다보니 교사가 자주 바뀌게 되었고, 중증장애인들이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밤늦게 귀가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무엇보다도 끼니해결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청과 교육청에 장애인들의 교육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구하였지만 강원도청 내에서 장애인은 무조건 경로장애인과에서 담당을 해야 한다는 논리로 몇 년간을 핑퐁게임을 하였다.

또한 교육청은 프로그램비를 지원하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수학여행과 체육활동은 지원이 되지 않고,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한다고 홍보를 하면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는 안 된다는 이상한 궤변으로 갑과 을의 관계를 만들어 놓고 타 지역 사례가 없고 조례가 없어서 못한다는 말만 되풀이하였다. 비장애인들은 체육활동을 하지 않고 수학여행을 가지 않는가? 장애인야학은 급식지원을 하면 안되는 것인가?

장애인 야학은 구성원들이 장애인들이지만 분명히 문해교육을 비롯한 초·중·고 과정의 교육을 배우고 있고, 검정고시도 응시하고 있으며 학력은 미인정되나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등록이 되어있는 교육청에서 인정한 교육기관이다. 교육은 4대 의무이다. 헌법은 평등을 강조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분명히 장애를 이유로 그 어떠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육이 최우선이라고 할 수가 있다.

5. 나가며

전국장애인야학협회의 슬로건은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입니다”이다.

반딧불장애인야학의 식당에는 “맛있게 드시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갑시다”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이 두 개의 문구가 장애인의 교육현실을 그대로 대변해주는 것 같다.

우리나라 1인당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은 1,780원이라는 사실이 지금껏 장애인이 평생교육에 얼마나 소외되어 왔는가를 말해준다.

강원도 장애성인 인구가 46,930명(2019년 3월 기준 20세 이상 65세 이하)이다.

장애인 교육은 10년, 20년, 30년을 바라보며 장기적인 계획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책임지고 제공하여야 한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강원도교육청에서 4월 5일 “장애인평생교육기관지원조례”를 공포하였다.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를 기본으로 강원도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절실함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관련 조례와 장애인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담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허무한 주장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교육권 확보를 통해 장애인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이 평등한 출발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한다.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강원도가 되기를 바란다.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은 교육을 넘어서 삶 그 자체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1주년 기념
장애인 교육권 차별, 현황 및 대응방안 토론회

부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붙임1 : 장애 관련 직권조사 처리 현황

연번	사건번호	사 건 명
1	10-직권-0001300	○○농아원 폭행 등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2	11-직권-0000200	○○학교 교사의 시각장애여학생 안마강요 등에 대한 직권조사
3	11-직권-0000700	선주의 지적장애인 괴롭힘(금전착취 등)에 대한 직권조사
4	11-직권-0001500	지적장애아동 괴롭힘 등에 대한 직권조사
5	11-직권-0001700	사회복지법인 ○○의 장애인 차별행위 등에 대한 직권조사
6	11-직권-0002300	사회복지법인 ○○의 장애인 폭력행위 등에 대한 직권조사
7	12-직권-0000700	중증장애인시설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직권조사
8	12-직권-0000800	○○특수학교에 대한 직권조사
9	12-직권-0000900	지적장애인에 대한 금전적 착취 및 폭행에 대한 직권조사
10	12-직권-0001000	중증장애인요양시설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 등에 대한 직권조사
11	12-직권-0001100	입양된 지적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12	12-직권-0001400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13	12-직권-0001700	장애인체육선수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14	13-직권-0000400	무연고 지적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15	13-직권-0000500	장애인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16	13-직권-0000600	○○공동생활가정에서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직권조사
17	13-직권-0002400	사회복지법인 ○○내 시설 등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18	14-직권-0000100	장애인거주시설의 거주인 강박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19	14-직권-0001100	장애인 거주시설의 폭행 및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20	14-직권-0001700	고속·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직권조사
21	14-직권-0001900	지적 장애인 시설 거주자 폭행 등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22	15-직권-0001300	항공기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직권조사
23	15-직권-0000900	선박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직권조사
24	15-직권-0001500	지적장애인 시설 내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25	15-직권-0001800	장애인거주시설 내 폭행 및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직권조사
26	16-직권-0001700	다수인보호시설 종사자에 의한 폭행 등 인권침해 직권조사
27	16-직권-0002400	보호사의 환자 폭행에 대한 직권조사
28	17-직권-0000400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내 폭행 등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29	17-직권-0001300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의 폭행 및 학대 등 인권침해 직권조사
30	18-직권-0001900	세종누리학교 학생 폭행 등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붙임2.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장애 관련 사업 및 정책 권고·의견 표명 (2008년~2018년)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1	장애인차별금지법 기념 토론회 개최 (2009~2018)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성과 및 한계를 점검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해와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법의 실효적 이행을 도모하는 계기 마련
2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실시 (2009~2018)	장애인당사자 중심의 현장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된 차별영역을 중심으로 생활 속 장애차별 사례들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피모니터링기관에 송부하여 즉각적인 개선 유도 및 정책과제 발굴
3	정당한 편의제공 판단기준 연구 (2009~2012)	고용, 교육, 재화 및 용역의 이용, 사법·행정절차, 인적서비스 등 장애인 차별금지법 상 편의제공 판단기준 연구
4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 독점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의견표명 (2008)	헌법재판소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안마사 자격 독점권 부여제도는 현존하는 차별로부터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잠정적이고, 위급하고,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안마사업에 대한 시각장애인 독점 조항은 합헌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 표명
5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발간 및 정책권고 (2009)	정신보건시설 입·퇴원 과정에서의 적정절차 마련, 정신보건시설 내 권리보장 및 치료환경 개선,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장애인 치료,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편견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발간 및 국무총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
6	시각장애인 참정권 차별개선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표명 (2010)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그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책자형 선거공보 제작 시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작을 의무화하는 등 시각장애인이 선거공보를 통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국회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에게 의견 표명
7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및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2010)	장애인활동보조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중증장애인 개념 명시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게도 활동보조서비스 신청자격을 부여할 것,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대상 및 서비스 인정시간을 확대하고 장애등급 심사비용을 국가가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의견 표명
8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10)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박은수의원)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행과 관련된 모니터링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모니터링센터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과태료 규정은 그 부과의 주체 및 절차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표명
9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2010)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의 기술 내용이 국가보고서 작성지침에 부합하도록 장애인의 법적능력, 자립생활지원, 접근성 제고, 고용과 노동, 교육 등에 통계자료를 추가하고, 협약 이행의 문제점과 장애요소 등을 추가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표명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10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성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2011)	시설물 건축에 대한 건축절차와, 편의증진법과 건축 간의 관계 검토를 통하여 현행 제도 및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 등을 제공하고자,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보완점 등을 마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
11	은행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 정책권고 (2011)	은행 시설물, 금융자동화기기,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절차에서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제공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금융위원회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국은행연합회장 및 10개 은행장에게 권고
12	중장기 장애인 인권증진 계획 수립 및 권고 (2012)	장애인 관련 주요 정부정책 및 법령 분석, 장애인 인권증진 및 차별시정을 위한 분야별 정책 의제 발굴 등을 통해 장애인의 새로운 인권적 요구에 부합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및 연차별 행동 계획을 마련하여 국무총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
13	장애차별 보험 가이드라인 작성 및 권고 (2012)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보험가입 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험차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 및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권고
14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도 내실화 방안 마련에 대한 권고 (2013)	후견심판절차에서 사건 본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원칙적으로 부여하고, 사건 본인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의사소통 전문가 또는 신뢰관계인을 참여시키며, 후견사무의 감독을 위해 가사조사관 등 필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가사소송규칙」에 후견인의 활동보고서 제출 의무를 규정할 것 등을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
15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구축을 위한 정책권고 (2013)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 및 환경에 기반한 정책 및 제도의 개선이 범정부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하고,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기반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장애인보조기구 서비스 활성화 및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내실화,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대 및 급여수준 현실화, 「장애인건강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화 및 지역사회 복귀 지원과,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주택법」 등에 의거하여 장애를 고려한 최저주거기준 마련, 건설임대주택 공급량 확대, 전세주택제공사업 도입하고, 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직업적 장애기준 마련, 보조금고용제도를 도입할 것 등을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
16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권 증진을 위한 「도로법」 개정 권고 (2013)	‘소규모 상가 앞 경사로’가 도로 점용허가 대상임을 명확하게 하여 법령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을 개정하고, ‘소규모 상가 앞 경사로’ 설치에 장애인의 시설 접근권 증진 등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도로법」 제42조에 근거조항을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고
17	법무사 자격시험 시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 개선권고 (2013)	대법원이 주관하는 법무사 자격시험은 약시인 시각장애인과는 달리 전맹인 시각장애인에게 아무런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에 위원회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에게 전맹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18	근로지원 서비스 제공 시 공무원인 중증장애인 배제에 대한 정책권고 (2013)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상위 법령에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등 편의제공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안정행정부장관에게 권고
19	정신보건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13)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결과, “비자의 입원환자에 대한 입원절차 및 계속입원심사를 일원화, 입원연장 3회 이상시 광역정신건강증진심판위원회에서 심사 진행,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환자에 대해 퇴원 후 지역사회 연계 강화, 공적기관에 의한 이송 의무화 및 위반 시 벌칙조항 신설, 격리, 강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정신건강증진시설 출입 및 환자 면담에 관한 사항을 의무조항”으로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표명
20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내부 안전장치 개선을 위한 정책 개선 권고(2014)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 휠체어 유형 등을 고려한 특별교통수단 내부의 안전장치(휠체어 고정장치 및 휠체어 사용 탑승자용 안전벨트 등)의 구조·재질·안전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것과 △특별교통수단 운행권자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해 안전 사고 관련 사례교육, 안전장치 착용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제반 안전 교육을 실시할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고
21	시각장애인 제1종 운전면허 취득제한 관련 정책 개선 권고(2014)	최소 시력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일률적으로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관련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
22	장애인관람석 설치기준의 장애인 관람편리성 제고 권고(2014)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의[별표1]의 “20.장애인등의이용이가능한관람석또는열람석”의 가항을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은 다른 관람석 또는 열람석과 동등한 수준으로 시야가 확보될 수 있는 곳에, 동행한사람과 나란히 앉을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하며,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어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
23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대법원 2012두20991)에 대한 의견제출(2014)	대법원에 계류 중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사건(2012두20991)”에 대한 재판이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의견 제출 대법원 2012두20991사건(서울고등법원 2012누6836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의족 등 보조기구에 의지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의족이 업무 중 파손되었을 경우, 의족은 생물학적 신체가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부상이라고 할 수 없어 요양급여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줄 것을 요청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24	언론매체의 장애비하표현에 대한 개선 의견표명(2014)	방송, 신문 등의 언론매체에서 장애인을 비하할 소지가 있는 용어나 관용구가 사용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주의를 기울일 것을 의견으로 표명함.
25	장애인 인권 상황 실태조사 실시 (2009~2018)	<p>공공기관 웹 접근성 실태조사(2009), 대학 장애학생 교육권 실태조사(2009), 장애인차별금지법 단계적 이행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2010), 장애인권리협약 국내이행 실태조사(2010),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장애유형별 실태조사(2011), 장애유형별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2011), 장애유형별 자립생활 현황과 지원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2011),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인적 편의제공에 관한 연구(2011), 장애인차별금지법 영역분류를 기준으로 한 외국판례 연구(2011), 시설거주인 거주 현황 및 자립생활 욕구 실태조사(2012),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장애인정책 현황 및 문제점 실태조사(2012), 장애유형별 자립생활 현황과 지원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2012), 한국과 일본의 자립생활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한국적 자립생활 정착방안 연구(2012), 자립생활 기반구축을 위한 외국사례 및 정책 연구를 통한 선진모델 구축(2012), 정신장애인 차별·편견해소를 위한 실태조사(2012),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연구(2013), 장애인노동권 보장을 위한 전달체계 및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2013), 공공조달을 통한 보편적 설계제품의 확산 연구(2013),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증진 및 개선을 위한 연구(2014), 장애인주거지원제도 실태 및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2014), 특수학급에서의 장애인 교육권 증진실태 및 정책방안에 대한 연구(2014), 중증장애인 건강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개선방안 연구(2014), 거주시설 종사자 의 노동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2014), 시설거주 장애인 선거권 실태조사(2014), 중증장애인 노동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2015), 장애영유아 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2015), 정신병원 격리·강박 피해 실태조사(2015),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인권상황 실태조사(2015), 일정기준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접근성 실태조사(2016), 장애인 평생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2016),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해외사례 비교연구(2016), 감염인 의료차별 실태조사(2016), 장애인 탈시설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2017),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차별 실태조사(2017), 정신보건시설의 정신장애아동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2017), 중증정신장애인 시설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2017), 중증중복장애학생 교육권 실태조사(2018),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2018), 장애인 모부성권 증진 실태조사(2018)</p>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26	각종 토론회 및 국제심포지엄 등 개최 (2009~2018)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웹 접근성 보장 방안 토론회(2009), 장애인 교육권 보장 방안 토론회(2009), 장애인권리협약 한·일 국제심포지엄(2009), 아·태지역의 장애인권리협약 실효적 이행을 위한 국제심포지엄(2010), 장애인권리협약 정보접근권 관련 국제심포지엄(2011),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토론회 및 편견해소 캠페인(2009~2012), 발달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인권세미나(2013),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 후견제 국제컨퍼런스(2013),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보고서 공청회(2013),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토론회(2014), 의사결정능력장애인의 민사·가사재판 참여권 및 선거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학술대회(2014), 장애인 건강권 증진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2014), 장애인 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토론회(2014),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토론회(2015), 시청각장애인 모바일 정보접근권 토론회(2015), 장애인 권리옹호계 확립을 위한 현황과 과제 토론회(2016),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제고를 위한 지역순회 토론회(2016),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제심포지엄(2016), 정신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토론회(2016), 탈시설 세부이행 계획 마련을 위한 토론회(2016), 장애여성 차별 시정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2016),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주년 기념 지역순회 토론회(2017),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국제심포지엄(2017), 감염인(HIV/AIDS) 의료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2017),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2018), 「중증·중복 장애학생 교육권 증진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2018), 장애인 관광활동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 토론회(2018), 공공기관의 고용차별 개선 정책권고를 위한 토론회(2018), 장애인 인권현안 토론회(장차법 시행 10주년 기념)(2018), 「정신의료기관의 아동청소년 인권증진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정책토론회」(2018)
27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2015)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발달장애인법과 관련된 조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함.
28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에 관한 법률 수정안에 대한 의견표명(2015)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에 관한 법률 수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조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함.
29	고속·시외버스 이용에 있어 장애인차별 관련 정책권고 (20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라목에 따른 시외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버스를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함
30	시설거주 과연령 장애인의 교육기회보장을 위한 정책권고 (2015)	교육부장관에게 학령기에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시설거주 과연령 장애인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과 교육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평생교육시설과 과정을 확충할 것을 권고함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31	통합교육환경에서의 장애인 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2015)	일반학교에서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및 차별에 대한 대책으로 17개 시도교육감에게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장애인 전문가참여 등 6개 과제, 교육부장관에게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활동강화 등 6개 과제, 기획재정부 장관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특수교육교원 증원과 법정 정원확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권고함
32	「장애인 시설 건립 반대」에 대한 의견표명(2015)	장애인직업센터 설립 반대 위원회가 지역 내 장애인 시설 설립을 반대하는 행위는 '장애인 차별행위' 가 될 수 있다는 것과 서울특별시장과 동대문구청장은 지역 내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장애인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의견으로 표명함
33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 개선 정책권고(2016)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양팔이 절단된 장애인을 「장애등급판정기준」 상의 '보행상 장애인'으로 인정하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대상자에 포함할 것을 권고
34	항공기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시정을 위한 정책권고(2016)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토교통부장관, 휠체어 승강설비를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없는 공항에는 대체할 휠체어 승강설비와 필요한 인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각 항공사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항공기 탑승 시 진단서, 의사소견서, 항공사 면책서약서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2. 인천국제공항공사, 여객탑승교와 항공기가 연결되는 부분의 높낮이 차를 제거 3. 한국공항공사 사장, 여객탑승교를 설치할 수 없는 공항에 이를 대체 휠체어 승강설비를 갖추기 바람 4.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및 한국공항공사 사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유형별 장애인 이동을 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인적 서비스를 제공 5. 각 국적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진에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관련 업무 담당 인권교육 실시, 휠체어 승강설비를 대여하며, 공항시설이용 등에 필요한 인적 서비스를 제공, 웹사이트와 모바일앱을 통해 제공하는 항공기 이용 관련 정보를 접근·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 항공사에 사전에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항공사 면책서약서 등을 요구하지 말고, 상반신 고정용 안전벨트와 기내휠체어를 비치하기 바람
35	정신병원의 격리 강박으로 인한 인권침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권고(2016)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건복지부장관에게 1. 정신의료기관에서의 환자의 격리 및 강박 조치에 있어서 아래의 요소를 포함한 법령 강화. 격리·강박의 목적과 원칙/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 의한 지시/격리·강박 명부 작성과 비치 의무화/격리·강박과 관련된 구체적 조건과 절차(해제조건, 시간제한, 연장에 대한 절차, 이유 등의 고지, 관찰 등) 2. 화학적 강박을 포함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한 약물투여 실태조사 실시 3. 격리실의 구조와 설비, 강박도구의 표준화를 위한 연구와 표준화된 격리실과 강박도구 활용 및 정착을 위한 노력 4. 격리·강박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프로그램 연구 추진 5. 의료진 및 직원을 대상으로 격리·강박 관련 교육과 훈련 강화 6. 보호사의 역할과 자격을 규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36	선박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개선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2016)	<p>1.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시정명령권을 적극 행사하여 여객선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부잔교(浮棧橋)와 차도선(車渡船)의 차량진출입 갑판 등의 바닥표면 재질 및 설치물에 대한 규정을 마련, 지도·감독 실시하, 장애인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이 마련, 여객선 설계·건조·검사·운영 등의 과정에 걸쳐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설치가 고려될 수 있도록 여객선 설계자, 제조자, 소유자, 운영자, 검사담당자, 해사안전감독관 등을 대상으로 장애유형별 편의제공에 대해 교육,</p> <p>2.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의 여객선 승하선, 항만 시설이용 등에 있어 필요한 인적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p> <p>3. 한국해운조합회장은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향후 여객선을 건조, 개조, 수리, 용도 변경 등을 할 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 인적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지도를 강화하기 바람</p> <p>4. 국민안전처장관은, 가. 향후 새롭게 건조될 유선(遊船) 및 도선(渡船)에 대해 선박의 규모, 승선정원, 항해 예정시간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선박 탑승편의시설 세부설치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나. 유선 및 도선에 시각장애인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는 등의 장애인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선 및 도선 사업자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하기 바람 다. 향후 새롭게 설치될 유선장 및 도선장에 대해서는 그 규모에 따라 장애인의 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바람</p>
37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활동지원제도개선 정책권고(2016)	<p>1. 활동지원서비스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기본급여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추가급여량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기 바람</p> <p>2.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인 장애인의 경우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바람</p> <p>3.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단가를 다른 유사 서비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높여 활동보조인의 처우를 개선하기 바람</p>
38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내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권고(2016)	<p>보건복지부장관에게, 1.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운영을 종합적으로 지원·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2. 공동생활가정 관련 공통 운영매뉴얼을 마련하여 보급 3. 공동생활가정의 다양한 모델 개발 필요. 4. 인권교육을 강화 5.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함.</p> <p>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장애인의 공동생활가정 입소를 위한 신청 및 이용안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대체인력 지원, 교육사업, 운영지원 등을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사정에 적합한 종합적인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공동생활가정 지원방안 마련.</p>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39	장애인 안전권 강화를 위한 정책권고(2016)	<p>국민안전처 장관에게,</p> <p>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인 안전대책을 포함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집행계획 작성지침에 반영하기 바람</p> <p>나.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재난·안전관리 매뉴얼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람</p> <p>다.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장애당사자를 비롯한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바람</p> <p>라.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경보·피난 설비를 널리 보급하고, 다양한 경보·피난 설비를 연구·개발하기 바람</p>
40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2016)	<p>법무부장관이 2016. 8. 29. 입법예고한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 표명</p> <p>1. 치료감호 만기 종료자에 대하여,</p> <p>가)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제32조 제1항 제1호의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음.</p> <p>나) 보호관찰 기간 내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제33조 제2항과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제52조 제13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p> <p>2. 치료감호 가종료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제34조의2의 최초 유치기간은 20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p>
41	제주도 장애인 인권보장 일부개정 조례안 관련 의견표명(2016)	<p>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장애인 인권침해 관련 조사 및 구제권한을 규정할 경우에 대한 위원회 유권 해석</p>
4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2016)	<p>제29조(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등)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및 같은 조 제2항의 편의제공 대상 시험의 범위</p> <p>3-1. <추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실시하는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전보 등의 시험</p> <p>5-1.<추가>「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서 학생선발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시험</p> <p>5-2. <추가>「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른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력인정 시험</p> <p>제29조(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등)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및 같은 조 제2항의 편의제공 대상 시험의 범위</p> <p>3-1. <추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실시하는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전보 등의 시험</p> <p>5-1.<추가>「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서 학생선발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시험</p> <p>5-2. <추가>「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른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력인정 시험</p>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43	장애인 접근성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2017)	<p>1. 우정사업본부장 및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가. 장애인이 각 우체국, 고용센터(고용복지+센터 포함)를 이용함에 있어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관련 법령 및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2016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등을 참고하여 시설을 정비하고, 물적·인적 서비스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바람 나. 위 체크리스트 등을 참고하여 상시적인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바람</p> <p>2. (주)000, (주)00백화점, 00쇼핑(주), (주)000리테일, (주)0000, (주)000, 000000유통 대표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 가. 장애인이 대형 판매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관련 법령 및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2016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등을 참고하여 시설을 정비하기 바람 나. 위 체크리스트 등을 참고하여 상시적인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바람</p>
44	장애 영유아 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2017)	<p>1. 교육부장관에게, 가. 유치원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나. 통합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유치원 특수학급의 설치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개별 유치원에 대해 특수학급의 정원을 준수하고 장애 유아를 정원 내로 입학시키도록 하는 지침을 강화하기 바람.</p> <p>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가. 장애 유아의 의무교육을 위한 최소지원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이러한 기준에 맞추어 장애 영유아 교육기관의 교육환경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 유아특수교사를 충원하고, 보육종합지원센터에 특수교사를 배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다. 보조인력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비롯한 장애 영유아 보육기관의 설치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마.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를 지원하고, 의료기관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등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지원체계를 구축하기 바람.</p> <p>3. 국무총리에게, 장애 영유아 교육권 증진, 장애의 조기발견과 조기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위 권고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의 정책 조정 등을 수행하기 바람.</p>
45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이용 보장을 위한 정책권고(2017)	<p>1. 지역별 장애인 거주현황과 이용 욕구 등을 고려하여 그 수요에 맞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설치를 확대하기 바람.</p> <p>2.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의 행동문제 발생 시 행동중재의 원칙, 중재의 방법과 과정 등을 포함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바람.</p> <p>3.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특성과 상황에 맞춰 추가 인력을 배치하거나 시설유형을 다양화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p> <p>4.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이용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p>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46	HIV 감염인과 AIDS 환자에 대한 의료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2017)	<p>1.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가. 의사 국가시험에서 감염관리 지침과 HIV/AIDS 감염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치료과정에서의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령을 보완하기 바람.</p> <p>2. 질병관리본부장에게, 가. 의료인 인식개선을 위해 ‘HIV/AIDS 감염인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 가이드’를 개발하고, 나. 국·공립병원 의료인을 대상으로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의료인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 캠페인을 활성화하고, 다. ‘HIV/AIDS 감염인 호스피스 및 요양(돌봄) 서비스 가이드’ 및 ‘HIV/AIDS 감염인의 요양(돌봄)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여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요양(돌봄) 서비스 대책을 마련하고, 라. HIV/AIDS 감염인에 대한 간병비 지원을 현실화하기 바람.</p> <p>3.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도립병원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바람.</p>
47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2017)	<p>1. 보건복지부장관은, 가. 2019. 1. 1.부터 신축·증축·개축되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별지1>을 참고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의 [별표1]과 [별표2]를 개정하기 바람. 나.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이 아니거나 또는 편의시설을 설치하기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도 장애인의 접근, 이용이 가능한 위치에서 장애인에게 인적 서비스 제공 등 대안적 조치가 강구될 수 있도록, <별지2>를 참고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개정하기 바람. 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증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라. 편의시설 필요성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 확대·강화될 수 있도록 공중이용시설 시설주 및 도로점용허가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람.</p> <p>2. 기획재정부장은,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투자비용외에 일반공중이용시설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투자한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며, 건물 구조 변경 및 세무기 준 적합 등 세액공제 요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9]를 개정하기 바람.</p> <p>3. 행정안전부장관은,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투자비용외에 일반공중이용시설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투자한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 바람.</p>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p>4.국토교통부장관은, 가.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고, 그에 따른 시설주 부담이 경감되도록, <별지 3>을 참고하여 「도로법」 제68조를 개정하기바람. 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이더라도 접근로, 출입구, 출입문 등 최소한의 시설은 건축 설계 시부터 장애인의 접근권이 고려될 수 있도록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실무교육시장장애인편의시설설치관련 사항을 포함하기바람.</p> <p>5.시·도지사는, 가.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접근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기 바람. 나. 편의시설 필요성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 확대·강화될 수 있도록 공중이용시설 시설주 및 도로점용허가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람.</p>
48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제한 지자체 조례 개정 권고(2017)	<p>정신장애인(정신질환자 포함)의 복지시설(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시설, 문화의집 등) 이용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용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조례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74개 기초단체가 128개 시정이 필요한 조례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1.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장에게, 정신장애인에 대해 복지시설 등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조례의 관련 조항을 삭제할 것 2.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해 복지시설 등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시정되도록 노력할 것을 각각 권고함.</p>
4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2017)	<p>개정안이 장애인의 관광활동 관련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대상자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만 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관광 접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광사업자를 의무대상자로 추가하고 관광시설을 의무대상시설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개정안에는 직접차별 금지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관광 관련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등도 차별 행위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국회의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표명(2017. 2. 14.)</p>
5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표명(2017)	<p>「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시행 전 당사자 및 가족, 정신의료기관, 시설관계자 등이 언론 및 성명 발표 등을 통해 의견대립이 심한 상황에서 의견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건복지부의 시행령·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자·타해 위험 기준의 보완', '행정입원 시 요건강화' 등 10개 항목에 대해 조항을 개정하도록 의견표명함.</p>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51	평생교육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표명(2017)	<p>교육부장관이 2017. 4. 11. 입법예고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국립특수교육원에 설치할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17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책임과 역할이 모호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시·군·구 평생학습관 등이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및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배치된 평생교육사에 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이해와 관련한 직무연수가 실시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2	장애인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의견표명(2017)	<p>국가인권위원회는 중증장애인의 교육권 증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부장관과 각 시도교육감은 장애인학생의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 신설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2. 서울특별시장과 강서구청장은 지역사회에서 특수학교 설립 반대 등 장애인을 배제·거부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서울특별시 강서구 특수학교의 설립을 반대하는 행위는 「헌법」 제11조 평등정신에 위배된다.
53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2017)	<p>「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만을 지문등정보의 사전등록 의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보장하는 지적장애인 등의 평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므로 삭제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의견표명함</p>
54	평창동계올림픽 개폐막식 중계방송 등 수어통역 미제공에 대한 의견표명(2018)	<p>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SBS 사장에게,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및 2018 평창 패럴림픽 개·폐막식에 수어통역 방송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에게,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및 평창 패럴림픽 개·폐막식 현장에서 전광판 등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함.</p>
55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2018)	<p>개정안은 정당한 편의의 내용으로 정보접근성과 인적서비스 제공만을 정당한 편의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장차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예술활동과 관련한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①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②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이 규정되어 있는 점을 볼 때, 개정안에는 관광지 및 관광시설의 물리적 접근성 측면 및 장애인보조기구 제공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음.</p>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56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최도자 의원 발의)에 대한 의견표명 보고(2018)	대상기관에 이행실태점검에 관한 별도의 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대상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도 있으며, 반발을 야기할 수도 있어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또한, 보건복지부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사업의 목적도 '장애인차별금지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이행 실태점검을 위한 별도의 관리주체를 두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삭제 필요함.
57	방송에서의 장애인 비하에 대한 의견표명 (2018)	문화방송 대표이사에게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차별적 표현이 방송 프로그램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문화방송을 비롯한 방송사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장애인 비하 및 차별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심과 주의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58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2018)	수어통역 방송의 의무 편성비율이 5%로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수어방송에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수어방송 편성 의무비율에 따른 수어방송의 양적 수치가 줄어드는 만큼 청각장애인의 수어통역 방송 접근권이 떨어지는 바,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필수사업자의 수어통역방송 비율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59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관련 정책권고(2018)	국가인권위원회는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함.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를 위한 임차(바우처) 택시 도입과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광역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개정하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바람
60	시각장애인 인적서비스 미제공으로 인한 이동권 침해 정책권고(2018)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고속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통사업자가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을 개정하여 관련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함.
61	구직 장애인에게 장애 원인 등 정보제공 요청은 장애인 차별 (2018)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함.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 구직신청서(장애인용) (이하 '구직신청서'라 한다.)에 장애인의 직업수행능력과는 무관한 장애 원인을 기재하지 않도록 구직신청서에서 장애 원인 항목을 삭제하고, - 구직신청서의 직업능력 항목을 구직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필요한 항목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세부 직업능력 정보와 고용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구직 장애인이 직접 고지할 수 있도록 구직신청서를 개정하고, - 피진정인을 포함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장애인 일자리 홈페이지 등에서 구직 장애인에게 장애 원인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구직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와 관련된 직업능력 항목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

붙임3. 장애차별 진정사건 주요 권고현황(2008.04.11~2018.12.31.)

□ 고용 영역

연번	조치 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 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직권면직 (08진차0000945)	- 진정인을 복직시키고 직권면직일부러 복직일에 이르는 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을 진정인에게 지급할 것을 권고	2009.8.28.	수용
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로 인한 채용차별 (08진차0001213)	- 진정인에게 2,4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	2009.11.6.	수용
3	권고 (위원회법)	채용면접시험 편의 미제공 (08진차0001093)	- 00청장에게, 향후 면접시험에서 장애응시자에게 편의가 제공된다는 점과 편의신청 절차를 사전고시하고 장애응시자가 자신의 장애특성에 맞게 편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10.2.5.	수용
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해고 (09진차0000490)	- 000000공사 사장에게 진정인을 복직시킬 것을 권고	2010.4.9.	불수용
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군청의 부당인사로 인한 장애인 차별 (10진정0173300)	-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과 해당 과장 및 담당자에 대해서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 - 0000지사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0.9.10.	수용
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채용 시 청각장애인에 대한 간접차별 (10진정0480200)	- 피진정인에게, 신입사원 채용 시 지원자격 중 영어능력시험 점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청각장애인 응시자에게는 그 장애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점수 기준을 적용할 것과, 인사 관련 부서 담당직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1.9.27.	수용
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고용 차별 (13진정0889400)	- 피진정인에게, 향후 직원 채용과정에서 채용공고 조건과 달리 중증장애가 있다는 사유로 서류심사에서 일괄 탈락시켜 채용을 거부하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규정 준수 및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것과 향후 직원 채용 공고 시 공고문에 채용 예정 분야에 관한 직무세부기술서를 첨부함으로써 장애가 있는 지원자가 해당 직무에 대한 수행가능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	2014.10.21.	수용
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교원 성과평가 시 장애인 차별 (14진정0632700)	- 교육부장관에게, 교원의 성과평가 시 장애인 교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 시도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2015.8.20	수용

연번	조치 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 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뇌병변장애인 공무원시험에서의 편의미제공 (15진정0627300)	- 피진정인에게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서 장애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5년도 7급 세무직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손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메모대필을 허용하는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향후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서 시험과목의 특성과 장애정도에 따른 편의제공 내용을 개선할 것을 권고	2015.8.20	수용
1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에 대한 모욕 등 (14진정0560200)	- 0000000중앙회장에게, 피진정인의 장애비하 발언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할 것과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2015.9.18	수용
1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청각장애인에 동일한 합격기준 요구 (14진정0826600)	- 00중앙도서관장에게, 향후 소속 공무원 모집 시 채용 예정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어 듣기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님에도 청각장애인에게 영어 듣기 능력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	2015.9.18	수용
1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채용에서의 차별 (16-진정-0542500)	- 손가락 장애를 이유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운반차량 운전원 채용 및 모집에 -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 부서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 할 것과, 향후 직원 채용 공고시 공고문에 채용 예정 분야에 관한 직무 세부 기술서를 첨부하여 장애가 있는 지원자가 해당 직무에 대한 수행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	2016.11.14	수용
1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정신과질환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위차별 (16진정1022500)	- 사회복무요원 소집순서 결정 등에 있어서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2017.4.3	일부 수용
1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교원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 (16진정0764100)	- 진정인이 교원으로서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을 권고	2017.4.3	수용
1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적장애인에 대한 금전 및 노동착취 등 (16진정1038200)	-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1을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제2호 및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제2항 위반 혐의로, 피진정인2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제7호 위반 혐의로 고발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의 통장을 제3자가 관리하고 있는 실태(거주시설 장애인 및 직계존비속이 관리하는 대상은 제외함)를 파악하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 00군수에게, 관내에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이사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한다.	2017.3.6	기타

연번	조치 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 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신체기준에 의한 경찰공무원 채용 응시 제한 (18진정0197700)	- 경찰공무원 채용 시 '사지의 완전성'이라는 신체기준으로 인해 응시 기회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2018.8.10.	검토
1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신장장애로 인한 채용차별 (18진정0655200)	- 피진정인에게, 공무원 조리사 채용 시 신장투석을 받는 이유로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구체적 심사 없이 탈락시키는 등의 장애차별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2018.12.10.	검토

□ 교육 영역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입학 거부 (08진차0000623)	- 불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재심사 할 것을 권고 - 특별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	2008.12.22.	수용
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입학 거부 (08진차0000648)			
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정부고시에 규정에서의 특수학교 차별 (08진차0000469)	- 공공교육기관이 특수학교를 고시규정의 지역주민 공공 복지시설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	2008.12.26.	수용
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학급에서의 장애학생 수업배제 등의 차별 (10진정0710700)	- 피진정인의 소속 학교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 하지 않도록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예방교 육 및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관리·감독 기관인 00광역시 교육감에게, 향후 관내 학 교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예방교 육 및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2.1.1 0.	수용
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이동권 미확보로 인한 학습권 차별 (10진정0175100)	- 휠체어 사용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시설 의 재배치 또는 이동편의시설을 마련할 것을 권고	2012.6.13.	수용
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이동권 미확보로 인한 학습권 차별 (10진정0180600)			
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이동권 미확보로 인한 학습권 차별 (10진정0181100)			
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휠체어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미비 (13진정0876000)	- 피진정인에게, 장애인이 교내활동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인문관의 지상과 지하의 모든 층으로 접근할 수 있는 승 강기를 설치하고, 경사로를 정비할 것을 권고	2014.8.20.	수용
9	권고 (위원회법)	장애학생에 대한 불리한 진술강요 등 (14진정0309200)	- 00학교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주의 등의 조치를 하고,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장애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 할 것 - .교육부장관 및 서울시교육감에게, 학교폭력 사안의 처 리과정에서 장애아동의 진술방어권과 신뢰자로부터 조 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보완·개 정 할 것	2014.11.17.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0	권고 (위원회법)	장애특례전형 실기시험 시 장애인 차별 등 (13진정0787500)	- 00예술고등학교에게,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개선할 것 - 경기도교육감에게, 특수목적고 특수교육대상자 실기평 가평가지침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2014.12.16.	수용
1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교육시설의 이용시 장애인차별 (14진정0870400)	- 피진정인에게 교육운영과정에서 장애인 차별이 재발되 지 않도록 교직원 대상 인권교육, 장애인 차별예방교 육을 실시할 것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장애인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차별금 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교육과 안내 를 실시할 것을 권고	2015.1.19	수용
1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학생에 대한 전학강요 (15진정0280500)	- 학교법인 00학원 이사장에게, 피해자를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를 퇴학시킨 피진정인 1과 2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할 것, 피진정인 1에게,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교직원들에 대 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5.9.18	수용
1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폭행피해 장애인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15진정0860000)	- 사회복지법인 00원 이사장에게, 피진정인을 경고 조치 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 할 것을 권고	2016.2.17	수용
1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학급에 대한 하절기 냉방장치 미가동에 의한 차별 (17진정0627100)	- 00광역시교육감에게, 피진정인을 징계할 것을 권고 -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장애인 인 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	2017.10.31	수용
1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학생에 대한 의료편의 미제공 등 (16진정0644000)	- 장애학생의 학습활동에 필요하고 의사 진단서에 기초 한 경우 간호사 자격을 가진 보건교사에 의해 가래흡 인과 같은 의료조치 등에 대한 편의를 지원할 것을 권고 - 학습활동에 필수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한 장애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	2017.6.12	일부 수용
1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사립초등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입학거부(18진정00 97200)	- 학교법인 00000교육재단 이사장에게, 유사한 차별행 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 법」 제4조 제1항 '차별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	2018.3.13.	검토

□ 재화·용역의 공급 및 이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차별 (08진차0000281)	- 진정인의 보험청약 심사 개시 권고 - 상법 제732조가 삭제될 때 가지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심신상실 심신박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 및 심사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	2008.7.23.	일부 수용
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08진차0000426)	- 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자 문자안내판에 대한 세부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것을 권고	2008.8.27.	수용
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08진차0000454)			
4	권고 (위원회법)	시각장애인용 음성 축각정보 미제공으로 교통수단이용 차별 (08진차0000392)	- 버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편의내용을 연구 검토하여 '00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반영할 것을 권고	2008.10.1.	수용
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로 인한 현금인출기 사용 제한 (08진차0000416 등 2건)	- 기존 ATM 은 업그레이드하고 향후 ATM 구입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능을 갖춘 ATM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영업점 마다 최소1 대이상의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ATM을 배치할 것을 권고	2008.12.3.	수용
6	권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거부 (08진차0000844)	- 장애인에 대한 보험업무 처리 시 금지된 차별행위와 관련한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 - 감독기관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	2009.6.12.	수용
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거부 (08진차0000886)	- 피해자의 보험청약 재심사, 직원 인권교육, 심신상실·심신박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 및 심사절차 등 마련 권고 - 감독기관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	2009.8.7.	수용
8	권고 (위원회법)	장애인의 이동권 침해 (08진차0000529)	- 횡단보도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것을 권고 -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도로를 횡단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00도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을 권고	2009.9.18.	수용
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적장애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출거부에 의한 차별 (10진정0004600)	- 피해자에게 대출희망 여부를 확인하여 대출받기를 원할 경우 대출심사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피해자에게 1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권고 - 피진정인 감독기관인 00위원회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회사를 포함한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및 시행할 것을 권고	2010.7.19.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보안카드 미발급으로 인한 차별 (09진차0001012 등 2건)	- 00은행장에게 시각장애인이 원할 경우 개인 또는 법인용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할 것과 재발방지대책을 수 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 00000위원장 및 000원장에게 시중은행에서 시각장애인 을 위한 개인 또는 법인용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를 조속 히 발급하도록 조치할 것과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0.8.9.	수용
1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이동권 제한 (09진차0000231 등 2건)	-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지하도 및 지하상가를 접근·이용하 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0000지하도'에 승강기를 새로 설 치할 것을 권고	2010.8.9.	수용
1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건물 임대시 장애차별 (10진정0351700)	- 0000대표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 - 00청장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토 지 및 건물의 소유·관리자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	2010.8.9.	수용
1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하나뿐인 장애인 대형면허 시험장 운영으로 인한 장애인 차별 (10진정0245700)	- 전국의 총 26개 운전면허시험장 중 우선적으로 주요거점 이 되는 시험장에 장애인 1종 대형 및 특수면허 기능시험 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권고	2010.8.9.	수용
1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청각장애인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거부 (10진정0291000 등 2건)	- 대표이사에게 진정인과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가족카 드 발급을 원할 경우 즉시 가족카드를 발급하여 줄 것, 신 용카드 발급동의 확인 시 장애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것,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 00000위원장 및 000원장에게 재금융회사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및 시행할 것 을 권고	2010.8.25.	수용
1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보험가입 제한 등 (09진차0001552 등 6건)	- 피진정인 000 대표에게,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피해자들의 보험청약건을 재심사할 것과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권고 - 00000위원장 및 0000원장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규정 및 지침 등을 조속히 마련하고, 지 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0.9.10.	일부 수용
16		지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제한 (09진차0001555)		2010.10.20.	일부 수용
1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제한 (09진차0001560)	- 피진정인에게,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지적장애인 의 보험인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 및 심사절차를 마련 할 것,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 인권교육 권고	2010.10.20.	일부 수용
18		지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제한 (09진차0001563)		2010.10.20.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 거부에 의한 차별 (09진차0001023)	- 00000위원장에게, 자필 작성이 어려운 장애인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여성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8 제1항 제3호를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	2010.10.20.	수용
2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에 대한 수영시설 이용 제한 (09진차0001175)	- 00000청장에게, 당해 구청이 소유·지원하는 청소년 수련관등의 수영장 시설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수영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11.1.6.	수용
2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거부 (10진정0377600)	- 피진정인 00 대표이사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피해자의 보험청약건을 정식으로 인수심사할 것과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 인 권교육 권고	2011.3.8.	수용
2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대출 거부 및 인격권 침해 (10진정0532200)	- 00 대표이사에게, 「00중앙회 여신업무방법」의 지적장애인에 대한 여신취급 시 유의사항 조항을 삭제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 - 00000장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00중앙회를 포함한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2011.4.26.	수용
2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발달장애를 이유로 한 여행자보험 가입 거부 (10진정0736800)	- 피진정인 00손해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향후 장애인의 보험청약건에 대해 인수심사를 하는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보험대상자의 장애 정도 및 상태, 장애 원인, 건강 상태 등 제반 조건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할 것,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인 권교육 권고	2011.4.26.	수용
2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 (10진정0470000)	- 00시립 00도서관장·00시장·00교육감에게,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의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0000시립00도서관에 소속히 승강기 설치할 것을 권고	2011.4.26.	수용
2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버스 내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자 문자 안내판 제공 (10진정0373100 등 13건)	- 000장관에게 2009. 3. 1. 이전부터 운행해 온 시내버스,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의 내부에도 전자문자 안내판을 설치하여 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자문자인내판 설치 세부기준」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의 [별표1] 및 [별표2]를 개정하고, 마을버스 운송업체들이 개정된 내용에 따라 버스 내부에 전자문자인내판을 적극 설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2011.4.26.	수용
2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시설접근권 침해 (10진정0140200)	- 00지사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경기도여성비전센터를 접근·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	2011.4.26.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2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철거 (10진정0765300 등 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진정인에게, 대상건물 주출입구에 설치되었던 경사로를 철거 전으로 원상복구 시킬 것,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여 '00000 상가번영회 운영규정'을 개정하거나 '관리단의 건물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것을 권고 - 00000구청장에게, 대상건물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편의시설로 완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1.5.17.	일부 수용
2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등 (10진정0378400 등 8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장애인에게 진료기록부 사본을 발급할 시에는 사본에 인쇄물음성변환 바코드를 생성하여 제공하거나 사본의 내용을 점자화한 자료 또는 표준텍스트파일 등을 사본과 함께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것, 진료기록부 사본의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직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00000장관에게, 전국의 종합병원이 위에 제시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지도·감독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1.5.17.	수용
2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미제공 (10진정0366100 등 25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진정인에게, 00동 등 6개 우편취급국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확대경이 즉시 비치되도록 할 것과, 전국 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의 확대경 비치 여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비치되지 않은 곳에는 조속히 확대경을 비치하도록 할 것, 관련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1.6.30.	수용
3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청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 가입 거부 (10진정0231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진정인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진정인의 보험청약건을 재심사할 것과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권고 - 00000장에게, 향후 보험회사가 진정인과 같은 청각장애인의 보험청약건을 인수심사함에 있어 「상법」 제644조의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보험청약자의 장애 정도 및 원인, 건강 상태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검토를 통해 부담보 등 별도의 조건을 부가하여 인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1.6.30.	수용
3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편의시설 사용 불편 등 (10진정0370410 등 9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진정인들에게, 장애인화장실을 남녀 구분하여 설치할 것과, 실태 점검 후 남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역사의 화장실에 대해서는 남녀 구분 설치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 - 국토해양부 장관과 0000시장에게, 지하철 역사의 장애인 화장실 남녀구분 설치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것을 권고 	2011.7.22.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32	권고 (위원회법)	음식점 경사로 미설치로 인한 장애인 출입 제한 (09진차0001267)	- 피진정인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식당 건물을 접근·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규정 에 부합하는 경사로를 설치할 것을 권고 - 000청장에게,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업무 담당 직원들에게 편의시설 설치·점검 누락에 대한 재발방지 교 육을 실시할 것과, 피진정인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경사 로를 설치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	2011.7.22.	수용
3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미제공 (10진정0376701 등 39건)	- 00구 관내 버스정류장에 즉시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 조 치할 것을 권고 - 시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버스운행정 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00시 관내 버스정류장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11.7.22.	수용
34	권고 (위원회법)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에 따른 이동권 제한 (11진정0074900)	- 피진정인에게,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0000시청 민원실동 지하 구내식당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	2011.8.22.	수용
3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하철역 경사로 및 엘리베이터 미설치에 따른 장애인 차별 (10진정0371600 등 2건)	- 피진정인에게,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지하철 역 사 내 환승통로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00역에는 경사로를, 000역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과, 관할하 는 모든 역사의 경사로 및 엘리베이터 설치 현황을 점검하 여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원활한 이동이 보장 될 수 있도록 세부 개선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 - 피진정인의 관리·감독 교통행정기관인 00시장에게, 지하 철 역사 이동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예산지원을 확대할 것을 권고	2011.8.22.	수용
3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미비로 인한 차별 (10진정0794800 등 2건)	- 00시장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 단속 전 담인력을 운영하고, 단속 취약시간대에도 신고 및 단속이 가능하도록 할 것,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 피진정 백화점 및 대형마트 관리자에게,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에 불법주차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고객들에 대 한 안내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과, 장애인전용주 차구역 불법주차 차량 발견 시 관할 행정기관에 적극 신고 할 것을 권고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전용주차 구역 불법주차 차량 단속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 련할 것, 민간에 의한 불법주차 차량 신고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	2011.11.10.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3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법당 출입거부 (11진정0310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사 주지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사찰 내 시설물 출입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과, 사찰 내 전체 스님 및 직원에게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대한불교00종 총무원장에게, 종단 소속 사찰에 대해 관련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재의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접근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법당 등 사찰 시설물에 승강기, 경사로 등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적극 지원할 것과, 사찰, 교회, 성당 등 종교시설 이용에 있어 장애인이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종교계와 협의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 	2011.11.28.	수용
3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미제공에 의한 차별 (11진정0063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장애인이 00시청 및 소속 행정기관에서 행정절차 및 서비스 등을 접근·이용하는 데 있어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과,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행정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1.11.28	수용
3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상업시설 접근제한 (11진정0353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0000상가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상가 내 각 층 승객용승강기 출입문 앞에 설치된 말뚝을 즉시 제거 조치할 것과, 향후 승객용승강기를 이용한 화물운반을 금지하기 위해 별도 대책을 수립·운영할 시 유사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 	2011.12.19	수용
4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사용제한에 따른 차별 (11진정0586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000아파트 생활문화지원실(관리사무소)장에게, 장애인 전용주차장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차량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사용토록 당 아파트 주차관리 내규 제12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 - 00구청장에게 00000 아파트를 포함하여 관내 아파트 입주민에 대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및 이용에 대한 홍보와 위반 차량에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2012.1.10.	수용
4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피해보상금 산정에 있어 장애인 차별 (10진정062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광역시 0000공제회 이사장 에게, 진정인에 대한 공제 급여 심사과정에서의 하자과 90일이내의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 사정을 수용하고 재심사를 할 것, 담당자 인권교육 권고 - 교육과학기술부 및 00광역시교육감에게, 재발방지대책 마련 권고 	2012.3.23.	수용
4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홈페이지 웹 접근성 관련 장애인 차별 (10진정0608110 등 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시장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국가표준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지침 2.0」을 참고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웹 사이트를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 	2012.3.23.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4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적장애인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거부 (11진정0194800)	- 00우체국에 진정인의 보험청약을 재심사 할 것과, 보험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피해자와 진정인에게 각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 할 것을 권고 -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험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2012.5.1.	수용
4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방송 웹사이트 장애인편의 제공 미흡 (10진정0563400 등 93건)	- 해당방송사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국가표준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지침 2.0」을 참고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웹사이트를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	2012.5.1.	일부 수용
4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정당한 편의제공 미흡 (11진정0074901)	- 00시장 및 00도시공사 사장에게, 00기념관 실내수영장에 승강기 또는 경사로와 입수보조시설을 조속히 설치하는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령」 제16조[별표5]의 규정을 준수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12.5.25.	수용
4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승강기 등 미설치로 인한 도서관 이용 제한 (11진정0371500)	- 00시장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도서관의 자료실, 열람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	2012.5.25.	수용
4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등 (10진정0375400)	- 00시가 소유·지원하는 수련관의 수영장시설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수영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12.5.25.	수용
4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아파트 승강기 전기료 차등 부과는 장애인 차별 (11진정0555300)	- 003단지 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타 세대에 비해 부당부과된 금액 총 47,990원을 진정인에게 환급 조치할 것과 장애여부와 상관없이 승강기전기료를 동일하게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피진정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반영하도록 할 것을 권고 -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공동주택 저층(2층 및 3층)에 거주하는 휠체어이용 장애인 세대에게 승강기 전기료 부과 시 타 세대와 균등하게 부과하는 내용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	2012.5.25.	수용
49	권고 (위원회법)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이동권 제한 (11진정0317900)	- 000구청장에게 장애인이 00보도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2012.7.18.	수용
5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휠체어사용 장애인에 대한 항공기 탑승편의 미제공 (11진정0527400)	- 000항공 대표이사에게, 공항 여건상 항공기를 탑승교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항공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휠체어 승강설비 및 기내용 휠체어 등을 구비·운영할 것을 권고 -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항공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2]를 개정하여 항공기 탑승편의시설로 휠체어 승강설비를 의무화할 것과, 저비용항공사가 장애인에게 휠체어 승강설비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	2012.7.18.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5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차별 (12진정0222500)	- (주)00보증보험 대표이사에게, 장애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과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금융위원회위원장에게, 향후 시각장애인 등이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 - 금융감독원장에게, 장애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험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2.7.18.	수용
5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과제빵 실기시험시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11진정0699900)	- 00000공단 이사장에게, 장애인검정업무처리지침 제18조를 청각장애인의 요청 시에 장애상태를 확인 후, 수화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	2012.8.22.	수용
5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티투어버스 장애인 탑승편의 미제공 (11진정0188500)	- 00광역시장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00시티투어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티투어버스에 휠체어 리프트 등 장애인 탑승편의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2012.8.22.	수용
54	권고 (위원회법)	아파트 주출입구 경사로 미설치로 인한 이동권침해 (12진정0012500)	- 00000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아파트 주출입구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경사로를 설치할 것을 권고	2012.11.29.	불수용
5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월정액주차 이용 거부 (12진정0782400)	- 피해자로부터 2개월 동안 징수한 총 주차비 1,100,600원 중 2개월 간 월정액 주차비 300,000원을 제외한 총 800,600원을 피해자에게 즉시 환급할 것,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월정액 주차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월정액 주차할 수 있도록 할 것, 주차관리직원 전원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할 것,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설2에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것을 권고 - 00구청장에게,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인 시설2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할 것, 향후 유사한 피해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내 주차장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함.	2013.1.29.	일부 수용
5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문화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미제공 (12진정0653600)	- 00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및00구청장에게, 시각장애인도비장애인과동등하게홈페이지를이용할수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준수하여조속히정당한편의를제공할것과정당한편의 제공전까지는대체방안을마련하여시행할것을권고	2013.3.13.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5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문화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2진정0636400)	- 시각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00대학교 박물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점자안내책자 내지 음성변환 바코드가 있는 안내책자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13.4.3.	수용
5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수화통역 미제공 등 차별 (12-진정-0643900 등 3건)	- 청각 또는 시각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문화·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수화통역 및 보조인력, 보청기를 제공할 것과 탈의실과 샤워실 냉·온수기에 점자를 표시하는 등 정당한 편의를 즉시 제공할 것을 권고	2013.4.3.	수용
5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문화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2진정0656900 등 2건)	- 시각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문화·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유도 및 안내설비 설치와 수영장내·탈의실내 사물함·헬스장내 운동기구·화장실 세면대 냉·온수기 등에 점자블록 설치 또는 점자스티커 부착, 시각장애인용 안내책자 제공, 시각장애인 등이 요구 시 체육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인력 배치 등 즉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13.4.3.	수용
6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2진정0617700 등 2건)	- 시각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문화·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시각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점자 내지 음성으로 변환되는 안내자료 제공 등 정당한 편의를 즉시 제공할 것을 권고	2013.4.3.	수용
6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2진정0618300)	- 시각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00문화체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축지도식 안내판 설치, 점자 내지 음성으로 변환되는 안내자료 제공 등 정당한 편의를 즉시 제공할 것을 권고	2013.4.3.	수용
6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2진정0617800 등 3건)	- 00구청장과 00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시각 또는 청각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체육·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축지도식 안내판, 점자블록 설치, 보조인력의 배치, 수화통역 제공 등 정당한 편의를 즉시 제공할 것을 권고	2013.5.2.	수용
6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문화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2진정0618000 등 6건)	- 00구청장과 00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시각 또는 발달, 지체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체육·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의교재 제공, 축지도식 안내판 설치, 장애인화장실에 광감지식 등의 세정장치 설치, 그리고 샤워실에 수평 또는 수직손잡이, 접이식 의자 설치 등 정당한 편의를 즉시 제공할 것을 권고	2013.5.2.	수용
6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문화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2진정0618800)	- 00구청장과 00문화재단 이사장에게, 시각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00시네&000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 등의 요구 시 문화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즉시 제공할 것을 권고	2013.5.2.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65	권고 (위원회법)	법무사 자격시험의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 (13진정0073700)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관하는 법무사 자격시험에 있어 전 맹 시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13.6.18.	수용
6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적장애 및 정신과약 복용을 이유로 보험가입 거절 (13진정0388500)	-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피해자 의 보험청약건을 정식으로 인수심사 할 것, 보험심사업무 를 담당하는 관련직원에게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위원회가 권고한 '장애인보험차별개선을위한 가이드라인' 취지에 맞는 보험인수와 관련한 세부지침 및 심사절차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 - 00위원회위원장에게, 「보험업법, 제97조를 위반한 피진정 인에게 관련조치를 취하고,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3.8.21.	수용
6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이동권 제한 (13진정0172300 등 2건)	- 피진정인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도로를 횡단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석바위사거리 및 동인천역 앞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을 권고 - 00시장에게, 휠체어사용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위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설치 및 주변 보행환경 정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권고	2013.11.12	일부 수용
6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에 의한 차별 (13진정0192700)	- 00도서관장에게, 주출입구 접근로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보행환경을 개선할 것,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이 2층 이용 을 할 수 있도록 승강기를 설치할 것, 장애인 화장실을 남 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을 권고	2013.12.13.	수용
6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이용 제한 (13진정0951100)	- 00마트점장에게, 주요 영업공간인 2~4층 매장을 휠체어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상시 개방 할 것과 휠체어 이용자는 수평보행기 대신 엘리베이 터를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을 권고 - 00시장에게,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엘리베이터 운행상태를 현장점검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2014.10.21.	수용
7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 (14진정0013000)	- 피진정인에게, 이 사건 진정인과 같은 선천성 손가락 결손 장애인에게 적용될 인수기준을 마련할 것, 「장애인차별금 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당해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 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소속 직원 및 각 영업지점의 보 험모집원 모두에 대해 장애차별 금지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4.11.17.	수용
7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자판기에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 (14진정0341500)	- 피진정인에게, 시각장애인이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있도 록 상품명과 가격을 점자로 제공할 것을 권고	2015.3.30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7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횡단보도 미설치로 인한 장애인 차별 (14진정0547800)	- 피진정인에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도로를 횡단하 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00역 교차로에서 00교 사이의 중 양대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 00광역시장에게 휠체어 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 리하게 위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 보행환경 정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권고	2015.3.30	수용
7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전용주차장 이용 불허 (15진정0146300)	- 피진정인에게,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이용 방해와 관련하 여 000장애인인권센터에서의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 하고, 00구청장에게, 관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설치·운영 실태를 현장 점검하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을 위한 안 내판 설치 등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할 것을 권고	2015.7.23	일부 수용
7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학원 수강 거부 (15진정0178400)	- 피진정인에게, 교육운영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발 생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00광역시 00교육 지원청장에게,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 장애인 차별이 발생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5.7.23	수용
7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서울광장 배수구로 인한 장애인 이동권 침해 (13진정0917000 등 3건)	-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서울광장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 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수로 덮개의 틈새를 좁 히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2015.8.20	수용
7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하철역사 화장실 이용시 장애인 차별 (14진정0919900)	- 피진정인에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화장실을 안전하 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를 설치하거나, 승강 기가 설치된 장소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설 치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15.8.20	수용
7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화장실 남녀공용 설치에 의한 차별 (15진정0290800)	- 피진정인에게, 장애인 화장실을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 하여 설치할 것을, 00시장에게, 000주민센터 장애인 화장 실 개선공사 관련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2015.9.18	수용
7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 (16진정0338800)	-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체크카드와 동봉하여 발급 하는 안내문을 발급함에 있어서 시각장애인이 안내문의 내 용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알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 특성을 감안하여 사본에 인쇄물 음성 변환바코드 생성처 리하여 제공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면서 동시에 사 본 내용 을 점자 자료화 자료 또는 녹음한 파일 등도 함께 제공하 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산하기관의 점자 체크카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이와같은 내용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 할 것을 권고	2016.21.28	수용
7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공행 내 이동권 제한 (15진정0919600)	- 항공보안검색 과정에서 전동휠체어 등 전동이동보조기 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 대해 향후 유사한 이동권 침해 사 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검색 관련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보안검색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 시하기 바람	2016.12.28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8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아파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폐지에 의한 장애인 차별 (15진정0349900)	- 00주공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재설치할 것을 권고함.	2016.10.5	검토중
8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5진정0546400)	- 피진정인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방지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권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2016.6.8.	수용
8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관광객 수송차량 휠체어 승강설비 미장착 (16진정0275500)	- 피진정인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000자연휴양림의 관광객 수송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 설비 장착 등의 편의제공 방안 마련 - 00군수는 향후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마련시 장애인을 함께 고려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 수립	2016.12.7	수용
8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웹 접근성 이용시 시각장애인 차별 (16진정0746800)	- 피진정인에게 웹사이트 '000000에서 제공하는 본인 확인 서비스의 보안문자에 대하여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보장할 것을 권고	2016.11.14	수용
8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항공기 이용시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5진정0775200)	- 피진정인에게,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항공기 탑승을 위해 전동휠체어의 배터리 분리 및 재장착 시 이를 훈련된 소속 직원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항공기 탑승을 위해 전동휠체어의 배터리 분리 및 재장착 시, 항공운송사업자가 이를 직접 수행하도록 국내 항공운송사업자들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6.12.7	수용
8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을 이유로 한 차량렌탈 거부 (16진정0692300)	- 피진정인은 장애인용 운전보조 장치인 좌측페달을 구비할 것과 진정인등 장애인 운전자가 요청해 올 경우 차량을 대여해 줄 것을 권고	2016.12.28	수용
8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모바일 환경에서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접근권 제한 (14진정0887600)	- 피진정인에게, 모바일 환경에서 시각장애인이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단을 제공할 것을 권고	2016.4.22	수용
8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14진정0887500)			
8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주차구역 무단 철거 (16진정0795600)	- 피진정인에게, 장애인주차구역에 장애인주차 표지가 없는 차량이 주차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016.11.14	수용
8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에 대한 식당이용 제한 (15진정0975900)	-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	2016. 7.22.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9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주택 임대사 장애인 차별 (15진정0890200)	-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 을 수강할 것을 권고	2016.2.17	수용
9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적장애인에 대한 간식비 갈취 (15진정0890200)	- 피진정인에게, 피해자의 장애연금 및 생계급여 중 증빙하 지 못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것을 권고 - 00군수에게, 가) 피진정인이 반환해야할 금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도록 조치하고 나) 수급관리자의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고 다)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2016.11.14	수용
9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편의제공 미흡 (16진정0267000)	- 피진정인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도 순환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 00광역시장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 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00시립미술관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피진정인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하기 바람	2016.10.5	수용
9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시설 이전 강요 (16진정0796200)	-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시설 이전을 강요하는 공문 발송 및 승강기내 공고문 부착행위를 중지할 것과 국가인 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 - 00시에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	2016.12.28	수용
9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이용 (16진정02227100)	- 피진정인1은 피진정인2가 수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 인정보의 수집, 이용, 관리 및 폐기를 철저히하여 「개인 정보보호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 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 피진정인2는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준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방문목적 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지 말고, 모든직원에게 사생활의 비밀 및 개인정보 보호관련 인권교육을 실시	2016.5.13	수용
9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에 대한 사무실 임대 거부 (17진정0861100)	- 향후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해 장애인차별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7.12.1	수용
9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거절 (16진정0962400)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진정인의 보험청약을 재심사 - 향후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 보험심사업무를 취급하는 직원에 대하여 보험인수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각 권고	2017.12.1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9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아파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 위반 등 장애인차별 (17진정0146600)	- 아파트 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할 것을 권고 - 000시장에게, 000아파트를 비롯한 관내 공동주택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7.8.11	검토중
9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4DX 관람 시 중증장애인에게 보호자 동행 요구 (16진정0134300)	- 중증장애인의 4DX 상영관 이용 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보호자의 동행을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 - 4DX 관람석의 진동 정도나 진동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등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사전에 중증장애인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을 권고	2017.10.31	수용
9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아파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폐쇄 등 장애인 차별 (17진정0709700)	- 000아파트 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주거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차별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주출입구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 - 00구청장에게, 000아파트를 비롯한 관내 공동주택에서 유사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7.10.31	검토중
10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고속·시외버스 등 이용 시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 (15진정0667600)	-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2017.7.3	일부 수용
10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6진정0406300)	-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임시경사로를 마련할 것을 권고	2017.6.12	불수용
10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영화관 피난안내 영상물에서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 (16진정0227000)	- 영화관 피난안내 영상물에 포함된 광고를 삭제하고, - 피난안내 영상물에 청각장애인에게 적합한 내용의 수화를 제공하며, - 피난안내 영상물에 스크린, 비상구, 출구 등 필수적 정보를 인식이 가능하도록 분명히 표시하고, 자막 내용과 속도를 청각장애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	2018.1.30.	일부 수용
10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영화관의 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8진정0285300)	- 보청기를 사용해도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이 0000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자통역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2018.6.11.	불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0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시내버스 탑승거부는 차별 (18진정0161100)	-00여객자동차(주)대표에게,아래와 같이 권고 가. 피진정인에게 주의 조치를 취할 것 나. 소속 운전자들에 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버스 승차거부 행위 및 정류소 무정차통과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휠체어 승강설비가 장착된 저상버스를 운전하는 운 전원들에 대해서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저상버스에 안 전하고 편리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 제공에 대한 교육과 휠체어 승강설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	2018.6.11.	수용
10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기면증 수험생에 대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정당한 편의 제공 (18진정0327200)	- 피해자를 비롯한 기면증을 가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에게 쉬는 시간 연장, 수면 시 깨워주기, 별도의 시험실 제공 등의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2018.6.11.	수용
10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휠체어 사용 기준으로 인한 장애인복지콜택시 이용불허 (18진정0059100)	-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아닌 교통약자를 위해 특별교 통수단 외의 임차(바우처) 택시를 조속히 도입할 것과 도 입하기 전까지 진정인에게 교통지원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	2018.11.12.	불수용
10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청각장애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기만은 장애인 차별 (18진정0004300)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1, 2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위반 혐의, 「장애인복지법」 제 59조의9 제7호 위반 혐의,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 혐의에 대하여 수사 의뢰 2.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장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	2018.11.12.	기타

□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 이용 차별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08진차0000728)	- 점자로 인쇄된 보상협의안내문과 보상내역서를 진정인에게 즉시 송부할 것을 권고 - 향후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08.8.8.	수용
2	권고 (위원회법)	진입시 장애인에 대한 휠체어 분리 (08진차0000874 등 2건)	- 중증장애인들의 휠체어를 분리하는 진입행위를 최대한 자체 하는 방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	2009.8.31.	불수용
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적장애인 구속수사 과정에서의 차별 (09진차0000664)	-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26조에 따라 보호자 등의 조력을 신청할 권 리가 있음을 고지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2010.1.15.	수용
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연행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등 (10진정0071400)	- 과도한 경찰장비 사용 및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 등과 관련하여 경고 조치하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 무 관련 인권교육 및 장애인차별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0.11.15.	수용
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휠체어 장애인의 통행권 침해 등 (10진정0187800 등 4건)	- 00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 000경비과장에 대하여 주의조치 권고 - 00경찰청 기동단 소속 경찰관들에 대하여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1.5.4.	일부 수용
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활동도우미 부당하고 관련 감사결과 미이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11진정0677100)	- 0000지사에게, 특별감사결과를 이행할 것과 향후 이런 사 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기관에 대해 관리·감독의무를 철 저히 하도록 관련 운영규정(조례·규칙 포함) 등 제·개정 권고 - 0000지사에게,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 육을 철저히 시킬 것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2012.4.9.	수용
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사법절차에서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미흡 (10진정0484500)	- 00총장에게, 출석요구·조사·결과통보 등 각 수사단계에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의 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 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 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2012.7.4.	수용
8	(장애인 차별금지법)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인 24시간 활동지원거부에 대한 긴급구제요청 (18진정0612700)	- 혹서기에 충분한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생명과 건강의 심각한 위험에 처한 피해자에게 24시간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를 긴급히 제공하고, 이와 유사한 형편에 처한 다른 중증장애인에게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2018.8.9.	수용
9	(장애인 차별금지법)	재판 과정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지원 차별 (18진정0384900)	- 장애인이 재판진행에 있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하거나 소송구조제도를 개선하는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2018.9.19.	검토

□ 장애인 참정권 영역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편의시설 미제공 (08진차0000917)	-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투표소 선정할 것과 부득이한 사정으로 장애인의 접근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을 권고	2008.12.3.	수용
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편의시설 미제공 (08진차0000919)	- 투표소 선정기준 마련 후 지침시달 및 관리 감독 철저 권고	2008.12.3.	수용
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 (08진차0000920)	- 향후 장애인 선거권자의 선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비밀 선거의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할 투표소의 선거관계자 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 할 것을 권고 -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선거구의 선거관계 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을 권고	2008.12.3.	수용
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편의시설 미제공 (08진차0000921)	- 장애인이 접근가능한 투표소 선정할 것과 부득이한 사정으로 장애인의 접근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을 권고 - 투표소 선정기준 마련 후 지침시달 및 관리 감독 철저 권고	2008.12.3.	수용
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6.4. 전국동시지방선거 장애인 평등권 침해 (14진정0160100 등 8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가. 장애인 선거인이 혼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 및 특성에 맞는 기표방안을 마련할 것 나. 기표대 내에 투표 보조인이 함께 들어가 보조할 수 있도 록 기표대의 규격을 개선하고, 이와 관련하여 투표 보조의 구 체적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이다. 시 각장애인이 본인의 기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할 것을 권고	2014.4.22.	수용
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방선거 청각장애인 참정권 행사관련 수어통역서비스 개선 (18진정0294600)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 화면송출 시 후보자간 다 자토론이 이뤄질 경우 최소 2인 이상의 수어통역사를 배치할 것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정한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권고	2018.5.4.	검토

□ 괴롭힘 영역 등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시설환경 열악 등에 의한 차별 (10진정0102600)	- 피진정인에게, 횡령한 장애수당 및 중증수당을 즉시 피해자들에게 반환할 것을 권고 -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의 장애수당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점에 대해 검찰 고발 - 00000장관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0000시장과 00구청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 0000시장 및 00구청장에게, 피진정인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대하여 피진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2010.6.3.	수용
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특수학교 교사의 장애학생에 대한 학대행위 등 (10진정0611700)	- 피진정인 학대혐의로 검찰 고발 - 0000복지회 이사장에게, 엄중 경고 등 조치를 취할 것,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0.11.15.	수용
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특수학교 교사의 장애학생에 대한 학대행위 등 (10진정0572400)	- 000교육감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내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0.11.15.	수용
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현장시정지원단 교육 시 장애인 차별 (09진차0000938)	- 000시장에게, 향후 교육 시행 시 장애인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2010.12.17.	수용
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괴롭힘 (10진정0568000)	- 00시장에게, 피진정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00시장에인종합복지관장을 엄중 경고조치할 것 등을 권고	2011.1.6.	수용
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설생활 장애인에 대한 폭행 및 노동 강요 등 (10진정0341700)	- 생활인을 폭행하고 장애수당을 사적으로 사용한 시설장과 생활교사 검찰고발 - 00시장과 해당 구청장에게, 해당 시설에 대해 폐쇄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내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 00장관에게,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1.1.6.	수용
7	권고 (위원회법)	장애인에 대한 폭행 및 괴롭힘 등 (10진정0728000)	- 피진정인 폭행혐의로 검찰고발 및 수사의뢰 - 00시장에게, 피진정시설 000에 대해 시설폐쇄 조치할 것,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관내 장애인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 0000지사에게, 피진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00재단'에 대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할 것, 도내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1.2.14.	일부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생활시설에서의 횡령 등 (11진정0099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의 수급비 및 장애수당 등을 횡령한 행위에 대해 수사의뢰 - 00시장 및 00시 00청장에게, 회계업무 담당자 교체를 포함하여 피진정인의 차별행위에 상응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피진정 시설을 포함하여 관내 장애인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 피진정인에게, 임의로 사용한 피해자들의 장애수당 등에 대해서 각각 000씩을 피해자들에게 즉시 반환조치 할 것을 권고 	2011.6.7.	수용
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금전적 착취 (11진정0170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총장에게, 피해자의 임금 및 재산을 횡령한 피진정인 고발 - 피진정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대로 사용한 60,244,000원 상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속히 피해자에게 돌려줄 것, 피해자의 통장, 도장, 신용카드, 주민등록증을 즉시 피해자에게 돌려줄 것을 권고 	2011.11.10.	수용
1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아동시설 원장의 폭행 등 인권침해 (11진정0440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총장에게, 중증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학대한 피진정인을 고발 - 00구청장에게,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아동들이 폭행과 학대를 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과, 00000터를 포함한 관내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 00시장에게, 사회복지법인 000의 00000터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그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취할 것, 사회복지법인 000 및 소속 시설들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내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1.11.10.	수용
1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예배 참석 및 헌금 강요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11진정0306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법인 00이사장에게 거주 생활인들의 의사에 반한 종교 활동 참석 강요, 헌금, 후원금 등의 납부 강요, 종교 활동 참석과 관련하여 외출을 제한하는 행위, 식사를 못하게 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향후 유사한 인권 침해 및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이에 대하여 직원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00광역시 00구청장에게 피진정기관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 등을 권고 	2012.2.13.	수용
1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설교사들의 장애아동에 대한 가혹행위 등에 의한 인권침해 (11진정0586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장에게 직원인권교육수강, 법인이사장에게 재발방지대책수립, 00구청장 및 00시장에게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 	2012.5.25.	수용
1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에 대한 부당노동강요 및 금전착취 (12진정0202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총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폭행, 금전착취, 노동강요, 성폭행혐의에 대하여 수사의뢰 	2012.6.13.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국어능력인정시험 시 장애인 편의조치 소홀 (12진정0519200)	- 피진정인에게, 국어능력인증시험시 뇌병변 장애인 등에게 안 전행정부의 장애 유형별 편의 지원 내용 또는 KBS 한국어 능력시험, TOEIC 장애인 응시규정 등을 참고하여 시간 연 장 등 필요한 편의조치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13.6.18.	수용
1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특수교사에 의한 장애학생 폭행 등 (13진정0177400)	- 00시교육감에게, 관내 모든 학교장 및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장애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00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피진정인 1을 징계할 것, 피진정인 2를 주의 조치할 것,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	2013.9.24.	수용
1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시설내 장애인에 대한 폭행 등 (13진정0743000)	-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들이 시설 거주 장애인들을 폭행한 점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형법」 제260조 등의 위반 혐의로 고발 - 00시장에게, 피진정인 1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과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 사회복지법인 0000 대표이사에게, 법인 산하 시설 원장을 포함한 전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3.11.12.	수용
17	권고 (위원회법)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감금과 강박 (13진정0733200)	- 피진정인에게, 간병의 편의를 위하여 환자의 신체를 억제하 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과 향후 유사 사례 재 발 방지를 위해 소속 종사자들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00시장에게, 이 사건 요양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노인요양병 원 등에서 불필요한 신체 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 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4.7.7.	수용
18	권고 (위원회법)	장애인 보호조치 소홀 등에 의한 인권침해 (14진정0271500 등 2건)	- 검찰총장에게, 00원에서 발생한 질식사고, 00요양원에서 발 생한 골절사고와 관련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치 상혐의로 고발 - 00시장에게, 가. 00원과 00요양원의 「장애인복지법」 제 59조의7, 제60조의4규정에 반하여 거주인에 대한 건강관 리를 해태한 행위와 거주인간의 성추행에 대한 부주의한 행 위, 00요양원의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2조[별표5]의 간호사배치 등의 시설인력기준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필요 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 나. 모·부성권 보호와 성적 자기결정 권 보호를 위한 교육과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다. 거주인들의 권리 침해나 제약, 부당한 처우가 없도록 주기적으로 거주인 개인별 심층면담을 실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관리·감독을 강 화할 것을 권고	2014.10.21.	수용
1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특수학급 실무보조원의 장애아동 비하 발언 등 (13진정0841400)	- 피진정인의 장애인 비하 발언과 관련하여 00광역시 00고등 학교장에게 피진정인과 해당학교 교직원에게 대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실시 할 것과, 00광역 시 교육감에게 피진정인을 징계 조치하고 유사사례가 재발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2015.6.30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2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시설 내 인권침해 (15진정0610400)	- 피진정인에게,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부합하도록 0000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이용 장애인들 에 대한 체벌을 금지할 것을, 체험홍의 자립생활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결정을 배제하고 피해자를 비하·모욕한 것과 관련하여 특별인권교육을 이수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과 00시장에게, 피진정인과 진정의 직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보조급여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행정조치 할 것을, 00 시장에게, 0000주간보호센터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 히 할 것을 권고	2015.11.19	수용
2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식품제조업체 상사의 장애인에 대한 모욕 등 (17진정0662500)	- 피진정인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7.9.12	검토중
2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대학교수의 장애인 비하 발언 (17진정0270400)	-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	2017.8.11	수용
2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 차별 (17진정0169100)	- 00고등학교장에게 피진정인1을 징계조치 하고, 향후 희망일 자리 사업의 시행 등과 관련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 00시교육감에게, 희망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관내 학교에 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 지 대책을 수립하고, 교직원들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한국00000공단 00지사장에게, 희망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7.6.12	수용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1주년 기념 장애인 교육권 차별, 현황 및 대응방안 토론회

| 인 쇄 | 2019년 4월

| 발 행 | 2019년 4월

| 발행인 | **최 영 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

| 주 소 | (26392) 강원도 원주시 능라동길 73, 4층

| 전 화 | (033) 813-9932 | F A X | (033) 813-9945

| Homepage | 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 전 화 | (02) 313-7593 | F A X | (02) 393-3016

ISBN 978-89-6114-685-2 93330

사전승인 없이 본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이 저작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저작재산권을 전부 소유하지 아니한 저작물이므로 자유롭게 이용(무단 변경, 복제, 배포, 상업적인 용도 사용 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